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7%이나 2060년 이후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간 약 0.47세씩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경제적 여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고령화와 장수화는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를 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본 자료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본 후 노후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계자료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심 역할인 공·사적 연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이 고령사회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3월

보험연구원 원장 강 호

Contents

요 약		11
I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01 고령화와 파급효과	34
	0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44
	0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56
II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0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62
	0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73
	03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86
III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0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96
	02 개인형 퇴직연금(IRP)	117
	0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127
IV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01 인구/고령화	132
	02 경제/연금	134
참고문헌		142

Table of Contents

요 약

요약표-1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	12
요약표-2	연도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12
요약표-3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2년)	13
요약표-4	최장기간 일자리의 근속기간(55~64세)	14
요약표-5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4년)	15
요약표-6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16
요약표-7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2012년)	16
요약표-8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16
요약표-9	부부기준 노후 최소/적정 생활비	17
요약표-10	준비하는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18
요약표-11	불충분한 노후자금 준비 이유(1순위)	18
요약표-12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18
요약표-13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18
요약표-15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 7월 말 기준)	19
요약표-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20
요약표-17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20
요약표-18	개인연금보험 가입현황(2013년)	20
요약표-19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	21
요약표-20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3년)	21
요약표-2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23
요약표-22	개인연금 가입기간	23
요약표-23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24
요약표-24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방법	25
요약표-25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26
요약표-26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28
요약표-27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28
요약표-28	퇴직연금 기대 월수령액	28
요약표-29	노후준비교육 경험	32

I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표 I-1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34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년)	35
표 I-3	연도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35
표 I-4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4년)	37
표 I-5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37
표 I-6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38
표 I-7	연령집단별 인구 비율	38
표 I-8	평균가구원 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39

II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표 I-9	연령대별 고용률	44
표 I-10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55~64세)	46
표 I-11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2015년)	46
표 I-12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4년)	47
표 I-13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근로소득	48
표 I-14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월평균 총소득	49
표 I-15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49
표 I-16	가구주 연령대별 실물자산 비중(2015년)	50
표 I-17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건전성(2014년)	51
표 I-18	부양의무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52
표 I-19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53
표 I-20	2007~2013년 동안 실질 사회복지지출 변화율(%)	53
표 I-2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53
표 I-22	노령 및 유족에 대한 GDP 대비 공적연금지급 비중	54
표 I-23	GDP 대비 공적연금지급 비중 장기추계(2010~2060년)	55
표 I-24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2012년)	56
표 I-25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58
표 II-1	노후 최소 생활비	63
표 II-2	노후 적정 생활비	64
표 II-3	준비하는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64
표 II-4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65
표 II-5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65
표 II-6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66
표 II-7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67
표 II-8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보험료	68
표 II-9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69
표 II-10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 7월 말 기준)	70
표 II-11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70
표 II-12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전망(2012년 현가화)	71
표 II-13	공적연금 만족도	72
표 II-1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72
표 II-15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	73
표 II-16	개인연금보험 가입현황(2013년)	74
표 II-17	연령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비중 및 인구대비 가입률(2013년)	74
표 II-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75
표 II-19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75
표 II-20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	76
표 II-21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3년)	77
표 II-22	연도별 연금상품별 수입보험료	78
표 II-23	연금저축 연도별 초회보험료	78

표Ⅱ-24	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가입 비중	79
표Ⅱ-25	연금저축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80
표Ⅱ-26	2011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	80
표Ⅱ-27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81
표Ⅱ-28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구·舊)개인연금저축 포함	81
표Ⅱ-29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82
표Ⅱ-30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예정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84
표Ⅱ-31	영국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87
표Ⅱ-32	미국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88
표Ⅱ-33	독일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89
표Ⅱ-34	스웨덴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90
표Ⅱ-35	일본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91
표Ⅱ-36	국가별 GDP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 추이	92
표Ⅱ-37	주요국의 공적연금의 GDP대비 적립 비중(2013년)	93

Ⅲ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표Ⅲ-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96
표Ⅲ-2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97
표Ⅲ-3	개인연금 가입기간	97
표Ⅲ-4	중도 해약·해지한 개인연금 가입기간	101
표Ⅲ-5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102
표Ⅲ-6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	105
표Ⅲ-7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서비스 활용여부	107
표Ⅲ-8	연금세제 공제방식 변경 개선방안	109
표Ⅲ-9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111
표Ⅲ-10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한 견해	113
표Ⅲ-11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116
표Ⅲ-12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116
표Ⅲ-13	향후 퇴직연금 기대 수령액	118
표Ⅲ-14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	120
표Ⅲ-15	노후준비교육 경험	128

Ⅳ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표Ⅳ-1	주요 국가 인구성장률(2010~2060년)	132
표Ⅳ-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32
표Ⅳ-3	자살률 국제비교	133
표Ⅳ-4	국내 총생산(GDP) 국제비교	134
표Ⅳ-5	각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134
표Ⅳ-6	GDP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 추이	135
표Ⅳ-7	소득수준별 총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37
표Ⅳ-8	연금유형별 총연금소득대체율	138
표Ⅳ-9	소득수준별 순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39
표Ⅳ-10	연금유형별 순연금소득대체율	140

Picture of Contents

요 약

요약그림-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13
요약그림-2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13
요약그림-3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14
요약그림-4	GDP대비 국가채무 국제비교	14
요약그림-5	평균 근속연수 국제비교(2014년)	14
요약그림-6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3년)	15
요약그림-7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	15
요약그림-8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17
요약그림-9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2011년)	19
요약그림-10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20
요약그림-11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21
요약그림-12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 및 대응방향	22
요약그림-13	개인연금 총 가입기간	23
요약그림-14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전반적 만족도	24
요약그림-15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24
요약그림-16	개인연금 가입 동기	24
요약그림-17	수급자의 월평균 개인연금 수령	25
요약그림-18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개인연금 수령액	25
요약그림-21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26
요약그림-22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에 대한 견해	26
요약그림-23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26
요약그림-24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	27
요약그림-25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27
요약그림-26	개인연금 가입 의향	28
요약그림-27	향후 퇴직 연금 수령 시 원하는 연금 수급 기간	28
요약그림-28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28
요약그림-29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계획	29
요약그림-30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29
요약그림-3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	29
요약그림-32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29
요약그림-33	퇴직연금 만족도	29
요약그림-34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30
요약그림-3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경험 여부	30
요약그림-36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획	30
요약그림-37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	30
요약그림-38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이유	30

	요약그림-39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31
	요약그림-4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31
	요약그림-41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31
	요약그림-42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31
	요약그림-43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32
	요약그림-44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32
	요약그림-45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32
I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그림 I-1	OECD 국가의 기대수명(2013년)	36
	그림 I-2	고령자의 성별 기대여명	36
	그림 I-3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39
	그림 I-4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40
	그림 I-5	사회복지지출 개념도	41
	그림 I-6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1년)	41
	그림 I-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4년)	42
	그림 I-8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00~2012년)	42
	그림 I-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43
	그림 I-10	GDP 대비 국가채무 국제비교	43
	그림 I-11	퇴직연령 국제비교(2014년)	45
	그림 I-1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2015년)	50
	그림 I-13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유형별 가구당 보유액(2015년)	51
	그림 I-14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3년)	51
	그림 I-15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	51
	그림 I-16	소득의 양극화: 중위소득층 비중변화	57
	그림 I-17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60세 이상)	59
II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그림 II-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62
	그림 II-2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2011년)	67
	그림 II-3	공적연금 납부기간	68
	그림 II-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72
	그림 II-5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77
	그림 II-6	평균 근속연수 국제비교(2014년)	83
	그림 II-7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85
	그림 II-8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 및 대응방향	86
III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그림 III-1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97
	그림 III-2	개인연금 총가입 기간	97
	그림 III-3	개인연금 가입 경로	98
	그림 III-4	개인연금 상품 설명의 충분성	98
	그림 III-5	개인연금 상품 설명이 미흡한 주 원인	98

그림 Ⅲ-6	개인연금 구매 전 상품비교방법	99
그림 Ⅲ-7	개인연금 상품비교 시, 가장 중요한 요소	99
그림 Ⅲ-8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전반적 만족도	99
그림 Ⅲ-9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100
그림 Ⅲ-10	개인연금 가입 동기	100
그림 Ⅲ-11	개인연금 중도 해약·해지 이유	101
그림 Ⅲ-12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 기간	103
그림 Ⅲ-13	실제 연금을 받은 기간	103
그림 Ⅲ-14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103
그림 Ⅲ-15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	103
그림 Ⅲ-16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	104
그림 Ⅲ-17	일시금을 사용한 주 용도	104
그림 Ⅲ-18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 만족도	105
그림 Ⅲ-19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의 불만족 이유	105
그림 Ⅲ-20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106
그림 Ⅲ-21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	106
그림 Ⅲ-22	계좌이체 서비스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	108
그림 Ⅲ-23	계좌이체 서비스 만족도	108
그림 Ⅲ-24	세제지원방식 변경 만족도	108
그림 Ⅲ-25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	108
그림 Ⅲ-26	공제대상 금액 조정 개선방안	109
그림 Ⅲ-27	세액공제율 조정 개선방안	109
그림 Ⅲ-28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에 대한 견해	110
그림 Ⅲ-29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110
그림 Ⅲ-30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111
그림 Ⅲ-31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견해	112
그림 Ⅲ-32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반대 이유	112
그림 Ⅲ-33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한 견해	112
그림 Ⅲ-34	소득 기준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	112
그림 Ⅲ-35	상속(승계)제도에 대한 견해	114
그림 Ⅲ-36	상속(승계)제도를 불만족하는 이유	114
그림 Ⅲ-37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	114
그림 Ⅲ-38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115
그림 Ⅲ-39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116
그림 Ⅲ-40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116
그림 Ⅲ-41	선호하는 연금 수급 기간	117
그림 Ⅲ-42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117
그림 Ⅲ-43	향후 자신이 예상하는 퇴직연금 수령 시점	118
그림 Ⅲ-44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	119
그림 Ⅲ-45	위험자산 확대 계획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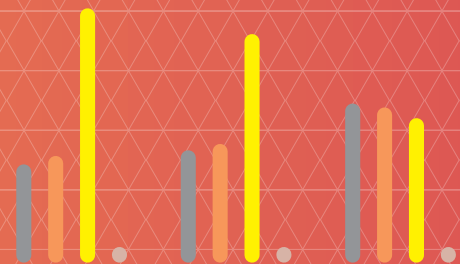
그림 III-46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119
그림 III-47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해도	120
그림 III-48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121
그림 III-4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21
그림 III-5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	122
그림 III-51	가입 중인 퇴직연금 만족도	122
그림 III-52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123
그림 III-53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경험 여부	124
그림 III-54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획	124
그림 III-55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응답자의 연평균 납입액	124
그림 III-56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이유	124
그림 III-57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 선호도	125
그림 III-58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중요 이유	125
그림 III-59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125
그림 III-60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6
그림 III-6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불가능에 대한 인지여부	126
그림 III-6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불가능에 대한 인지 시 개선에 대한 견해	126
그림 III-63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127
그림 III-64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27
그림 III-65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128
그림 III-66	노후준비교육 종류	128
그림 III-67	노후준비교육을 받게 된 동기	128
그림 III-68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129
그림 III-69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129
그림 III-70	노후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	130
그림 III-7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준비교육 종류	130

IV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그림 IV-1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2010~2060년)	133
그림 IV-2	GDP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 추이	135
그림 IV-3	2000년대 후반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천	136
그림 IV-4	고령층 고용률 국제비교(2013)	141

요 약

- 01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 02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 03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01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1) 고령화와 파급효과

요약표-1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

(단위: 연도, 연수)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통계청(2006).

요약표-2 연도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단위: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전체	61.9	65.7	71.3	76.0	80.8	81.9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4.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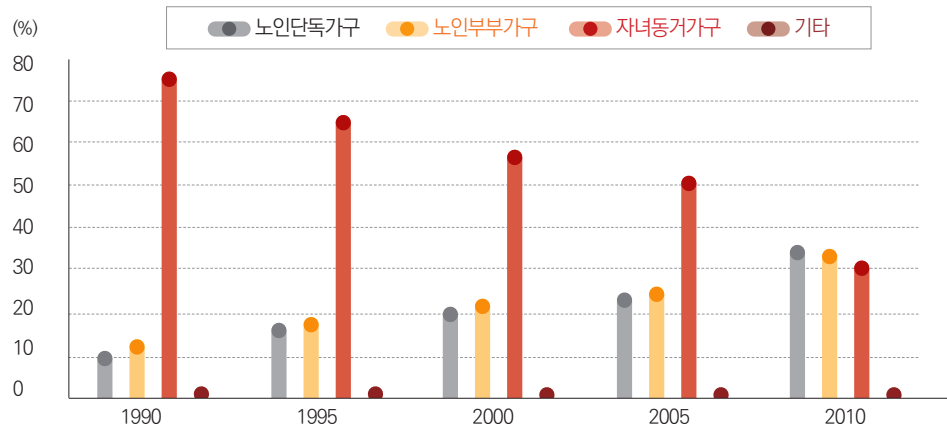
요약표-3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2년)

(단위: 년, %)

연령	기대 여명(A)	건강기대여명 ¹⁾	유병 기간(B)	유병율 (B/A×100)
60세	24.3	13.0	11.3	46.5
70세	16.0	7.5	8.5	53.1
80세	9.2	4.3	4.9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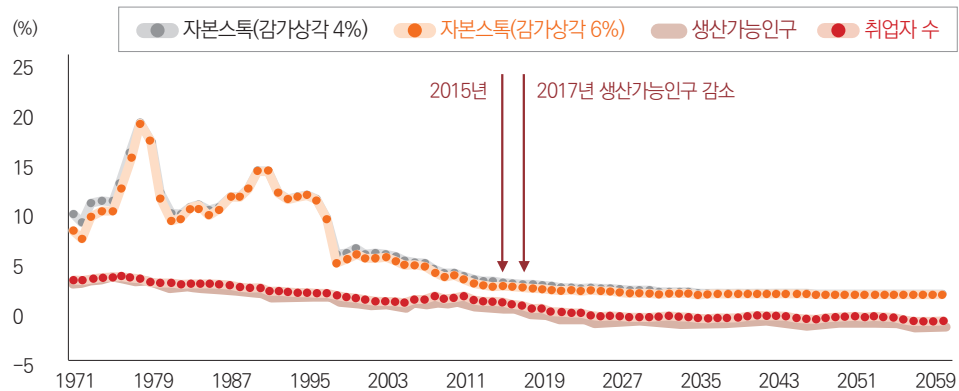
주: 1)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자료: 통계청(2012); 강성호·류건식(2015) 재인용.

요약그림-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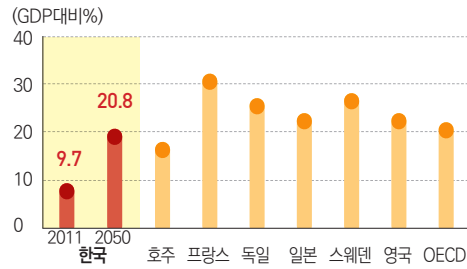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개발원 (2014) 재인용.

요약그림-2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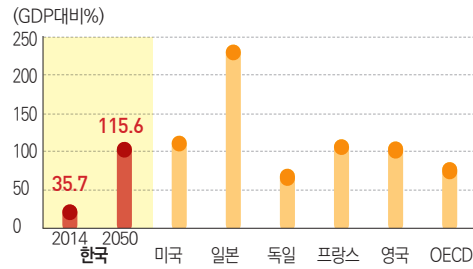
자료: 이태열 외(2014)를 수정보완함.

요약그림-3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주: OECD 국가 2011년 기준.
자료: OECD(2015a); 이태열 외(2013) 재구성.

요약그림-4 GDP대비 국가채무 국제비교



주: OECD 국가 2014년 기준.
자료: OECD(2015b); 이태열 외(201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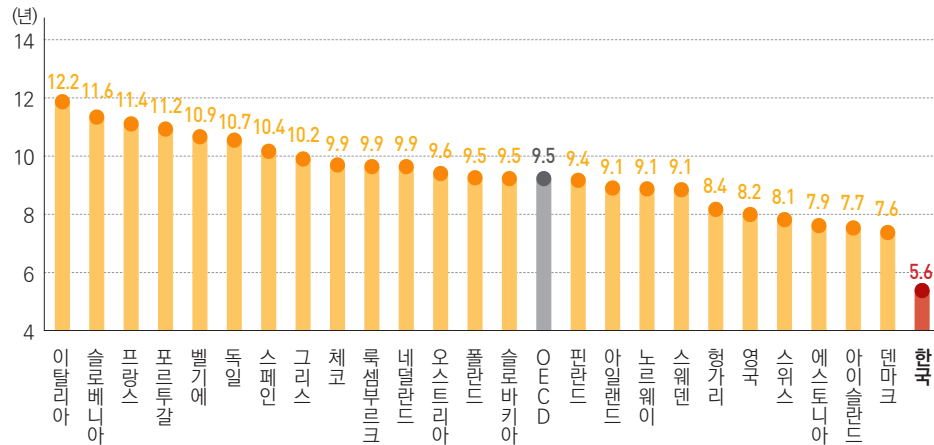
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요약표-4 최장기간 일자리의 근속기간(55~64세)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전체	17년 3.1개월	17년 0.2개월	16년 4.7개월	16년 3.9개월	15년 4.0개월	14년 9.4개월

주: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기준;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요약그림-5 평균 근속연수 국제비교(2014년)



자료: 고용노동부(2015a).

요약표-5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4년)

(단위: 명, 세, 월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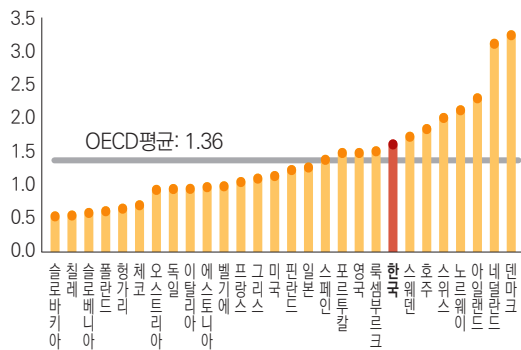
구분	60세 이상 가구 ¹⁾ (A)				전국가구(평균, B)	
			1인당 기준 ²⁾			1인당 기준 ²⁾
가구원수	2.46				3.21	
가구주연령	68.81				49.93	
소 득	2,812	(65.4)	1,143	(85.3)	4,302	1,340
경상소득	2,655	(63.9)	1,079	(83.4)	4,154	1,294
가계지출	2,105	(62.7)	856	(81.9)	3,356	1,045
소비지출	1,617	(63.4)	657	(82.7)	2,551	795
가처분소득	2,324	(66.4)	945	(86.7)	3,498	1,090
평균소비성향	69.6				72.9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

3) () 안의 수치는 전국가구의 해당 변수 값에 대한 60세 이상 가구의 해당변수 값 비율임.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재구성(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 nn_path=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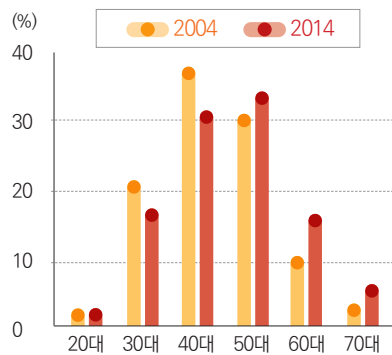
요약그림-6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3년)



주: 1) 스위스는 2012년 자료임.

자료: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

요약그림-7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



주: 2004년 「노동패널」;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자료: 김지섭(2015).

요약표-6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단위: %)

구분	준비하고 (되어) 있음	소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²⁾	사적 연금 ³⁾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전 체 ¹⁾	72.9	100.0	52.5	7.8	11.3	4.6	17.4	5.3	0.6	0.4
65세 이상	44.9	100.0	37.2	12.6	4.9	5.1	23.7	13.9	0.2	2.5

주: 1) 조사대상자 19세 이상 가구주임. 2)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4. 11. 14).

요약표-7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2012년)

(단위: %)

구분	고령자(65세 이상)			전체 인구
	전체	66~75세	76세 이상	
호주	35.5	30.5	37.8	14.0
캐나다	6.7	6.6	6.9	11.8
프랑스	3.8	2.7	5.0	8.1
독일	9.4	8.1	10.8	8.4
이탈리아	9.3	9.4	9.1	12.7
일본	19.4	16.6	22.8	16.0
한국	49.6	46.1		14.6
스웨덴	9.3	6.6	13.5	9.0
영국	13.4	10.9	16.6	10.5
미국	21.5	17.5	27.2	17.6
OECD	12.6	11.2	14.7	11.4

주: the United States, Korea는 2013년 기준, 기타 2012년 기준.
자료: OECD(2015c), p. 171; <http://dx.doi.org/10.1787/888933301209>.

요약표-8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단위: %)

구분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상 → 상	14	14	3.7
상 → 중	16.2	11.3	7.6
상 → 빈	0.5	1.1	0.6
중 → 상	6.9	7.4	1.5
중 → 중	48.7	44.9	25.8
중 → 빈	4.6	6.4	13.1
빈 → 상	0.7	1	0.6
빈 → 중	6.2	7.5	10.8
빈 → 빈	2.2	6.5	36.2
합계	100	100	100

주: 2005년과 2011년의 비교임.
자료: 김미곤(2014).

02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요약그림-8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보험('13. 12월, 876만 명+α)*			
	2층	퇴직연금 ('15. 9월 568만 명)			
공적 연금	1층	국민연금 ('15. 8월, 2,148만 명)		특수직역연금** ('12. 6월, 151만 명)	
	0층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15. 4월, 441만 명)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등

주: 1) () 안은 가입자 수. 2) *보험개발원(2015. 4. 16) 참조하되, 은행권, 증권분야의 가입자(α)는 제외됨.
3)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며, 군인은 '11년 기준으로 산출되어 합산됨.
자료: 강성호·이지은(2010); 이태열 외(2014); 저자보완.

요약표-9 부부기준 노후 최소/적정 생활비

(단위: %, 만 원)

구분	부부기준 최소생활비					부부기준 적정생활비				
	200 만 원 미만	200 ~250 만 원 미만	250 ~300 만 원 미만	300 만 원 이상	평균	250 만 원 미만	250 ~300 만 원 미만	300 ~350 만 원 미만	350 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9.2	34.6	18.7	27.5	236	25.1	20.8	33.1	21.0	283
60세 이상	28.3	36.0	14.9	20.8	220	37.1	22.2	25.2	15.6	263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10 준비하는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평균
전체	2,035	16.2	43.3	32.1	8.2	0.1	2.33
60세 이상	418	9.5	36.8	42.0	11.0	0.7	2.57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11 불충분한 노후자금 준비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
전체	1,211	24.7	49.5	13.9
60세 이상	194	37.4	40.6	0.6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12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적연금	일반저축	부동산 관련 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전체	2,035	41.3	20.3	11.4	13.2	8.1	(21.3)
60세 이상	418	32.1	20.6	12.4	22.5	4.7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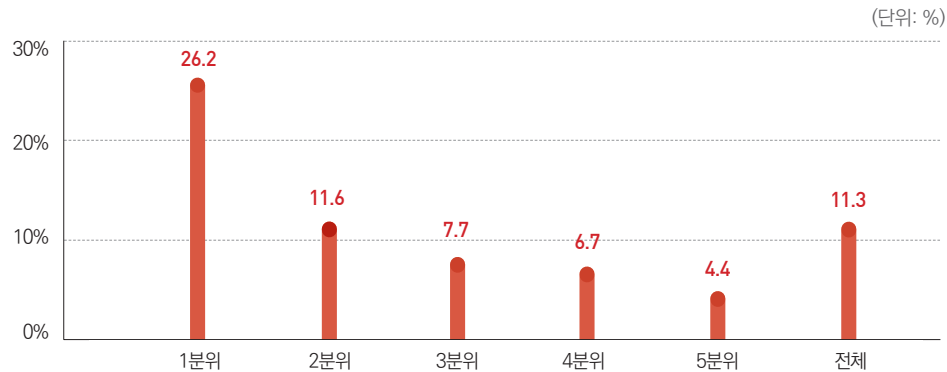
주: ()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비율임.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13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18~59세 총인구 32,994천 명(100.0%)					
경제활동인구 22,871천 명					
비경제활동 인구 10,626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68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 22,401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 명			특수직역 연금 1,444천 명
		납부예외자 4,665천 명	소득신고자 16,386천 명		
			장기체납자 1,253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 명	
32.4%	1.7%	14.2%	3.8%	46.2%	4.4%
소계 16,302천 명(49.4%)				소계 16,692천 명(50.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

요약표-9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2011년)


자료: 이태열 외(2014) 활용하여 재구성.

요약표-14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단위: 천 명, %)

구분	합계	노령연금 ¹⁾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 ²⁾
2014	2,531	2,202	15.0	314.5	39.6
국민연금	2,274(89.8)	1,981	13.6	279.0	35.6
공무원연금	222(8.8)	189	1.3	32.0	3.5
사학연금	35(1.4)	31	0.038	3.5	0.5

주: 1)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연금수급률 = (각 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추계인구) X 100.

3) 군인연금 제외.

4) ()안은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비중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요약표-15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 7월 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계(특례제외)	노령연금(특례제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	1,827	1,827	1,362	875
평균	333(421)	346(484)	430	258

주: 특례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여임. ()는 특례를 제외한 지급액 평균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 공표통계(2015. 7)).

요약표-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5,701	6,624	8,084	12,691	16,501	17,991
연금수급자	1,605	2,115	2,889	5,981	9,864	12,744
수급율	28.2	31.9	35.7	47.1	59.8	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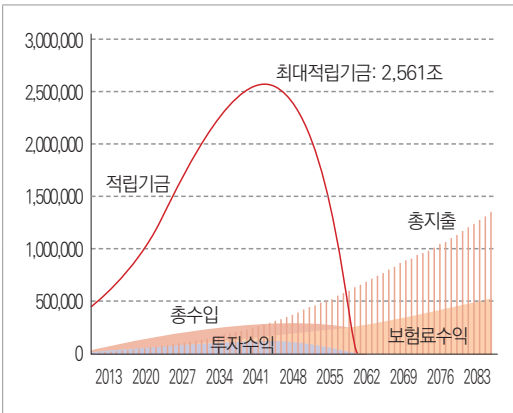
주: 65세 이상 인구는 ('11년)행안부 주민등록인구, ('15년 이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중위 가정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 7).

요약표-17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최대적립금	수지 적자 ¹⁾	적립금 보유기간
제 3 차	2043년 (2,561조 원, 2010년 불변가격 1,084조 원)	2044년	2060년 (△281조 원)
제 2 차	2043년 (2,465조 원, 2005년 불변가격 1,056조 원)	2044년	2060년 (△214조 원)

주: 1)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 수익) < 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 28).

요약그림-10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요약표-18 개인연금보험 가입현황(2013년)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51,141	25,558	25,553
가입자수	8,760	4,355	4,405
가입률	17.1	17.0	17.2

주: 1)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청)이며 가입자 수는 각 연도 12월 말 기준(단 2012년 손해보험은 2013년 3월 말 기준) 개인연금보험을 보유한 누적 가입자 수로서 중복가입을 배제하고 산출.
2) 개인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정의하나, 은행 및 증권분야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부분은 제외됨(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5. 4. 16 참조).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5. 4. 16).

요약표-19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DB	DC	기업형 IRP	합계
'15. 9월(비중)	3,358(59.1)	2,240(39.4)	83(1.5)	5,681(100.0) (51.6)*

주: ()는 전체 상용근로자(1,100만 명) 대비 가입자(568만 명)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요약표-20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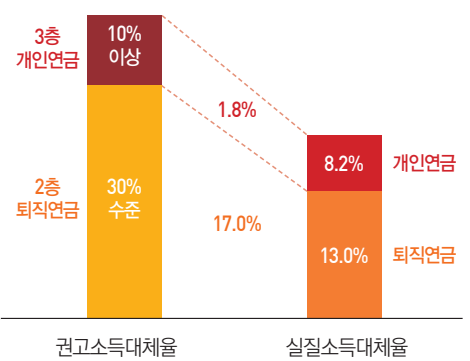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개인연금	22.0 (24.7)	11.1 (18.1)	35.2 (29.9)	18.0 (25.7)	24.7 (35.1)	23.4 (12.2)
퇴직연금	41.6 (32.8)	30.0 (49.1)	56.4 (32.2)	15.1 (12.1)	25.7 (33.9)	-
소계	47.1 (41.1)	43.3 -	71.3 -	-	- (52.6)	23.4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2) 외국 사적연금은 강제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과 비교하기 위해 임의가입 사적연금(자발적 퇴직연금 포함)만 대상으로 함.
3) 한국의 자발적 퇴직연금(적립형 IRP)는 집계되지 아니하였음.
4) ()안은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5c), p. 187; OECD(2011), p. 173.

요약그림-11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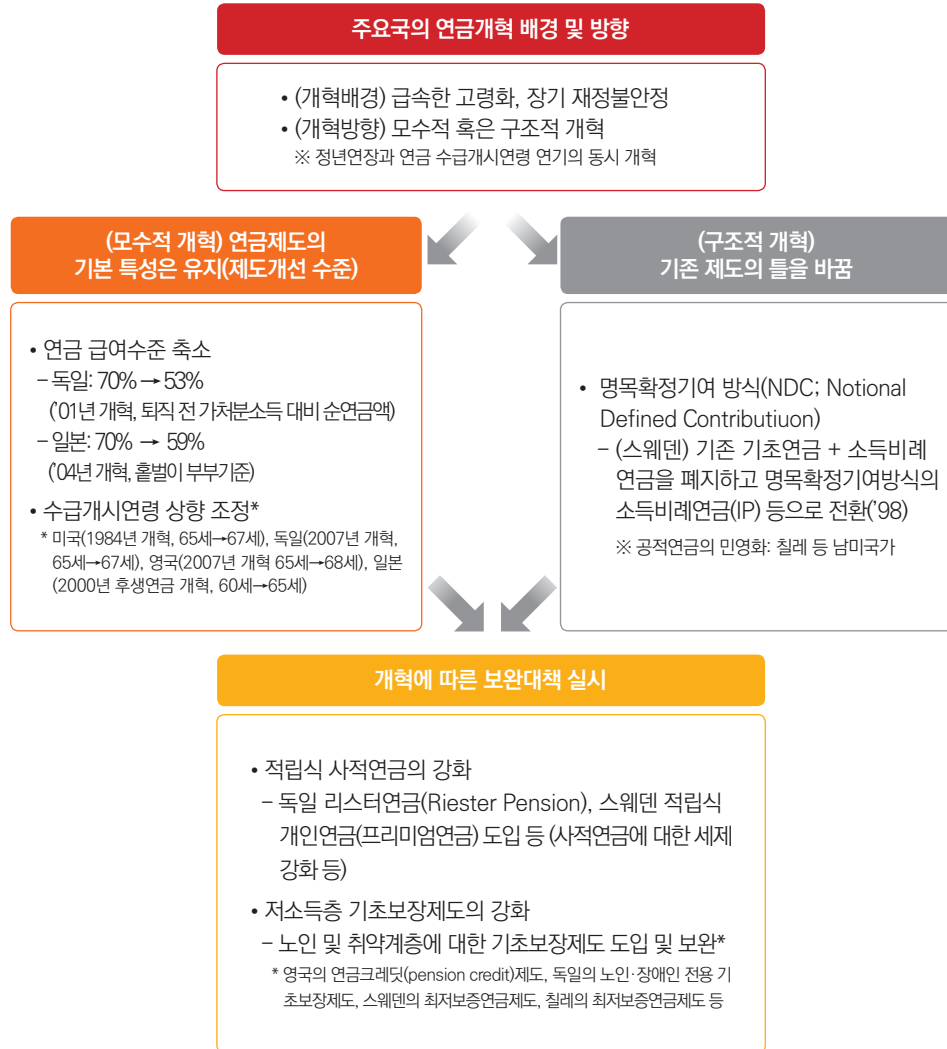
가입기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년	10.5% (4.5%)	13.4% (5.8%)	17.1% (7.5%)
25년	12.3% (5.1%)	16.2% (6.7%)	21.2% (7.5%)
30년	14.0% (5.5%)	18.8% (7.5%)	25.2% (10.2%)
35년	15.4% (5.8%)	21.2% (8.2%)	29.2% (11.4%)



주: 1) 괄호 안은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2) 시나리오1=실제수익률, 시나리오2=실제수익률+1, 시나리오3=실제수익률+2%
3) 연금수익률은 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적용함.

자료: 류건식(2013).

요약그림-12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 및 대응방향



03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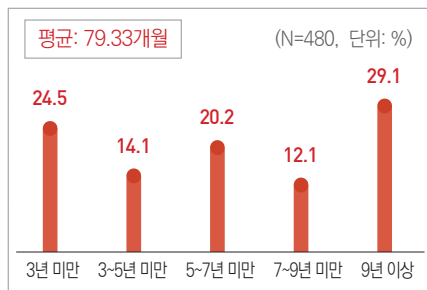
요약표-2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단위: %)

구분	현재 납부하고 있음 (한꺼번에 납부 포함)	현재 연금 수급중/납부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음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음
전체	22.1	14.0	17.1	47.1
60대 이상	14.3	43.4	13.3	29.2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13 개인연금 총 가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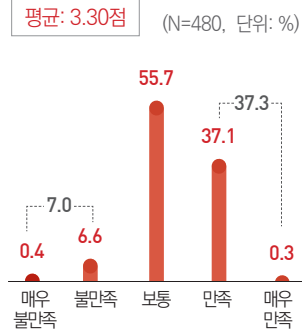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22 개인연금 가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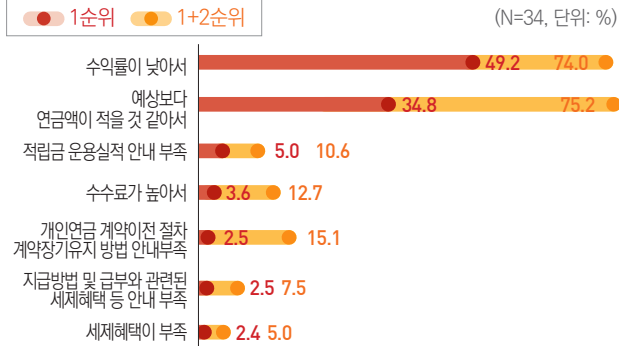
(단위: 명, 개월)

구분	사례 수	평균
전체	480	79.33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171.09
	2001년~2012년 가입	249 79.84
	2013년 이후 가입	82 19.52
세제비적격	108	89.16

요약그림-14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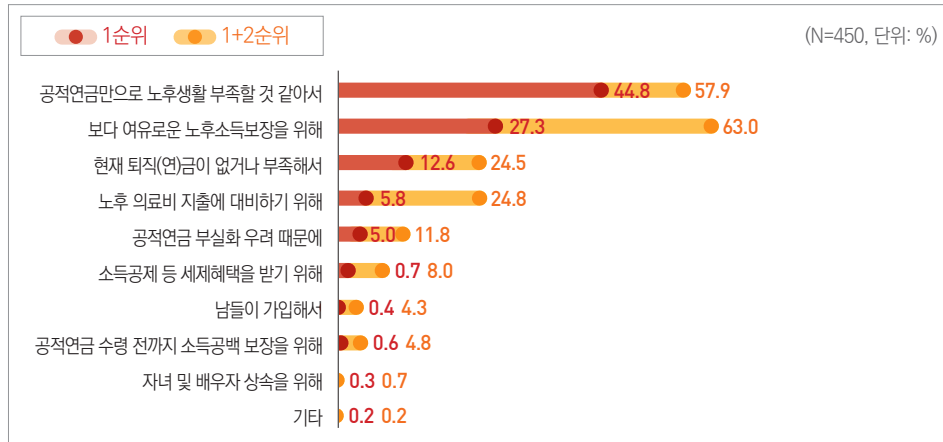


요약그림-15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임. 매우만족=5 ~ 매우불만족=1.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16 개인연금 가입 동기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23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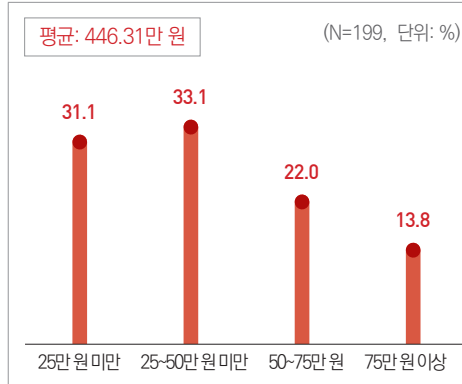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연금이나 만기일시금을 수령중(함)	대기자	연금이나 만기일시금을 수령한 적 없다
전체	1,076	18.6	8.0	73.4
60세 이상	296	54.9	9.1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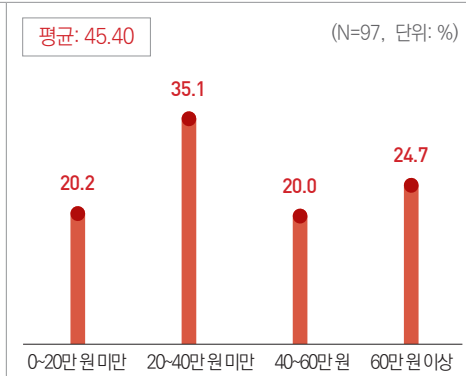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17 수급자의 월평균 개인연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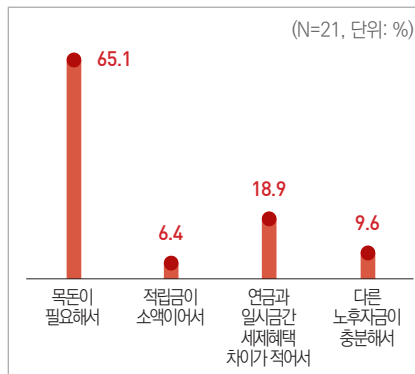


요약그림-18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개인연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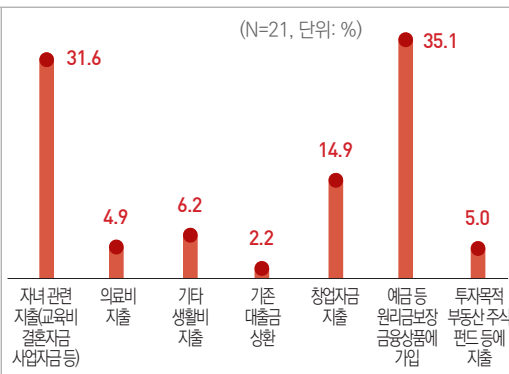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19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



요약그림-20 일시금을 사용한 주 용도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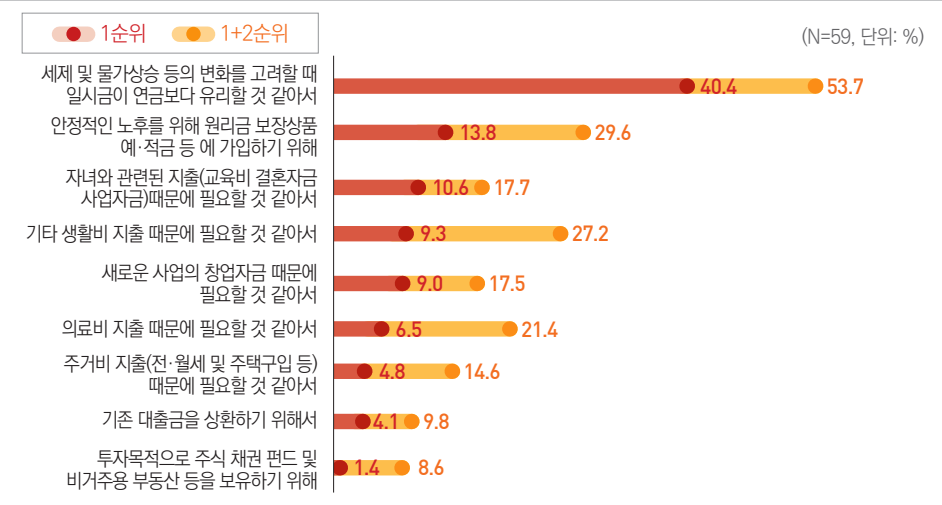
요약표-24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연금 수령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	일시금 수령	
전체	480	87.7	8.5	3.7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85.8	10.3	3.8
	2001년~2012년 가입	249	85.6	10.3	4.1
	2013년 이후 가입	82	89.3	7.2	3.4
세제비적격	108	92.3	4.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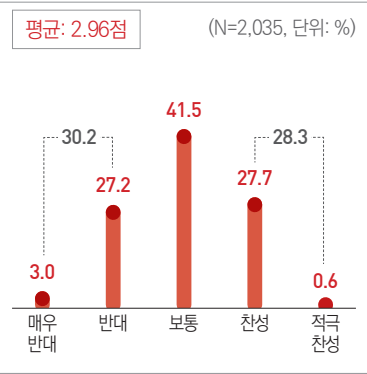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1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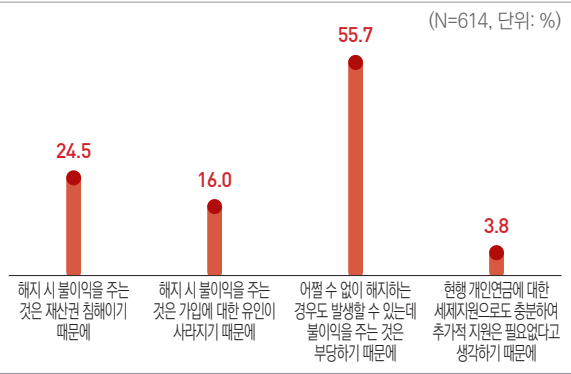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2 새로운 연금정책¹⁾ 실시에 대한 견해



요약그림-23 새로운 연금정책¹⁾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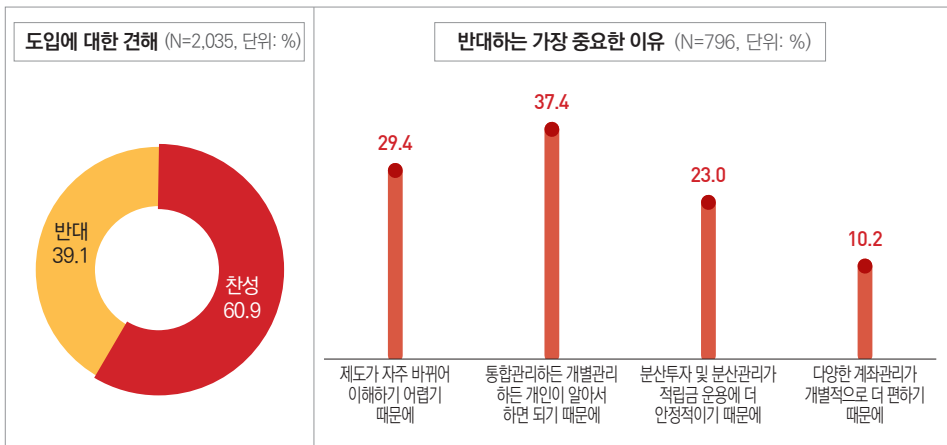
주: 1) 현행 연금저축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되 장기 보유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연금정책. 2) 점수는 5점 척도기준(적극찬성=5 ~ 매우반대=1).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25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평균
전체	2,035	0.8	15.6	33.1	48.0	2.6	3.36
60세 이상	418	0.3	14.3	32.7	49.6	3.1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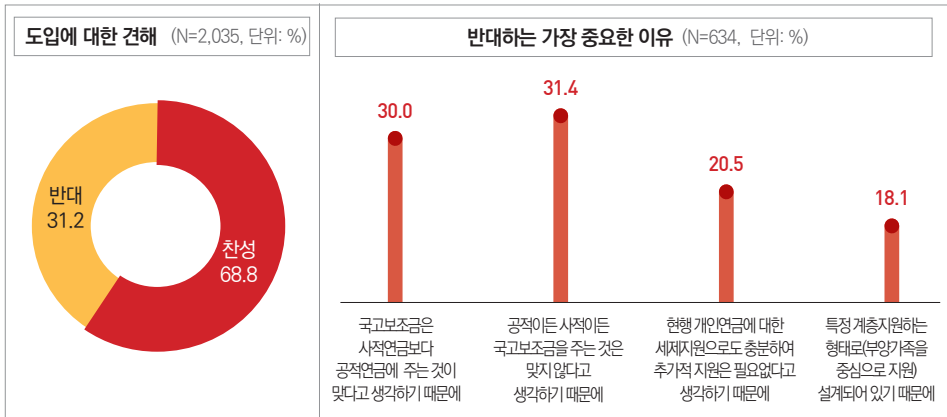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4 개인종합연금계좌¹⁾ 도입



주: 1) 다양한 상품구조와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연금상품 구조, 자산운용, 사업자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그동안의 여러 연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한 개의 통합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5 인증형 개인연금¹⁾ 제도



주: 1) 현재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일반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형태로 정부가 보조하는 '인증형 개인연금제도'가 있음. 즉,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는 조건으로 인증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수(예,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보조금 제공),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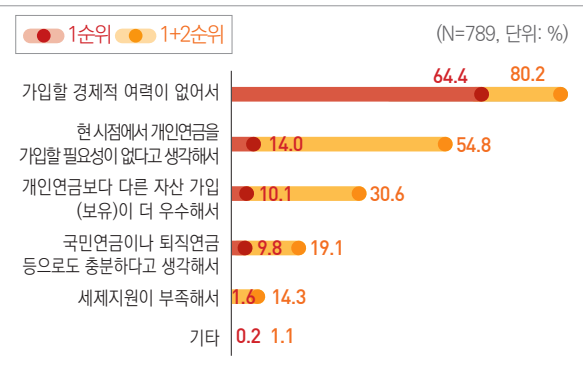
요약그림-26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07	39.6	60.4
20대	305	67.4	32.6
30대	293	54.8	45.2
40대	300	36.6	63.4
50대	230	16.7	83.3
60세 이상	178	1.8	98.2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26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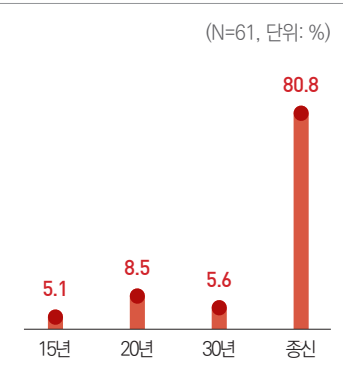
요약표-27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퇴직(연금) 없거나 부족	공적연금의 재정상태 불안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
전체	45.4	30.2	9.0	7.1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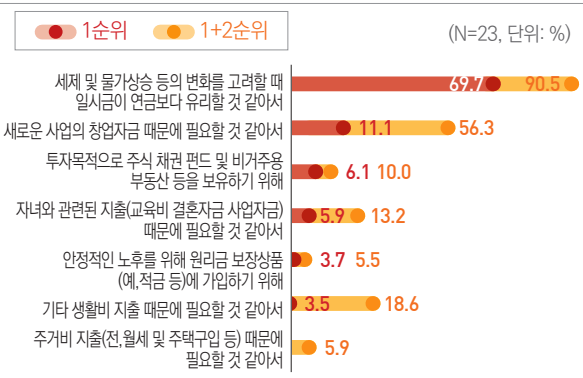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7 향후 퇴직 연금 수령 시 원하는 연금 수급 기간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8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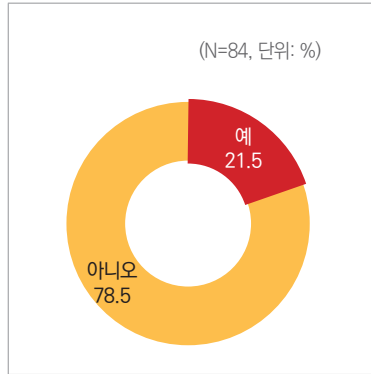
요약표-28 퇴직연금 기대 월수령액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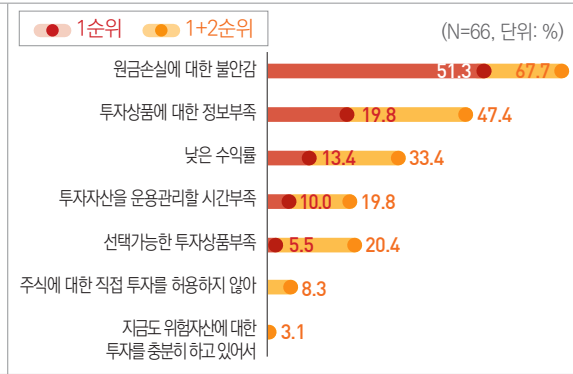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60만 원 미만	6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27	13.1	21.1	24.5	20.2	21.1	44.43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29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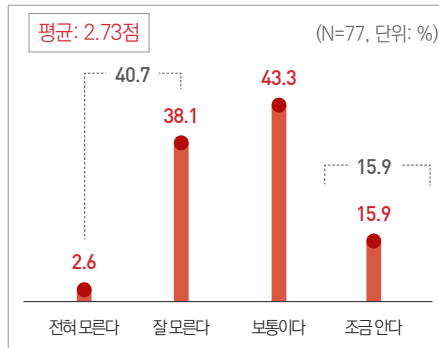


요약그림-30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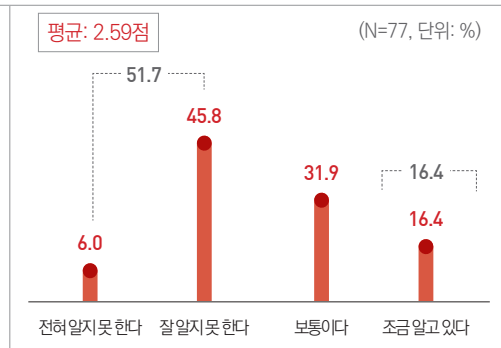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3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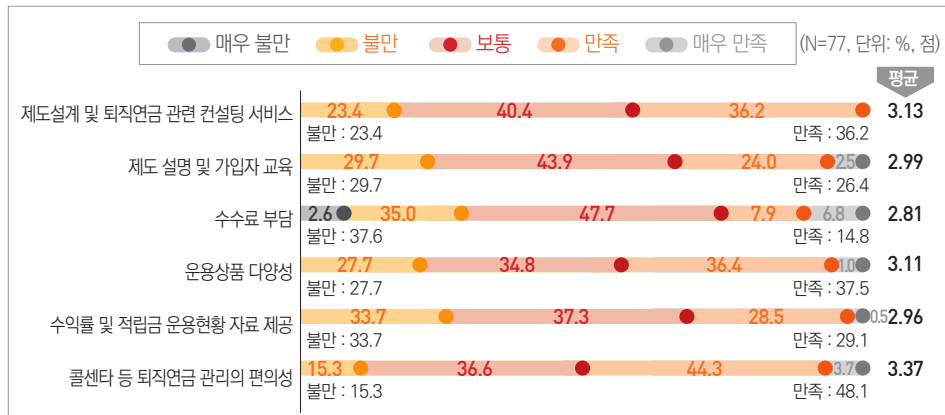


요약그림-32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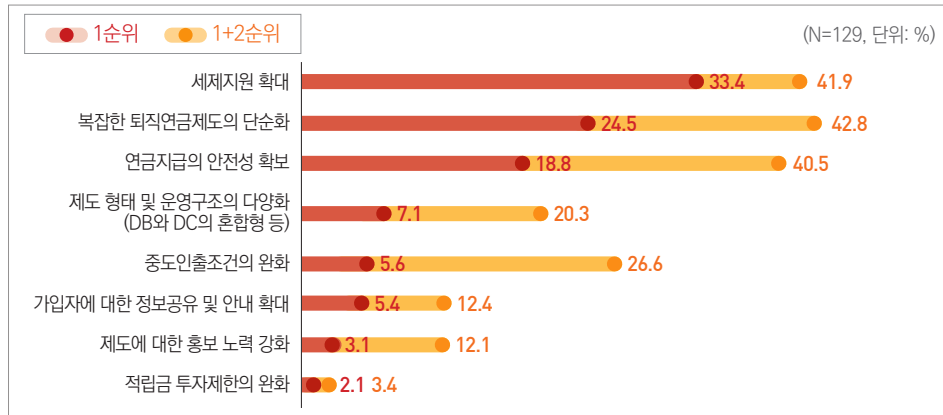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33 퇴직연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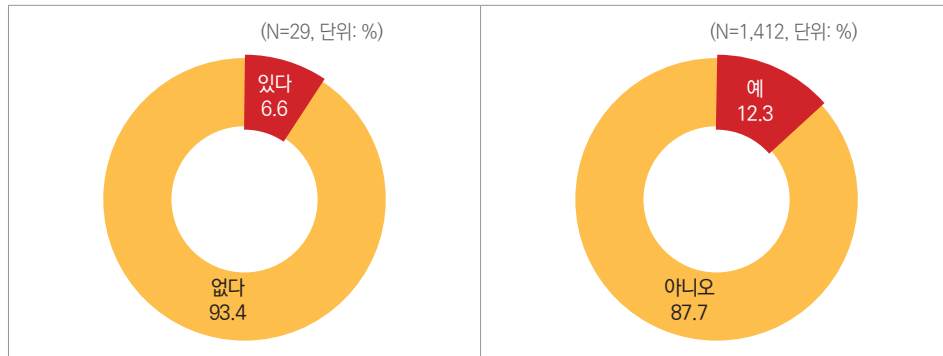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34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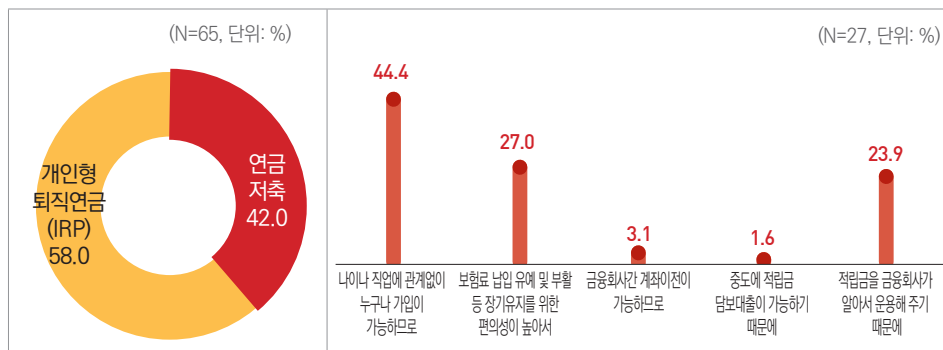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3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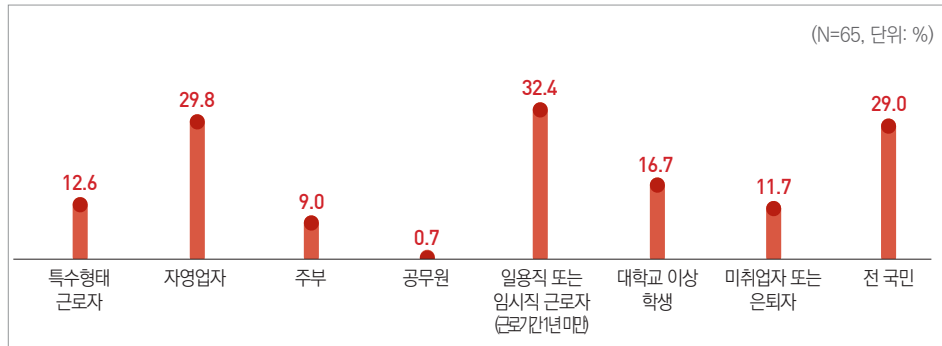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37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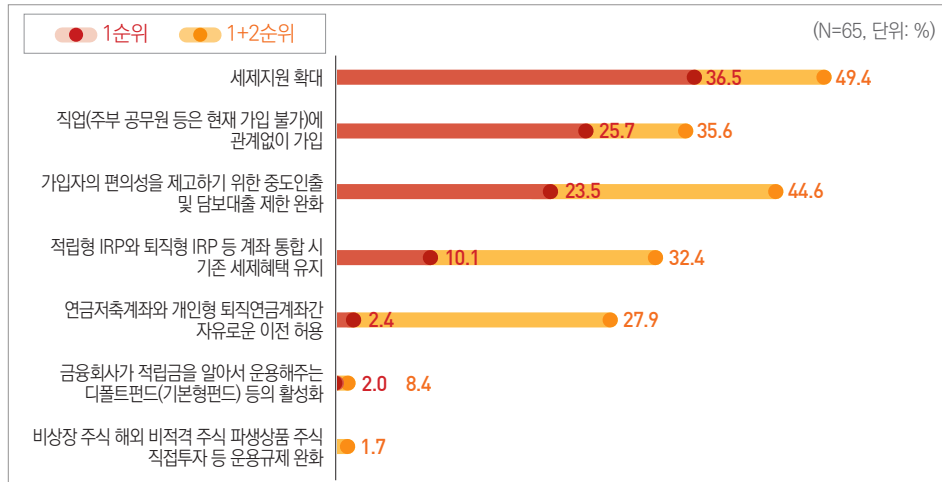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39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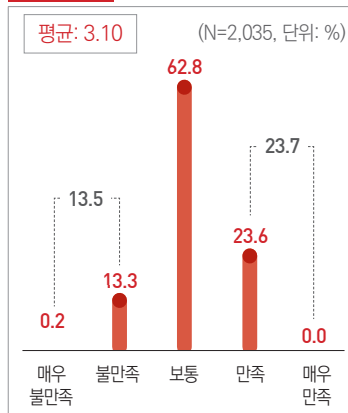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4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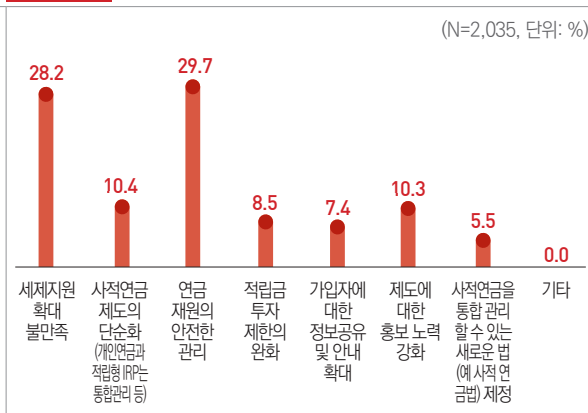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41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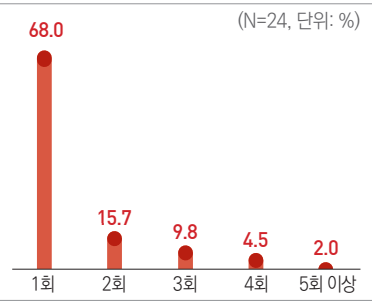


요약그림-42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43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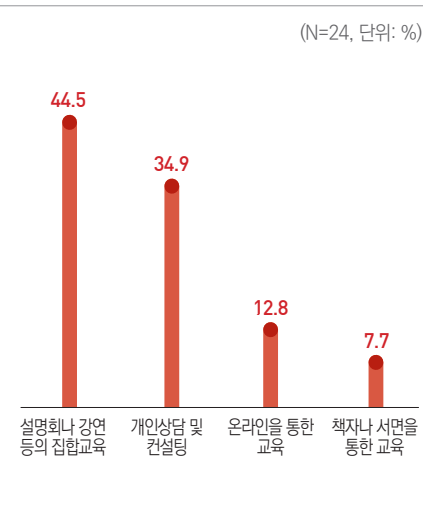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표-29 노후준비교육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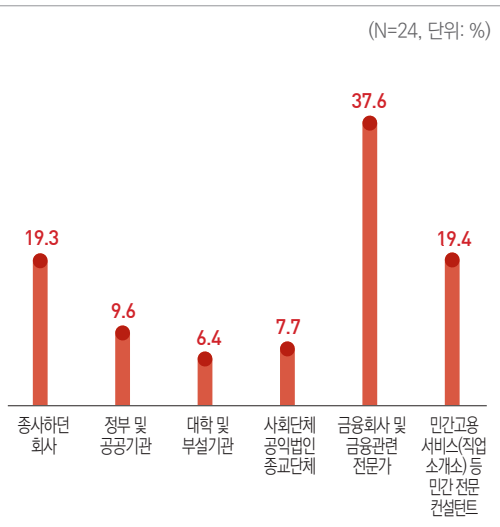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827	2.8	97.2	
연령별	20~39세	467	2.2	97.8
	40~59세	300	3.1	96.9
	60세 이상	60	6.7	93.3
성별	남성	523	3.0	97.0
	여성	303	2.6	97.4

요약그림-44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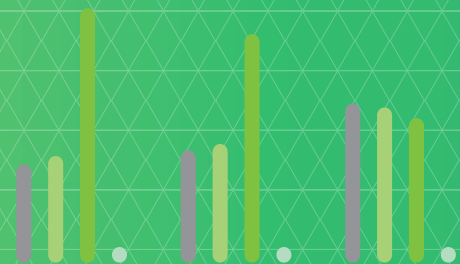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요약그림-45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I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 01 고령화와 파급효과
- 0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 0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01

고령화와 파급효과

가. 인구학적 측면

-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장수화**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문제(노인 빈곤 등)가 심화될 우려 있음.

* 65세 이상 인구수(노인)가 증가하는 현상(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수/전체 인구 수).

**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특히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상).

- ◆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7% → 14%)과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14% → 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가장 빨랐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각각 24년, 12년이었던 점에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

표 I-1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단위: 연도, 연수)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통계청(2006).

- 이로 인해 196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였으나, 1980년 3.8%, 2000년 7.2%, 2014년 12.7%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고령화 과정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2000년 1%를 넘어 2014년 현재 2.6%수준임.
- 고령화 과정에서 중위연령도 2014년 현재 40세를 넘어서고, 노년부양인구비, 고령화 지수도 증가하고 있음(〈표 I-2〉 참조).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년)

연도	총인구 (100만 명)	고령인구 비중(%)		중위연령 (세)	노년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세 이상	80세 이상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14	50.4	12.7	2.6	40.2	17.3	88.7
2020	51.4	15.7	3.7	43.4	22.1	119.1
2040	51.1	32.3	9.4	52.6	57.2	288.6
2060	44.0	40.1	17.2	57.9	80.6	394.0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

◆ (장수화) 2013년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1970년 61.9세에 비해 43년간 20세 증가함(연평균 0.47세 증가).

* 0세기준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 하며, '기대여명'은 특정연령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함.

표 I-3 연도별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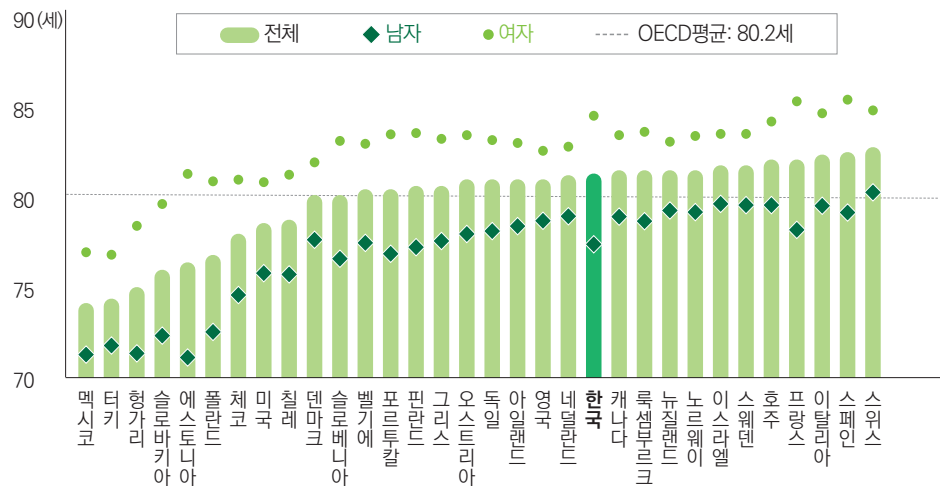
(단위: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남녀 전체	61.9	65.7	71.3	76.0	80.8	81.9
남자(A)	58.7	61.8	67.3	72.3	77.2	78.5
여자(B)	65.6	70.0	75.5	79.6	84.1	85.1
차이(B-A)	6.9	8.3	8.2	7.3	6.9	6.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4. 12. 3).

- 2013년 기준 OECD의 평균기대수명은 82.3세로 동기간 우리나라 81.8세보다 0.5년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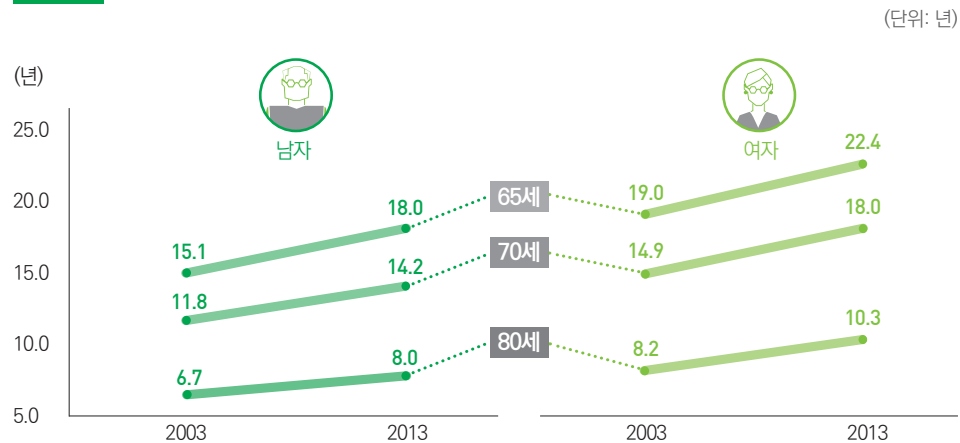
그림 I-1 OECD 국가의 기대수명(2013년)



자료: OECD(2014c).

- 2013년 기준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여자(22.4년)가 남자(18.0년)보다 4.4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70세 여성(18.0년)은 3.8년, 80세 여성(10.3년)은 2.3년을 남성보다 더 오래 살.
- 10년 전(2003년)과 비교하면 65세 고령자 남녀 모두 기대여명이 각각 2.9년, 3.4년 늘어남.

그림 I-2 고령자의 성별 기대여명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 장수화 과정에서 기대여명 대비 유병기간인 유병률은 증가하고(〈표 I-4〉 참조) 이로 인해 노인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임(〈표 I-5〉 참조).

- 60세 → 70세 → 80세 유병률은 각각 52.2%, 60.5%, 62.9%로 나타남.

표 I-4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4년)

(단위: 년, %)

연령	기대 여명 (A)	건강기대여명 ¹⁾	유병 기간 (B)	유병률 (B/A×100)
60세	25.1	12.0	13.1	52.2
70세	16.7	6.6	10.1	60.5
80세	9.7	3.6	6.1	62.9

주: 1)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12. 3), "2014년 생명표(전국 및 시도)".

-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은 2005년 24.4%, 2010년 31.6%, 2014년 35.5%로 증가함.

표 I-5 건강보험 진료비¹⁾ 현황

구분	전체 (억 원)	1인당 진료비 (천 원)	65세 이상 (억 원)	구성비 (%)	고령자 1인당 진료비 ²⁾ (천 원)
2005	247,968	523	60,556	24.4	1,545
2006	285,580	602	73,931	25.9	1,815
2007	322,590	675	90,813	28.2	2,070
2008	350,366	728	104,904	29.9	2,281
2009	394,296	811	120,391	30.5	2,494
2010	436,570	893	137,847	31.6	2,769
2011	460,760	935	148,384	32.2	2,862
2012	482,349	971	160,382	33.3	2,933
2013	507,426	1,015	175,283	34.5	3,054
2014	545,275	1,084	193,551	35.5	3,223
증감률(차) (%, (%p))	7.5	6.8	10.4	(1.0)	5.5

주: 1) 진료비는 심사실적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임.

2) 고령자 1인당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2014년 진료비통계지표」;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 연도별로 보면, 암, 당뇨, 알츠하이머병 등 고령층 대상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남.

표 I-6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비율)

구분	악성 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¹⁾	간질환	당뇨병	고의적 자해 (자살)	알츠하이머병
1990	91.5	63.1	39.6	28.1	9.9	7.6	0.0
1995	110.5	79.8	37.0	29.5	17.3	10.8	0.0
2000	121.4	73.1	38.2	22.8	22.6	13.6	0.3
2005	133.8	64.1	39.3	17.2	24.2	24.7	2.3
2010	144.4	53.2	46.9	13.8	20.7	31.2	4.1
2011	142.8	50.7	49.8	13.5	21.5	31.7	4.8
2012	146.5	51.1	52.5	13.5	23.0	28.1	6.6
2013	149.0	50.3	50.2	13.2	21.5	28.5	8.5

주: 1)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 포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보도자료(2015. 3. 19) 재인용.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구분포의 불균형 심화

- 고령화 및 장수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이후 줄어들어 생산 여력이 감소할 것임(이태열 외 2014).
- 1990년과 2010년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면, 40세 미만 연령층의 인구비중은 감소한 반면, 4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증가함.
 - 특히 70세 이상의 인구는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표 I-7 연령집단별 인구 비율

(단위: %)

연도	0~4세	10~14세	20~24세	30~34세	40~44세	50~54세	60~64세	70~74세	80세 이상
1990	7.5	9.2	10.1	9.6	5.8	4.7	2.7	1.4	0.7
2010	4.5	6.5	6.4	7.8	8.6	8.0	4.5	3.1	1.9

주: 5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지면제약으로 일부 연령대의 결과만을 보고함.

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

◆ 1인 및 노인가구주 중심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 고령화 및 장수화되는 과정에서 가구형태는 1인 및 노인가구주(노인단독, 노인부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I-8 평균가구원 수와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단위: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가구원 수	3.7	3.3	3.1	3.0	2.8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1인가구	9.0	12.7	15.5	19.9	23.8
1세대 가구	10.7	12.7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3	60.8	55.4	51.2
3세대 이상 가구	12.5	10	8.4	6.9	6.1
비혈연가구	1.5	1.4	1.1	1.4	1.1

주: 1) 일반가구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 1인가구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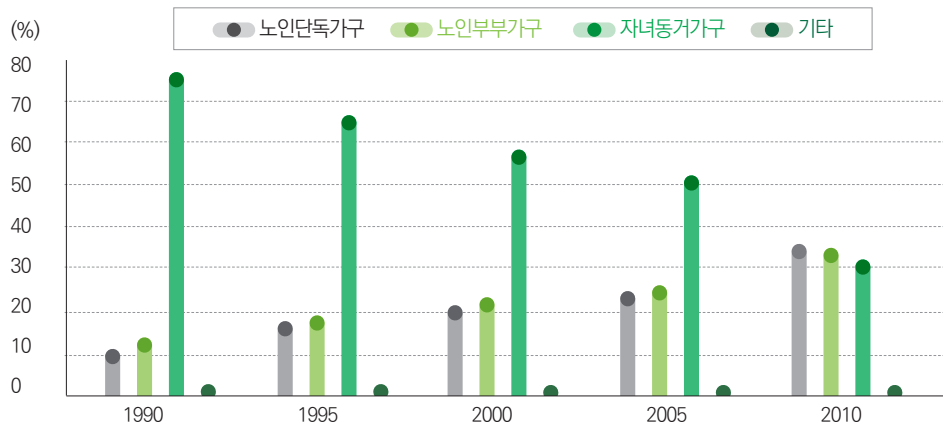
2)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3)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

그림 I-3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2) 기타 가구는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 비친족가구, 미상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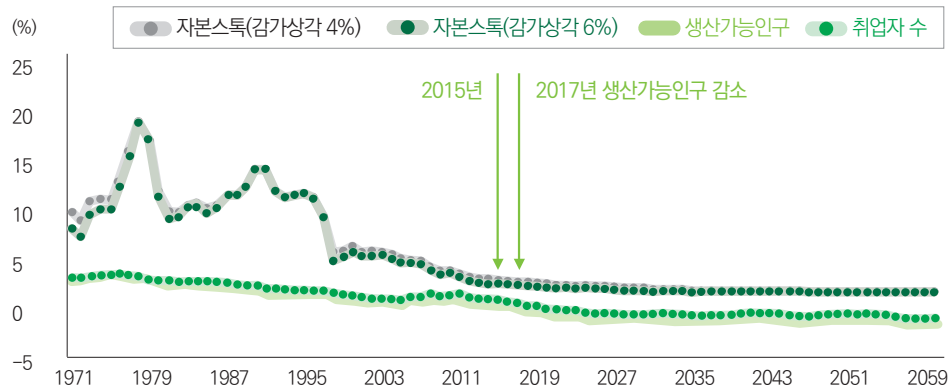
나. 경제적 측면

1) 생산여력의 약화

◆ 노동,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인 성장 기여 능력 고갈

- 2017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의 마이너스 성장이 임박해 있음.
- 투자부진 장기화로 자본스톡 성장여력이 미진할 것으로 보임.

그림 I-4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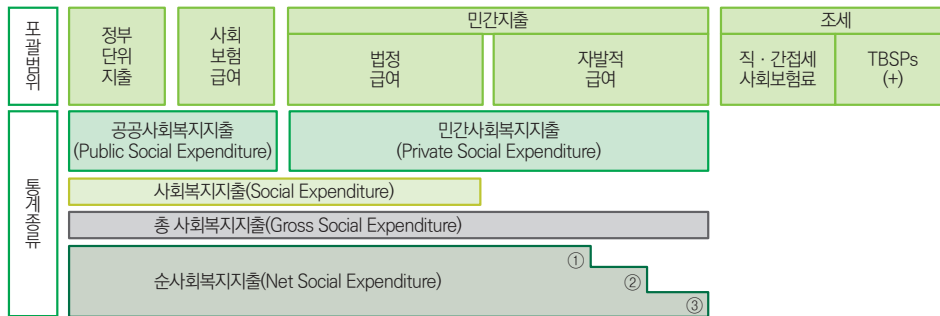
자료: 이태열 외(2014)를 수정보완함.

2) 사회복지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

◆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은 다음 <그림 I-5>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그림 I-5 사회복지지출 개념도



주: 1) Tax: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등임.

2) 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비영리법인재산·근로자소득공제·지방세감면대상자·장애인용의료용구관세 등에 대한 조세혜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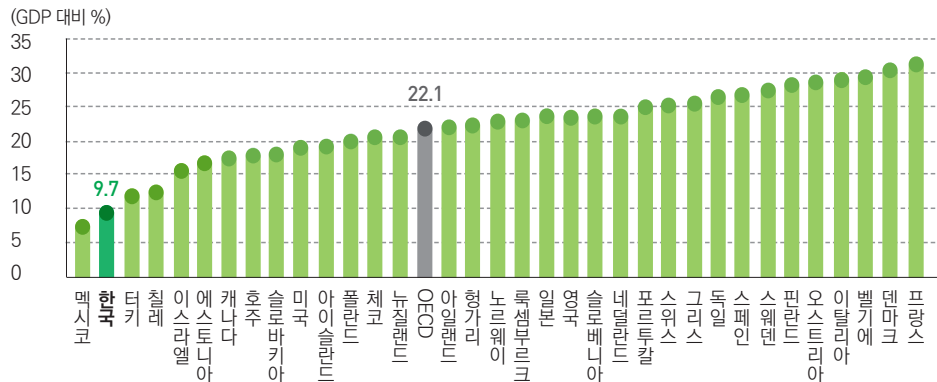
3) ①은 Tax>TBSPs, ②는 Tax=TBSPs ③ Tax<TBSPs임.

자료: 고경환 외(2011).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편임.

- 2011년 기준으로, OECD 전체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2.1% 이나, 한국은 9.7% 수준임.

그림 I-6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1년)



주: 공공부문과 법정급여부문을 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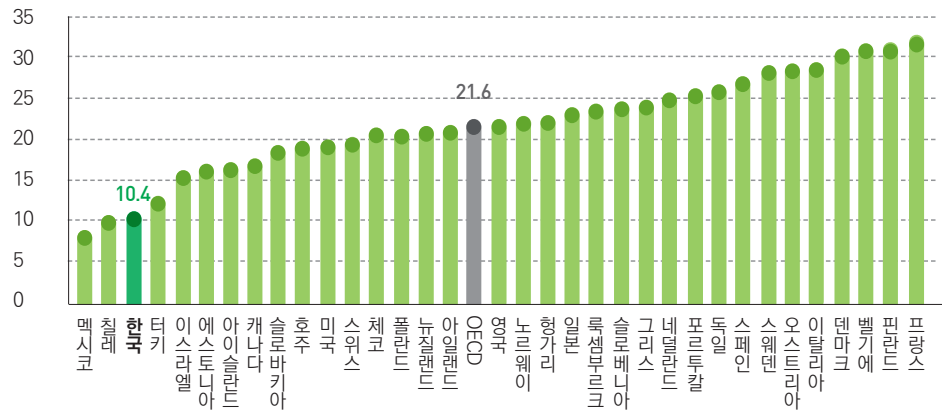
자료: OECD(2015a).

◆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임.

- OECD 전체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1.6%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10.4% 수준임(2014년).

그림 I-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4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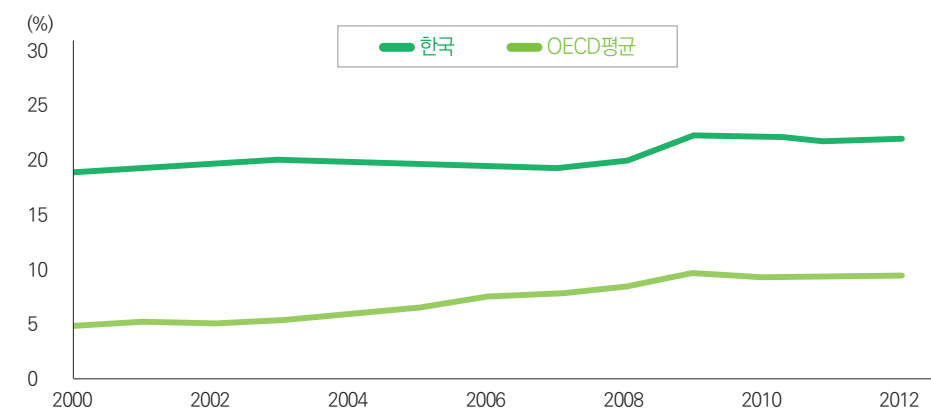


자료: OECD(2015a).

◆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고령화와 함께 국민의 복지수요 증대를 고려하면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8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0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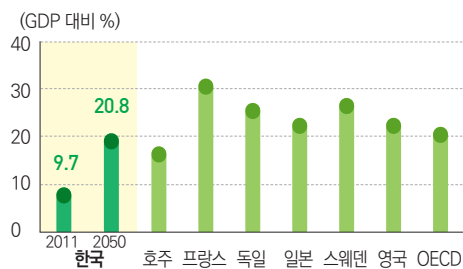


자료: OECD(2014a);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복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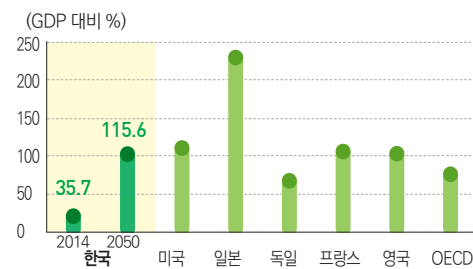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현 복지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GDP 대비 20%(현 선진국 수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상회하여 재정건전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주: OECD 국가 2011년 기준.
자료: OECD(2015a); 이태열 외(2013) 재구성.

그림 I-10 GDP 대비 국가채무 국제비교



주: OECD 국가 2014년 기준.
자료: OECD(2015b); 이태열 외(2013) 재구성.

0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가. 고용 및 경제활동

◆ 고령화과정에서 50대, 60~64세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30.9%)보다 0.4%p 증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 30대 순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낮은 편임.
-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20대 고용률을 추월함.

표 I-9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2000	60.1	72.5	76.4	66.5	53.0	29.4
2005	61.2	72.3	77.1	68.1	53.4	29.8
2010	58.2	72.0	77.8	70.9	53.7	28.7
2011	58.5	72.2	78.4	71.6	55.1	28.9
2012	58.1	72.7	78.3	72.2	56.1	30.1
2013	56.8	73.2	78.4	73.1	57.2	30.9
2014	57.4	73.9	79.1	74.2	58.3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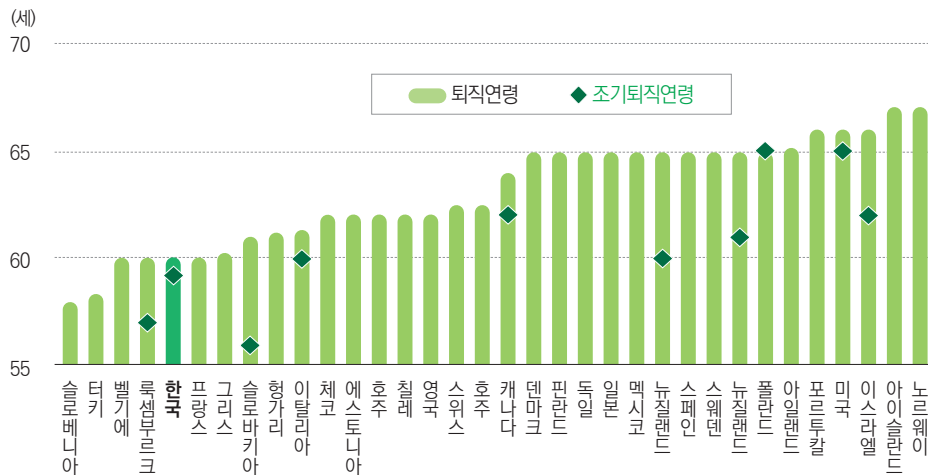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 그러나 일반적으로 50대, 60~64세의 고용환경은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조기퇴직) 선진국에 비해 실질적 퇴직연령은 매우 낮아 53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 「청년층·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남성 55세, 여성 52세)로 나타남.¹
- 2016년 이후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어 퇴직연령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해되나 현실적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미지수임.

그림 I-11 퇴직연령 국제비교(2014년)



자료: OECD(2015c).

◆ (짧은 근속기간)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후자산 축적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15년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9.4개월로 2014년(15년 4.0개월)에 비해 6.6개월 줄었음.
 - 성별로 보면, 남자(18년 7.8개월)가 여자(10년 9.9개월)보다 평균 근속기간이 7년 9.9개월 더 길었지만, 전년보다 남녀 모두 4.5개월, 8.7개월 감소함.

1 방하남 외(2012).

표 I-10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55~64세)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전체	17년 3.1개월	17년 0.2개월	16년 4.7개월	16년 3.9개월	15년 4.0개월	14년 9.4개월
남자	20년 5.7개월	20년 3.1개월	20년 0.6개월	19년 10.7개월	19년 0.3개월	18년 7.8개월
여자	13년 10.6개월	13년 7.7개월	12년 7.1개월	12년 7.3개월	11년 6.6개월	10년 9.9개월

주: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기준;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19.6%)’가 그 다음 순임.
- 그 외에,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8.4%)’로,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28.7%)’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표 I-11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2015년)

(단위: %)

구분	계 ¹⁾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정년 퇴직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 다고 생각해서	기타 ²⁾
전체	100.0	34.1	19.6	16.0	10.5	8.1	2.6	9.0
남자	100.0	39.8	15.2	1.0	18.4	14.5	2.0	9.1
여자	100.0	29.2	23.4	28.7	3.8	2.8	3.1	9.0

주: 1)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포함.
 자료: 통계청(2015. 7. 23);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나. 경제력 수준 및 노후부양 의식

1) 소득/소비

가)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가계수지 비교

◆ 노인가구의 경제상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 모두 전체 가구의 65% 내외여서 경제생활 수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81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430만 원의 65.4%였으며, 월평균가계지출은 210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 가계지출의 62.7% 수준임.
- 1인당 기준²⁾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들 가구의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5.3%, 가계 지출은 8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12 60세 이상 가구 및 전체가구의 가계수지 비교(2014년)

(단위: 명, 세, 월 천 원, %)

구분	60세 이상 가구 ¹⁾ (A)				전국가구(평균, B)	
			1인당 기준 ²⁾		1인당 기준 ²⁾	
가구원 수	2.46				3.21	
가구주연령	68.81				49.93	
소득	2,812	(65.4)	1,143	(85.3)	4,302	1,340
경상소득	2,655	(63.9)	1,079	(83.4)	4,154	1,294
가계지출	2,105	(62.7)	856	(81.9)	3,356	1,045
소비지출	1,617	(63.4)	657	(82.7)	2,551	795
가처분소득	2,324	(66.4)	945	(86.7)	3,498	1,090
평균소비성향	69.6				72.9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

3) ()안의 수치는 전국가구의 해당 변수 값에 대한 60세 이상 가구의 해당변수 값 비율임.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재구성(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 nn_path=13).

2 소득 및 소비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함.

나) 연령별 근로소득 및 총소득

◆ (근로소득)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2.9%였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238만 원이었음.

-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은 높아지나 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득규모별로 보면, '250~350만 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150~200만 원 미만'이 21.5%로 다음으로 높았음.

표 I-13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근로소득

(단위: 명, %, 만 원)

구분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액						
	사례 수	있다	사례 수	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50만 원 미만	3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035	42.9	872	14.0	21.5	20.2	29.5	14.8	238.06
20대	351	69.3	243	15.5	38.0	30.7	13.2	2.6	189.09
30대	402	58.0	233	6.8	15.5	21.0	45.8	10.9	249.52
40대	456	43.5	198	9.1	13.5	13.1	39.2	25.0	277.49
50대	407	30.9	126	15.3	11.3	10.9	25.2	37.3	293.58
60세 이상	418	17.0	71	43.4	24.5	18.1	12.3	1.6	160.11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총소득)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 총소득³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75.7%였으며, 월평균 총 소득액은 384만 원이었음.

- 근로소득과 달리 50대에서 총소득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⁴ 월평균 총 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득규모별로 보면, '150~200만 원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만 원 미만'이 28.4%로 높았음.

3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의 합을 의미함.

4 이는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임.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40대, 50대에서 가장 높고, 자산소득은 50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표 I-14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월평균 총소득

(단위: 명, %, 만 원)

구분	총소득 유무		총 소득액						
	사례 수	있다	사례 수	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50만 원 미만	3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035	75.7	1,540	28.4	31.6	20.6	12.2	7.3	384.38
20대	351	75.1	264	51.7	40.8	5.5	1.3	0.7	209.17
30대	402	74.8	301	19.1	42.9	27.7	8.3	2.1	328.30
40대	456	80.3	366	14.6	23.5	31.6	19.2	11.0	495.09
50대	407	81.1	330	18.1	26.8	20.2	20.0	14.8	538.06
60세 이상	418	66.9	279	46.4	27.0	13.0	8.0	5.6	283.51

자료: 보험연구원(2015).

다) 가구의 소비지출

◆ (소비지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4년 255만 원으로 2013년 248만 원에 비해 2.8%가 증가함.

-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구성비율은 높지 않지만, 고령화와 관련되는 주요 항목인 보건 및 주거·수도·광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I-15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단위: 천 원, %)

연도	월 평균 소비 지출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
2003	1,700	15.0	1.4	6.6	9.9	3.5	5.8	11.7	7.4	5.9	11.0	13.8	8.2
2005	1,872	14.6	1.5	6.3	9.8	3.6	5.9	12.0	7.0	5.4	11.3	13.8	8.6
2010	2,287	13.9	1.2	6.4	10.1	3.8	6.7	11.9	6.1	5.5	13.0	12.7	8.9
2011	2,393	14.2	1.2	6.5	10.1	3.8	6.5	12.3	6.0	5.4	12.3	12.5	9.2
2012	2,457	14.2	1.1	6.8	10.4	3.8	6.5	12.3	6.2	5.5	11.7	12.7	8.8
2013	2,481	14.0	1.1	6.8	10.8	4.0	6.6	12.4	6.2	5.6	11.4	12.9	8.2
2014	2,551	13.8	1.1	6.6	10.4	4.1	6.6	13.1	5.9	5.8	11.2	13.1	8.4

주: 전국가구(2인 이상 비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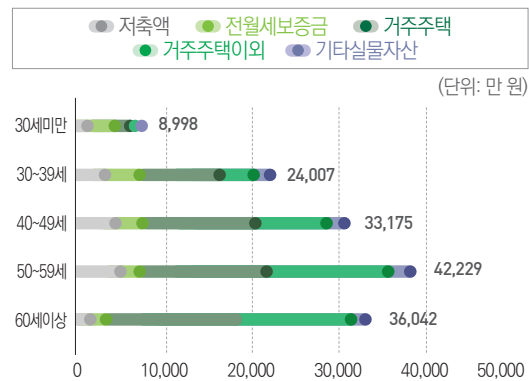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보도자료(2015. 3. 19).

2) 자산/부채

◆ (가구의 자산) 가구의 자산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가구주 가구가 4억 2천 229만 원으로 가장 많음.

-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특히 60세 이상은 자산의 77.4%가 실물자산으로 실물자산 비중 높음.

그림 I-1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2015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12. 21).

표 I-16 가구주 연령대별 실물자산 비중(2015년)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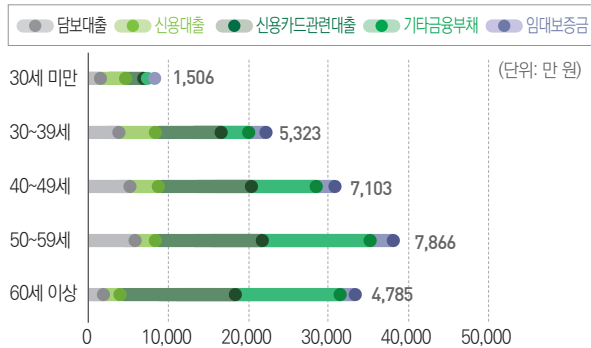
구분	자산	실물자산	
		자산	구성비
전체	34,246	24,526	71.6
30세 미만	8,998	3,209	35.7
30~39세	24,007	14,091	58.7
40~49세	33,175	22,727	68.5
50~59세	42,229	32,112	76.0
60세 이상	36,042	27,904	77.4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12. 21).

◆ (가구의 부채) 가구의 부채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7천 911만 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3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순임.

◆ (가구 재무건전성) 가구주 연령별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고령가구일수록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재무건전성을 '자산대비 부채'로 보면, 3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가구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보면, 60세 이상 가구가 가장 높으며, 노인가구는 연간 가구소득의 1.6배 수준을 부채로 떠안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 수월하지 못하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고령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그림 I-13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유형별 가구당 보유액(2015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12. 21).

표 I-17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건전성(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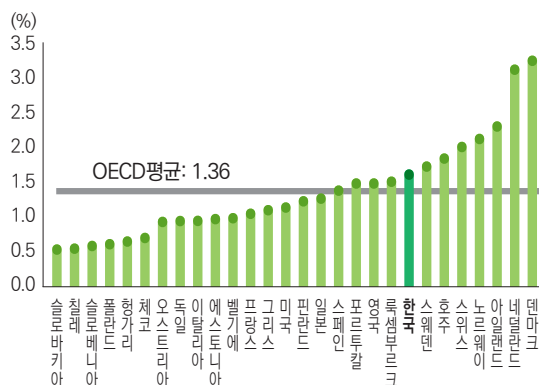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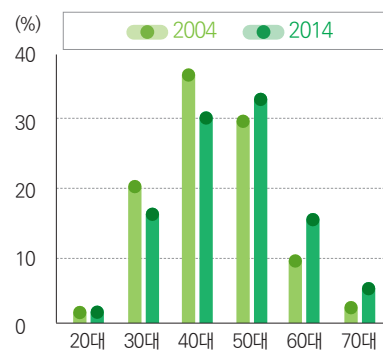
구분	부채/자산	부채/가구소득*
전체	18.1	126.9
30세 미만	4.2	43.2
30~39세	12.6	103.5
40~49세	21.4	122.0
50~59세	32.8	133.8
60세 이상	53.2	152.8

주: *통계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12. 21).

◆ (국제비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음.

- <그림 I-14>에서 보듯이 201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64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36보다 더 높음.
- 더군다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최근까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남 (통계개발원 2014).
 - 이와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2004년에서 2014년 동안 50대 이상에서 급증하였음(<그림 I-15> 참조).
 - 이를 통해 볼 때 50대 이상자의 노후준비가 그만큼 부실해 질 수밖에 없음을 방증함.

그림 I-14 OECD 국가의 가계부문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3년)주: 스위스는 2012년 자료임.
자료: 통계개발원(2014) 재인용.**그림 I-15**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주: 2004년 「노동패널」,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자료: 김자섭(2015).

3) 부양의무 견해 및 노후준비 방법

◆ 부모 부양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 추세에 있음.

-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16.5%(08) → 18.4%(10) → 22.3%(12) → 23.8%(14)로 증가 추세였음.
-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48.1%(08) → 38.3%(10) → 36.6%(12) → 34.1%(14)로 감소 추세였음.
- 한편,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35.7%로 노후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몫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표 I-18 부양의무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단위: %)

구분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타
2012	100.0	22.3	36.6	34.6	6.4	0.1
2014	100.0	23.8	34.1	35.7	6.4	0.0
남자	100.0	27.9	32.4	34.3	5.4	0.0
여자	100.0	20.9	35.3	36.7	7.1	0.0

주: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자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재인용.

◆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이하 '노인가구')는 44.9%로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임.

- 이들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저축·보험'(23.7%), '부동산 운용'(13.9%) 순이었음.
- 공적연금(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은 노후소득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나 향후 재정 문제로 인해 급여 수준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됨.
 - 이에 사적연금과 퇴직금이 1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연금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I-19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2013년)

(단위: %)

구분	준비하고 (되어)있음	소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²⁾	사적 연금 ³⁾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전 체 ¹⁾	72.9	100.0	52.5	7.8	11.3	4.6	17.4	5.3	0.6	0.4
65세 이상	44.9	100.0	37.2	12.6	4.9	5.1	23.7	13.9	0.2	2.5

주: 1) 조사대상이 19세 이상 가구주임. 2)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4. 11. 14).

- 한편, 부동산 등도 노후소득원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화 전략은 중요한 것으로 보임.

4) 노후준비 부족 이유: 연금의 미성숙

- ◆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 자산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2007~2012년 사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32.1%)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9.3%로 OECD 국가(평균 21.9%) 중 두 번째로 낮음.

표 I-20 2007~2013년 동안 실질 사회복지지출 변화율(%)

구분	2007~ 2008년 평균	2012~ 2013년 평균	실질 사회복지지출 변화율
호주	105	136	29.9
캐나다	102	114	12.0
프랑스	100	111	10.6
독일	101	107	6.0
이탈리아	102	105	3.7
일본	-	-	-
한국	106	140	32.1
스웨덴	100	110	9.8
영국	103	116	13.0
미국	102	126	23.6
OECD	102	117	13.7

주: 'Public social expenditures'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OECD(2014b).

표 I-2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구분	2012~2013년
호주	19.2
캐나다	18.3
프랑스	32.8
독일	26.0
이탈리아	28.2
일본	22.3
한국	9.3
스웨덴	28.4
영국	23.7
미국	19.8
OECD	21.9

주: 1) 멕시코가 7.4%로 가장 낮음.
2) 'Public social expenditures'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OECD(2014b).

- 또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⁵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2011년 기준)은 멕시코(1.8%)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2.2%에 불과하고, OECD 평균(28개국)인 7.9%에 미치지 못함.
- 그러나 1990~2011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OECD가 평균 27.8%(연평균 1.3%p 증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5.7%(연평균 9.8%p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관점에서 공적연금 지출 규모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표 I-22 노령 및 유족에 대한 GDP 대비 공적연금지급 비중

(단위: % of GDP)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1	1990~2011 동안 증가율
프랑스	10.6	12.0	11.8	12.4	13.8	29.5
독일	9.5	10.5	11.2	11.5	10.6	11.6
이탈리아	11.7	13.2	13.7	14.0	15.8	35.3
일본	4.8	6.1	7.3	8.5	10.2	112.1
한국	0.7	1.2	1.4	1.5	2.2	205.7
스웨덴	7.6	8.2	7.2	7.6	7.4	-2.6
영국	4.8	5.3	5.3	5.5	5.6	17.0
미국	5.8	6.0	5.6	5.7	6.7	15.3
OECD(28개국 평균)	6.2	6.7	6.8	7.0	7.9	27.8

자료: OECD(2015c), p. 179.

-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동안 GDP 대비 공적연금의 급여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⁶
- 이에 반해 OECD 모형으로 추정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2050년 경에는 OECD 평균을 웃도는 12.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표 I-23〉 참조).

5 공적연금의 성숙기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 후 약 40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1988년으로 27년에 불과함.

6 보건복지부(2013).

표 I-23 GDP 대비 공적연금지급 비중 장기추계(2010~2060년)

(단위: % of GDP)

구분	2010~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호주	2.9	-	2.5	-	2.5	-	2.6	-	2.7	-
캐나다	4.9	-	-	-	-	-	-	6.3	-	-
프랑스	14.9	14.6	14.9	14.7	14.2	13.8	13.3	12.8	12.3	12.1
독일	10.0	10.3	10.9	11.6	12.1	12.2	12.3	12.5	12.6	12.7
이탈리아	15.7	15.3	15.5	15.7	15.8	15.8	15.5	14.8	14.2	13.8
일본	11.2	10.5	9.9	-	-	-	-	-	-	-
한국	1.7	-	-	-	-	-	-	12.5	-	-
스웨덴	8.9	8.3	8.1	7.9	7.8	7.5	7.3	7.2	7.4	7.5
영국	7.7	7.4	7.8	7.9	8.2	8.4	8.1	8.1	8.3	8.4
미국	4.9	-	-	-	-	-	-	6.1	-	-
OECD	9.0	-	-	-	-	-	-	10.1	-	11.3

자료: OECD(2015c), p. 183.

- 그러나 공적연금을 뒷받침할 사적연금도 활성화되지 못해 가입률 및 유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⁷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이태열 외(2014).

0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가. 노인 빈곤율*의 지속적 증가

* 빈곤율은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율)과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이 있으며, 여기서는 상대빈곤율을 의미함.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9.6%(2013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노인 빈곤율(11.6%)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임.
- 반면에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2007년 15.1%, 2010년 12.8%,⁸ 12.6%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

표 I-24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2012년)

(단위: %)

구분	고령자(65세 이상)			전체 인구
	전체	66~75세	76세 이상	
호주	35.5	30.5	37.8	14.0
캐나다	6.7	6.6	6.9	11.8
프랑스	3.8	2.7	5.0	8.1
독일	9.4	8.1	10.8	8.4
이탈리아	9.3	9.4	9.1	12.7
일본	19.4	16.6	22.8	16.0
한국	49.6	46.1	-	14.6
스웨덴	9.3	6.6	13.5	9.0
영국	13.4	10.9	16.6	10.5
미국	21.5	17.5	27.2	17.6
OECD	12.6	11.2	14.7	11.4

주: the United States, Korea는 2013년 기준, 기타 2012년 기준.

자료: OECD(2015c), p. 171; <http://dx.doi.org/10.1787/88893330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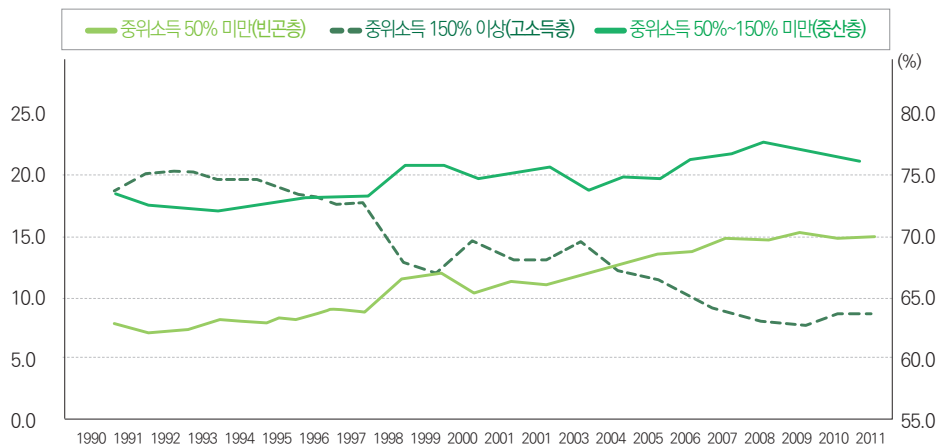
8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나.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심화 우려

◆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층이 몰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층의 비중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통계청에 의하면, 중산층(중위소득의 50%~ 150% 미만인 가구) 비중은 1990년대 후반 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과정과 동시에 진행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몰락한 중산층이 50, 60대일 경우 이는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그림 I-16 소득의 양극화: 중위소득층 비중변화



주: 중위소득은 오른쪽 축.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김동원(2013. 3. 21) 재인용.

◆ 이와 관련하여, 노인가구가 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향후 노인 빈곤의 심화가 우려될 수 있음.

-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이동하거나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0.6%는 고소득층에서, 13.1%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36.2%는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25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단위: %)

구분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상 → 상	14	14	3.7
상 → 중	16.2	11.3	7.6
상 → 빈	0.5	1.1	0.6
중 → 상	6.9	7.4	1.5
중 → 중	48.7	44.9	25.8
중 → 빈	4.6	6.4	13.1
빈 → 상	0.7	1	0.6
빈 → 중	6.2	7.5	10.8
빈 → 빈	2.2	6.5	36.2
합계	100	100	100

주: 2005년과 2011년의 비교임.
자료: 김미곤(2014).

- 이를 고려할 때 50대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에 노후준비를 충분히 해야 노인빈곤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50대를 중심으로 한 자산형성 전략이 중요함.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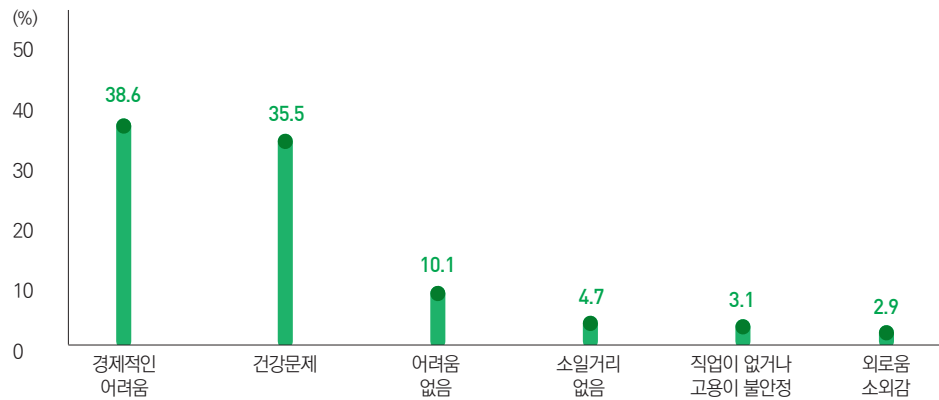
다. 고령화 및 장수화에 대비한 종합대책 미미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 건강문제는 35.5%로 나타남.

9 김미곤·정경희(2015).

그림 I-17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60세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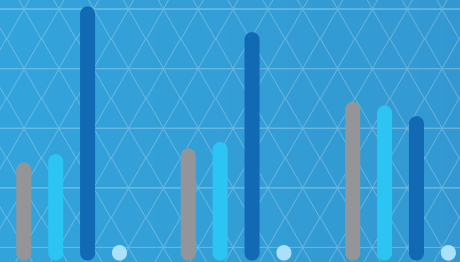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 그러나 공적 부문에서는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산업부문에서는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30년 후에는 1~2%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재정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은 줄어들고 있음.
 -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보유로 위험률이 높고 그 측정도 어려워 산업부문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I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 0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 0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 03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0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가.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형식상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연금소득 중심으로 보면,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됨.

그림II-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사적 연금	3층	개인연금보험 ('13. 12월, 876만 명+α)*			
	2층	퇴직연금 ('15. 9월 568만 명)		특수직역연금** ('12. 6월, 151만 명)	
공적 연금	1층	국민연금 ('15. 8월, 2,148만 명)			
	0층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15. 4월, 441만 명)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등

주: 1) () 안은 가입자 수. 2) *보험개발원(2015. 4. 16) 참조하되, 은행권, 증권분야의 가입자(α)는 제외됨.

3)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며, 군인은 '11년 기준으로 산출되어 합산됨.

자료: 강성호·이지은(2010); 이태열 외(2014); 저자보완.

나. 필요노후 생활비

1) 노후 최소 생활비(2015년 기준)

◆ **부부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월평균)는 236만 원으로 조사됨.**

- 생활비 구간별로는 '200~250만 원 미만'이 34.6%, '300만 원 이상'이 27.5%로 나타남.

◆ **개인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월평균)는 136만 원으로 조사됨.**

- 생활비 구간별로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31.9%, '100만 원'이 29.8%로 나타남.

표 II-1 노후 최소 생활비

(단위: 명, %, 만 원)

구분	사례 수	부부기준					개인기준					
		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평균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100만 원 초과~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035	19.2	34.6	18.7	27.5	236.23	10.5	29.8	11.7	31.9	16.1	135.74
20대	351	14.8	29.6	20.9	34.7	250.69	8.2	28.8	8.0	35.6	19.4	142.51
30대	402	13.1	35.7	21.3	29.9	243.28	8.2	27.8	12.5	34.1	17.5	138.75
40대	456	17.2	36.9	17.1	28.8	235.33	9.4	30.4	14.0	31.3	15.0	134.26
50대	407	21.9	33.7	20.1	24.3	234.35	11.3	30.9	11.6	29.8	16.5	135.48
60세 이상	418	28.3	36.0	14.9	20.8	220.09	15.4	30.9	11.5	29.3	12.9	129.05

자료: 보험연구원(2015).

2) 노후 적정 생활비

◆ **부부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월평균)는 283만 원(최소 생활비 대비 1.20배)으로 조사됨.**

- 생활비 구간별로는 '300~350만 원 미만'이 33.1%, '250만 원 미만'이 25.1%로 나타남.

◆ **개인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월평균)는 164만 원(최소 생활비 대비 1.21배)으로 조사됨.**

- 생활비 구간별로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37.8%, '200~250만 원 미만'이 27.9%로 나타남.

표Ⅱ-2 노후 적정 생활비

(단위: 명, %, 만 원)

구분	사례 수	부부기준					개인기준				
		250 만 원 미만	250 ~300 만 원 미만	300 ~350 만 원 미만	350 만 원 이상	평균	150 만 원 미만	150 ~200 만 원 미만	200 ~250 만 원 미만	250 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035	25.1	20.8	33.1	21.0	282.54	26.6	37.8	27.9	7.7	164.69
20대	351	16.6	21.1	37.2	25.2	298.70	19.6	45.2	25.0	10.2	171.61
30대	402	20.4	18.6	35.6	25.3	293.14	23.5	36.8	29.7	10.1	169.05
40대	456	26.0	19.8	35.7	18.5	279.81	27.2	35.1	29.9	7.8	164.24
50대	407	24.0	22.3	32.4	21.3	280.94	27.5	36.4	29.2	7.0	164.74
60세 이상	418	37.1	22.2	25.2	15.6	263.28	33.9	37.0	25.0	4.1	155.10

자료: 보험연구원(2015).

3)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

◆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에 대해 ‘불충분’(매우 불충분: 16.2% + 불충분: 43.3%)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나타남.

- 5점 척도로 볼 때 젊은층 일수록 자신의 노후준비 자금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근로시작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Ⅱ-3 준비하는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평균
전체	2,035	16.2	43.3	32.1	8.2	0.1	2.33
20대	351	29.9	34.1	30.7	5.3	0.0	2.12
30대	402	20.7	48.0	26.7	4.5	0.0	2.15
40대	456	12.7	51.4	27.2	8.7	0.0	2.32
50대	407	10.9	44.1	34.0	10.9	0.0	2.45
60세 이상	418	9.5	36.8	42.0	11.0	0.7	2.57

자료: 보험연구원(2015).

- ◆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49.5%)를 들었으며,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76.1%, 64.6%였음.

- 다음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24.7%), ‘노후 생각을 하기에 아직 젊어서’(13.9%) 등으로 나타남.

표Ⅱ-4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생각을 하기에 아직 젊어서
전체	1,211	24.7	49.5	13.9
20대	225	31.7	10.4	46.8
30대	277	23.7	47.1	18.0
40대	293	13.8	76.1	3.3
50대	224	22.0	64.6	1.0
60세 이상	194	37.4	40.6	0.6

자료: 보험연구원(2015).

- ◆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으로(1순위 기준) ‘국민연금 및 기타 공적 연금’(41.3%), 일반저축(20.3%), ‘개인연금’(13.2%) 순으로 나타남.

-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일반저축보다 사적연금을 노후생활 수단으로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0대, 60세 이상에서 다소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됨.

표Ⅱ-5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적연금	일반저축	부동산 관련소득	개인연금	퇴직 (연)금	사적연금
전체	2,035	41.3	20.3	11.4	13.2	8.1	(21.3)
20대	351	44.3	26.0	6.8	9.4	11.7	(21.1)
30대	402	44.5	17.8	11.5	11.6	8.7	(20.3)
40대	456	41.6	22.3	11.8	10.2	9.3	(19.5)
50대	407	44.7	15.5	14.0	11.7	6.8	(18.5)
60세 이상	418	32.1	20.6	12.4	22.5	4.7	(27.2)

주: ()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비율임.

자료: 보험연구원(2015).

다. 공적연금 현황 및 한계

1) 적은 가입자(사각지대 많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국민 기준으로 볼 때 사각지대¹⁰가 매우 광범위함.

-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세대 인구(18~59세 인구, 32,994천 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 규모(잠재적 사각지대)는 49.4%임.
- 적용사각지대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소득파악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에서 누락되는 경우(납부예외자, 체납자 등)도 있음.
- 그러나 비경제활동자와 경제활동자이더라도 실제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공적연금 비적용으로 처리되는 협업배우자 등도 있음.

표 II-6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18~59세 총인구 32,994천 명(100.0%)					
비경제활동 인구 10,626천 명	경제활동인구 22,871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 22,401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68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 명			
		납부예외자 4,665천 명	소득신고자 16,386천 명		특수직역 연금 1,444천 명
			장기체납자 1,253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 명	
32.4%	1.7%	14.2%	3.8%	46.2%	4.4%
소계 16,302천 명(49.4%)			소계 16,692천 명(50.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

◆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공적연금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1분위는 26.2%, 2분위 11.6%로 저소득층에서 미가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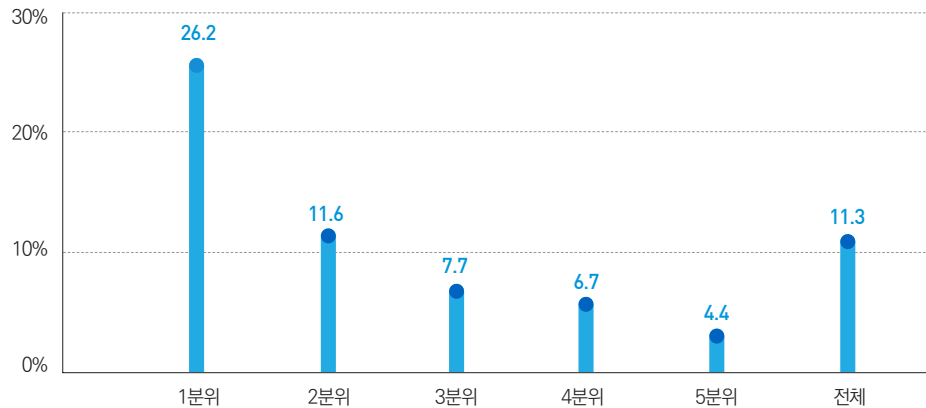
- 여기서 소득계층 이동이 크지 않다면, 근로기의 저소득층은 은퇴기에도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10 적용의 사각지대는 18~59세 총인구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인구 수를 의미함.

- 이러한 점에서 소득계층별 가입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2011년)

(단위: %)



주: 1) 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가처분소득+자산환산액)을 기준으로 구분.

2) ()안은 가로 비율임.

3) 빈도는 표본가중치를 활용한 표본가중 빈도임.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7차조사, 2011년 기준) 원시자료 분석; 이태열 외(2014)활용하여 재구성.

◆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43.3%, 수급 비율은 6.5%, 수급을 위한 대기자*는 2.2%로 나타남(보험연구원 2015).

* 의무납부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연금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현재 가입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공적연금 중 95.8%가 ‘국민연금’임.

- 이에 의하면, 국민연금 95.8%, 공무원연금 2.0%, 군인연금 0.5%, 사학연금 0.9%, 별정우체국연금 0.7%로 나타났음.

표 II-7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입(납부)	수급	대기자	비해당
전체	2,035	43.3	6.5	2.2	48.1
20대	351	38.4	0.0	0.1	61.5
30대	402	51.2	0.1	0.5	48.2
40대	456	56.4	0.5	0.9	42.1
50대	407	56.8	2.6	3.1	37.5
60세 이상	418	12.2	28.3	6.0	53.5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월평균 보험료*는 10.13만 원으로 조사됨.

* 본인 부담분을 기준으로 조사함(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4.5%, 지역가입자는 9%, 직역연금 가입자는 7%).

- 보험료 금액 구간별로는 '9~11만 원'(23.9%), '7~9만 원 미만'(23.6%)의 순으로 나타남.
- 40대와 50대에서 보험료 납부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과 관련됨.

표 II-8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보험료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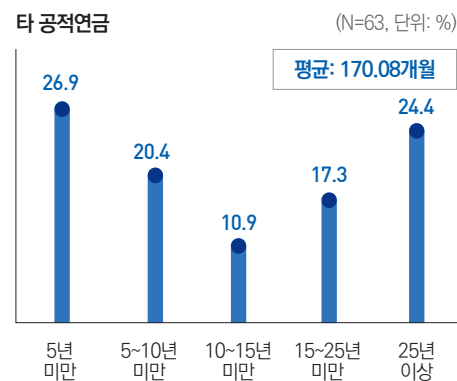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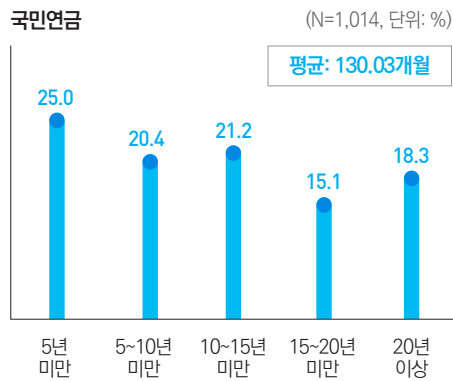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7만 원 미만	7~9만 원 미만	9~11만 원 미만	11~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
전체	880	17.0	23.6	23.9	16.2	19.3	10.13
20대	135	34.6	28.6	19.5	10.7	6.6	8.12
30대	206	12.4	22.1	27.0	22.0	16.6	10.39
40대	257	11.9	21.9	23.3	18.2	24.8	10.88
50대	231	15.6	23.1	23.7	13.6	24.0	10.42
60세 이상	51	20.8	26.9	27.4	9.4	15.6	9.27

주: 본인 부담분을 기준으로 조사함(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4.5%, 지역가입자는 9%, 직역연금 가입자는 7%).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국민연금의 평균 납부기간은 130.03개월(10.8년)로 '5년 미만'(25.0%)과 '10~15년 미만'(21.2%)이 상대적으로 높음.

- 타 공적연금의 평균 납부기간은 170.08개월(14.2년)으로 '5년 미만'(26.9%), '25년 이상'(24.4%)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3 공적연금 납부기간



자료: 보험연구원(2015).

2) 적은 수급자, 낮은 급여액

◆ 현재 공적연금 수급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낮음.

- 향후에는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급여수준의 추가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국민연금은 향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계획됨.

◆ (수급자 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는 총 253만 1천 명으로 전체 고령인구 중 39.6%를 차지함(2014년 기준).

-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2014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2.5배 수준인 39.6%이나, 여전히 과반수도 안되는 수준임.
- 연금종류별 수급자 비중을 보면 국민연금 89.8%, 공무원연금 8.8%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 급여종류로는 노령(퇴직)연금이 87.0%로 가장 많음.

표 II-9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단위: 천 명, %)

구분	합계	노령연금 ¹⁾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 ²⁾
2005	704	635	3.9	64.4	16.1
2010	1,606	1,421	9.6	175.6	29.5
2013	2,305	2,016	13.7	275.5	37.6
2014	2,531	2,202	15.0	314.5	39.6
국민연금	2,274(89.8)	1,981	13.6	279.0	35.6
공무원연금	222(8.8)	189	1.3	32.0	3.5
사학연금	35(1.4)	31	0.038	3.5	0.5

주: 1)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연금수급률 = (각 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추계인구) X 100.

3) 군인연금 제외.

4) ()안은 공적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비중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보도자료(2015. 9. 24).

◆ (수급액) 국민연금제도(1988년 도입)는 충분한 가입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급여수준은 낮은 편임.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2014년 현재 61세 이상)의 월평균 수령액은 346천 원 (2015년 7월 말 기준, 특례노령연금 제외) 수준임.

-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60만 원 수준에 그쳐 공적연금만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이 낮은 기준으로 하여 70%만 받게 되며, 최고 금액은 20만 2천 6백 원 (2015년 4월)임.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8. 29).

표 II-10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 7월 말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계 (특례제외)	노령연금 (특례제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	1,827	1,827	1,362	875
평균	333(421)	346(484)	430	258

주: 특례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여임. ()는 특례를 제외한 지급액 평균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 공표통계 2015. 7).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당기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표 II-11>에서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8.2%(11년) → 35.7%(20년) → 47.1%(30년) → 59.8%(40년) → 70.8%(50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보건복지부 2012. 7).
- 그러나 향후 15년 후인 2030년경에도 과반수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35년 후인 2050년경에도 약 30%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11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5,701	6,624	8,084	12,691	16,501	17,991
연금수급자	1,605	2,115	2,889	5,981	9,864	12,744
수급률	28.2	31.9	35.7	47.1	59.8	70.8

주: 65세 이상 인구는(11년)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15년 이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중위 가정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 7).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향후 40%¹¹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0년 미만으로 추정됨.
- 이들 세대가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될 2020년, 2025년의 노령연금액은 월 평균 각각 437만 원, 520만 원으로 분석됨.

표II-12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전망(2012년 현재화)

(단위: 천 원)

연도	분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완전노령					
2015		344	(376)	783	(856)	451	(493)	258	(282)
2020		437	(553)	897	(1,136)	478	(605)	283	(358)
2025		520	(763)	979	(1,438)	496	(728)	309	(454)
2028		555	(890)	1,000	(1,604)	499	(800)	328	(527)
2030		586	(998)	1,026	(1,747)	512	(872)	343	(584)
2040		714	(1,634)	1,099	(2,515)	550	(1,258)	430	(983)
2050		823	(2,530)	1,163	(3,576)	600	(1,844)	519	(1,596)

주: 1) 완전노령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액을 의미함.

2) ()안은 경상가(원본자료에서는 경상가로 산출됨).

3) 평균급여액은 연간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012년 가치로 환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 7)를 활용하여 재정리함.

◆ 공적연금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불만족’은 25.8%(매우 불만족: 1.8% + 불만족: 24.0%), ‘만족’은 21.7%(만족: 21.5% + 매우 만족: 0.2%)로 비슷하게 나타남.

- 공적연금에 대한 만족정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급자인 60세 이상의 경우 다소 만족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됨.

11 · 국민연금은 향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일 것으로 계획함.

표Ⅱ-13 공적연금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1,057	1.8	24.0	52.5	21.5	0.2	2.94
20대	135	1.6	20.2	58.0	20.2	0.0	2.97
30대	209	1.4	22.4	54.0	22.1	0.0	2.97
40대	264	2.0	26.4	54.5	17.0	0.0	2.87
50대	254	1.8	25.9	50.0	22.3	0.0	2.93
60세 이상	194	2.1	22.3	47.8	26.9	1.0	3.02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매우 만족=5 ~ 매우 불만족=1).
자료: 보험연구원(2015).

3) 장기적 재정불안정

◆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기금 소진 문제로 1998년,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재정 안정 중심의 개혁 조치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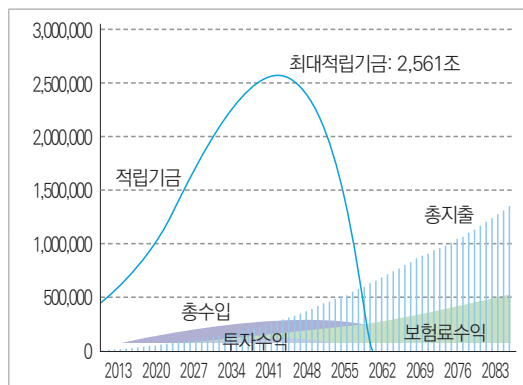
-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2008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적립기금은 2043년 최대 2,561조 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 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됨.

표Ⅱ-1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구분	최대 적립금	수지 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제 3 차	2043년 (2,561조 원, 2010년 불변가격 1,084조 원)	2044년	2060년 (△281조 원)
제 2 차	2043년 (2,465조 원, 2005년 불변가격 1,056조 원)	2044년	(△214조 원)

주: * 총수입(보험료 수입 + 기금투자 수익) < 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 28).

그림Ⅱ-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전망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 28).

0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적연금 가입 현황

1) 개인연금 가입 현황

- ◆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 대상 개인연금이며,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상품임.
- 연금저축 상품은 舊개인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계좌로 변천하면서 세제혜택의 내용이 달라져 왔음.

표Ⅱ-15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

구분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판매 기간	'94. 6. ~ '00. 12.	'01. 1. ~ '13. 2.	'13. 3.~ 현재
소득(세액) 공제 혜택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72만 원 한도)	- '01. 1~ :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06. 1~ :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 '11. 1~ : 소득공제(연 400만 원 한도) - '14. 1~ : 세액공제(12%, ¹⁾ 연 400만 원 한도)	
연금개시기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5년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5년 이상 분할수령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최소10년)
계좌이체 가능 여부	舊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가능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능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주: 1) 지방세(주민세) 포함 시 13.2%.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4. 21)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876만 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17.1%임(2013년 말 기준).

* 여기서 개인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정의하나, 은행 및 증권분야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부분은 제외됨(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5. 4. 16 참조).

- 여성 가입자 수는 440.5만 명으로 남성(435.5만 명)보다 많음.

표Ⅱ-16 개인연금보험 가입현황(2013년)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51,141	25,558	25,553
가입자 수	8,760	4,355	4,405
가입률	17.1	17.0	17.2

주: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청)이며 가입자 수는 각 연도 12월 말 기준(단, 2012년 손해보험은 2013년 3월 말 기준) 개인연금보험을 보유한 누적 가입자 수로서 중복가입을 배제하고 산출.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5. 4. 16).

◆ 개인연금보험의 연령대별 가입률(인구대비)은 40대 29.6%, 30대 26.6%, 50대 25.0%순으로 나타남.

- 이를 전체 가입자 중 연령대별 가입 비중으로 보면, 40대 30.1%, 30대 24.3%, 50대 22.9%순이었음.

표Ⅱ-17 연령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비중 및 인구대비 가입률(2013년)

(단위: %)

구분	가입자 비중	인구대비 가입률	구분	가입자 비중	인구대비 가입률
10세 미만	2.8	5.3	40대	30.1	29.6
10대	2.8	3.9	50대	22.9	25.0
20대	9.8	13.1	60대	6.2	12.2
30대	24.3	26.6	70세 이상	1.0	2.1
			합계	100.0	17.1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5. 4. 16).

2) 퇴직연금 가입 현황

- ◆ **전체 사업장(1,753천 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약 29만 개소로 도입률은 16.7%임.**

* 2013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임(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도입률이 81.2%임에 비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도입률은 16.6%로 낮음.

표Ⅱ-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단위: 천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 수	179	77	27	7.0	1.1	1.3	293
(B)전체 사업장 수	1,487	193	58	11.8	1.6	1.3	1,753
도입비율(A/B)	12.0	40.0	47.0	59.5	67.7	96.8	16.7

자료: 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가입유형별로는 DC형 단독 도입이 56.8%로 가장 높고, DB 단독 도입은 29.7% 수준임.

표Ⅱ-19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사업장 규모	DB 단독 도입	DB, DC 동시 도입	DC 단독 도입	기업형IRP 도입	합계
10인 미만	43,325	1,640	101,953	32,004	178,922
10인~29인	27,126	2,403	47,862	X	77,391
30인~99인	11,792	1,728	13,591		27,111
100인~299인	3,477	1,056	2,505		7,038
300인~499인	537	266	254		1,057
500인 이상	569	490	243		1,302
합계	86,826 (29.7)	7,583 (2.6)	166,408 (56.8)	32,004 (56.8)	292,821 (100.0)

자료: 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퇴직연금 가입자는 568만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100만 명¹²)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1.6%임.

* 2013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임(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가입유형별로는 DB형이 59.1%로 높고, DC형은 39.4%, 기업형IRP는 1.5%로 나타남.

표Ⅱ-20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DB	DC	기업형IRP	합계
'15. 9월(비중)	3,358(59.1)	2,240(39.4)	83(1.5)	5,681(100.0) (51.6)*

주: () *는 전체 상용근로자(1,100만 명) 대비 가입자(568만 명)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나. 사적연금 문제점 및 이슈

1) (가입단계) 낮은 가입률 및 낮은 지원

◆ (낮은 가입)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낮은 편임.

● 자발적 사적연금 가입률을 보면, 우리나라(23.4%)에 비해 미국 47.1%, 영국 43.3%, 독일 71.3% 등 임.

12 : 2013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임(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http://pension.fss.or.kr/fss/psn/bbs/view.jsp?bbsid=1295490315749&url=/fss/pn/1293004685675&idx=1447634661846&num=1>.

표II-21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3년)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개인연금	22.0 24.7	11.1 18.1	35.2 29.9	18.0 25.7	24.7 35.1	23.4 12.2
퇴직연금	41.6 32.8	30.0 49.1	56.4 32.2	15.1 12.1	25.7 33.9	-
소계	47.1 41.1	43.3 -	71.3 -	-	- 52.6	23.4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대비 가입률.

2) 외국 사적연금은 강제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과 비교하기 위해 임의가입 사적연금(자발적 퇴직연금 포함)만 대상으로 함.

3) 한국의 자발적 퇴직연금(적립형 IRP)은 집계되지 아니하였음.

4) ()안은 2009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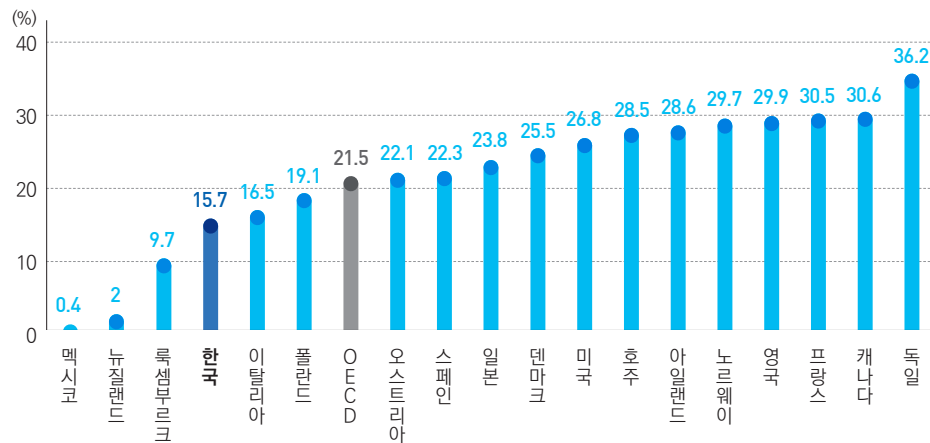
자료: OECD(2015c), p. 187; OECD(2011), p. 173.

◆ (낮은 지원)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 정도로 낮은 편임.

- 영국 78,500달러(9천만 원), 미국 16,500달러(1천 9백만 원)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 한편, 영국이나 뉴질랜드에는 세금 환급금을 IRP계좌에 넣어주는 제도도 있음.¹³

그림II-5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단위: %)



주: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자료: 류건식(2013).

13 · <http://retirement.miraeasset.com/contents/167B4F963E057492E0530100007FA998>.

◆ (연금세제 변경) 특히 2014년부터 적용되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정책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과 연금정책변경*으로 가입 유인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2012년 납입보험료 2억 원 초과 일시납연금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가 축소되었고, 경험생명표가 개정됨.

- 연금저축보험의 총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9.0조 원이던 연금저축 총보험료는 2014년 8.8조 원으로 처음으로 감소함.
- 또한, 일반연금보험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연금상품의 수입보험료는 2012년 44.1조 원으로 급등한 이후 2013년 39.9조 원, 2014년 36.7조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5. 4. 16).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개인연금보험의 2014년 수입보험료는 36.7조 원으로, 전년(39.9조 원)대비 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Ⅱ-22 연도별 연금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연금보험	11.4	13.3	13.5	24.7	21.2	19.2
전년대비 %		16.7	1.5	83.0	-14.2	-9.4
변액연금보험	8.0	9.7	11.2	11.0	9.8	8.6
전년대비 %		21.3	15.5	-1.8	-10.9	-12.2
연금저축보험	4.7	5.5	6.8	8.5	9.0	8.8
전년대비 %		17.0	23.6	25.0	5.9	-2.2
합계	24.1	28.5	31.4	44.1	39.9	36.7
전년대비 %		18.3	10.2	40.4	-9.5	-8.0

주: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한편, 제도변화가 크게 발생한 2013년, 2014년을 기준으로 초회보험료 변화를 보면, 2013년 698.3억 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04.5억 원으로 27.8% 감소함.

표Ⅱ-23 연금저축 연도별 초회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생보	손보	합계
2013년	332.9	365.4	698.3
2014년	302.7	201.8	504.5
전년대비 증감률	-9.1	-44.8	-27.8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연금상품은 정책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세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줌.

- 연금세제 및 정책변경으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가입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비중은 47.5%이나, 연금저축 납입자 비중은 3.8%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Ⅱ-24 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가입 비중

(단위: 천 명,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	91.0	174.8	589.1	931.4	618.7	2,405.0
비중	3.8	7.3	24.5	38.7	25.7	100.0
전체 인원	7,773	2,590	3,016	2,040	941	16,360
비중	47.5	15.8	18.4	12.5	5.8	100.0

주: 원천징수 실적 기준이며 소득은 과세대 상소득임.
자료: 국세청(2014), 2013년 국세통계연보.

2) (운영·적립 단계) 낮은 유지율 및 낮은 수익률

◆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유지현황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의 유지건수는 477만 건(금감원 연금저축 포털 2014. 9)으로 상용근로자 1,037만 명(고용노동부 2012)의 절반 수준임.

- 특히, 연금저축의 10년 후 가입 유지율이 52.4%에 불과하여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표Ⅱ-25 연금저축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구분	직전 1년	직전 2년	직전 3년	직전 5년	직전 10년*
은행	89.4	83.5	79.9	73.3	44.2
생보**	96.3	87.9	84.2	76.7	63.3
손보**	95.7	85.3	78.1	62.1	44.9
자산운용	87.1	83.9	78.7	79.0	52.9
평균***	95.5	86.0	80.2	72.4	52.4

주: * 2002년 중 신계약 건수 중 현재('12. 6월 말)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건수 비율.

** 보험의 경우 실효계약을 유지계약에 포함.

*** 전체평균은 '12. 6월 말 기준 금융권역별 가입건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2012. 10).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지나친 보수적·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음.

- 2011년 기준 정기예금(1년 만기) 3.68%와 비교할 때 은행의 연평균 연금저축 수익률이 3.07%로 이보다 낮았음(이태열 외 2014).
-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말 은행 연금신탁(채권형)의 경우, 국공채·금융채 63.6%, 유동성자산 17.7%로, 거의 위험이 없는 자산에 대부분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이태열 외 2014).

표Ⅱ-26 2011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구분	생보사	손보사	은행	자산운용사	정기예금(1년만기)
수익률	5.04	5.53	3.07	4.65	3.68

주: 보험회사의 수익률(공시이율)은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보험료)대비 수익률이므로, 은행·자산운용사의 수익률과 단순 비교가 곤란함.

자료: 생보협회, 손보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공시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4. 4); 이태열 외(2014) 재인용.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15. 9월 말 기준 111조 원 수준이며,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비중은 모든 제도유형에서 낮은 편임.

- 그나마 DC와 개인형 IRP에서 실적배당형에 투자하는 비중이 각각 19.9%, 17.3%로 다소 높음.

표Ⅱ-27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734,004	97.4	202,495	77.8	6,501	88.3	64,370	72.6	1,007,370	90.7
실적배당형	14,708	2.0	51,942	19.9	680	9.2	15,387	17.3	82,717	7.5
기타 ¹⁾	4,998	0.7	5,971	2.3	178	2.4	8,951	10.1	20,099	1.8
합계	753,711	100.0	260,408	100.0	7,360	100.0	88,708	100.0	1,110,186	100.0

주: 1)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현금성 자산, MMF 등).
자료: 고용노동부, '15. 9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14년 말 기준 101조 원 수준임.

- 운영형태는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낮음.

표Ⅱ-28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구(舊)개인연금저축 포함)

(단위: 억 원, %)

구분	'13년 12월 말		'14년 12월 말		증감 (B-A)	증감률 (B-A)/A	비고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은행 (연금저축신탁)	136,999	15.3	144,632	14.3	7,633	5.6	수탁잔액 기준
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56,529	6.3	65,046	6.5	8,517	15.1	순자산액 기준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477,871	53.2	534,540	53.0	56,669	11.9	책임준비금 기준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200,196	22.3	233,370	23.1	33,174	16.6	
기타 ¹⁾	26,407	2.9	30,849	3.1	4,442	16.8	
합계	898,002	100.0	1,008,437	100.0	110,435	12.3	

주: 1) 기타: 공제기관으로 우체국예금보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4. 21).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

◆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 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

-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 미만 수준임.

- 3.0%('13. 12) → 2.0%('14. 3) → 2.9%('14. 6) → 4.1%('14. 9) → 4.8%('14. 12)

표Ⅱ-29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합계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¹⁾	금액	수급자 수	금액
'14. 3/4분기	34,096	5,329	1,452	60	35,548	5,389
비중	95.9	95.9	4.1	1.1	100.0	100.0
'14. 4/4분기	32,103	4,675	1,611	69	33,714	4,745
비중	95.2	98.5	4.8	1.5	100.0	100.0
증감	△1,993	△654	159	9	△1,834	△644

주: 분기말 현재 연금 수급자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되어 있지 않음.

* 납입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여,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가 해당됨.

-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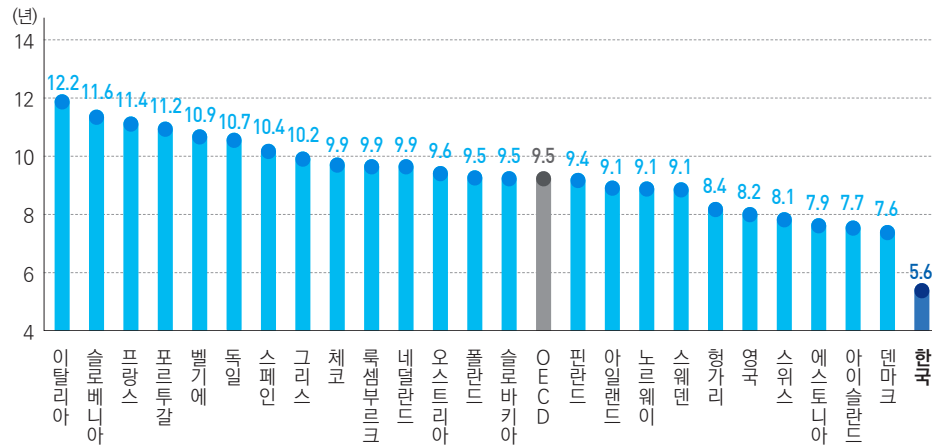
4) 기타

◆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근속연수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직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II-6 평균 근속연수 국제비교(2014년)

(단위: 연)



자료: 고용노동부(2015a).

- 이직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 계좌로 당연이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이관되지 않음.

◆ 임금피크적용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의 문제점 및 이슈

- 정년연장 의무화와 함께 임금피크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퇴직급여의 운영 특성상 임금피크 적용 시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물론 임금피크 적용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노후소득을 위한 자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음.
 - 또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사외적립 부담으로 인해 DB형에서 DC형으로 즉시적 전환이 어려움.

◆ 성격이 유사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http://retirement.miraeasset.com/show.do>).

- 연금 활성화 대책(15. 12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5. 12. 24 기재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인연금·퇴직연금의 통합관리가 시행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IRP 계좌와 개인연금의 완전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 (<http://retirement.miraeasset.com/show.do>).

다.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확대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급여확대가 어려우므로 현행 제도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소득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체납/납부예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은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되, 선진국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 공적 역할의 협조가 필요함.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¹⁴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¹⁵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2022년까지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예정임.
 - 2016년 이후 신설 법인은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함.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함.

표Ⅱ-30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예정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기한	2016. 1. 1	2017. 1. 1	2018. 1. 1	2019. 1. 1	2022. 1
대상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적용 기업 수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 8. 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급여 수준은 장기적으로 12~1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됨.

14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 8.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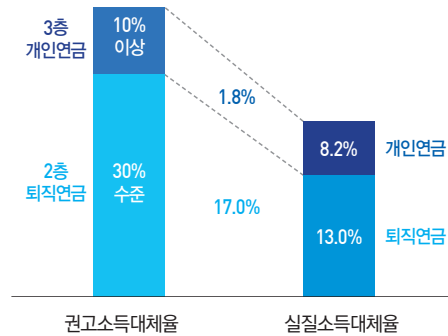
15 · 그러나 동 개정내용은 19대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국회 회기만으로 자동 폐기된다면 차기 국회에서 추진 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Ⅱ-7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가입기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년	10.5% (4.5%)	13.4% (5.8%)	17.1% (7.5%)
25년	12.3% (5.1%)	16.2% (6.7%)	21.2% (7.5%)
30년	14.0% (5.5%)	18.8% (7.5%)	25.2% (10.2%)
35년	15.4% (5.8%)	21.2% (8.2%)	29.2% (11.4%)

주: 1) 괄호 안은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2) 시나리오1=실제수익률, 시나리오2=실제수익률+1, 시나리오3=실제수익률+2%.
 3) 연금수익률은 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적용함.

자료: 류건식(2013).



주: 1) 사적 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시나리오 2 기준).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수익률은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러한 측면에서 자조적(自助的) 성격의 개인연금 강화가 요구되며, 여기에 정책적 협조가 수반되는 상황임.

- 自助的 형태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개인연금과 적립형 IRP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을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보완해 가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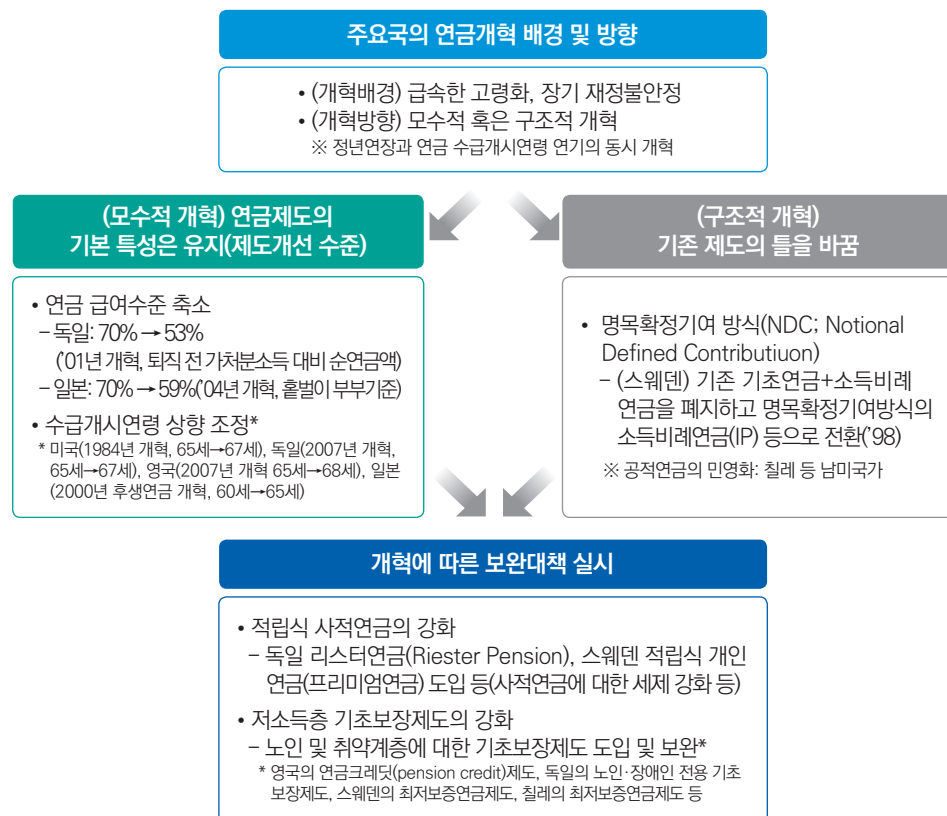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가.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모수적 및 구조적 개혁 방법으로 공적 연금 개혁을 하고 있음.

-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그림 II-8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 및 대응방향



◆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에 따라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¹⁶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2012년 제도 개혁 이전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 시 공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Contract-Out¹⁷)를 허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킴.

표Ⅱ-31 영국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구분	개혁 내용
개혁 내용	•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 완전연금 기여기간 축소(남여 모두 30년('10년~)) - 물가연동에서 소득연동으로 급여조정('12년~) • 국가2층연금을 소득비례에서 정액 급여로 점진적 전환 - 소득비례 폐지하되,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설정(법정 하한소득의 40% 지급): 사적연금으로의 적용대체 활성화 유도 • 수급개시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 - 65세에서 68세로 조정(여성: 2020년까지 65세로 조정) • 사적가입 활성화 및 규제 - NEST 연금제도 도입: 적격 기업연금에 미가입한 22세 이상 근로자(Opt out으로 운영, 피용자 4%·사용자 3%·정부 1% 부담)
평가	• 대처정부 이후 영국 연금 개혁은 '사적연금제도 장려'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보장 집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약 1천만 명의 저소득자가 자동 개인저축계좌를 통해 저축 - 개인저축계좌의 낮은 운영비용으로 퇴직 시 연금 기금은 25% 이상 가치 증가 •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향후 30~40년 국가가 부담할 공적연금 지출의 지속적 감소, * 급여수준의 지속적인 삭감** * 국가별 GDP대비 공적연금지출 장기추세: 2060년 기준 영국은 9.3%인 반면 프랑스 14.0%, 이탈리아 13.6%, 독일 12.8%로 나타남(OECD 2010). ** GDP대비 1인당 공적연금 수급액: 2030년 75%에서 2050년 약 56%로 감소할 전망(Disney 2004). • (저소득·취약계층 보장 강화) 기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다양한 크레딧 제도 도입, 저소득층 보장 강화

16 · 한국채권연구원(2010), pp. 50~56; 정유석(2013) 참조.

17 · DB형 퇴직연금에서 1988년 DC형 퇴직연금과 적격 개인연금으로 까지 확대한 바 있음(한국채권연구원 2010). 이후 2012년부터 DC방식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종료함(윤석명 외 2012).

◆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표Ⅱ-32 미국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구분	개혁 내용
개혁 내용	• 레이건정부의 연금개혁 - 1983년 사회보장개혁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Social Security Reform)가 핵심 개혁안을 권고 - (모수적 개혁) 사회보장체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급여를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연금개혁방안을 추구 - (부담증가, 급여삭감) 사회보장세는 늘리고 완전연금수령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 시(62세) 받는 연금급여도 연금급여의 80%에서 70%로 삭감 • 클린턴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 - 1994년 사회보험세 인상, 사회보장연금의 민간시장 활용확대, 사회보장세 일정부분을 DC형 개인계좌로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함 • 부시정부의 PPA(Pension Protection Act 2006년 8월) 도입 - 퇴직연금 적립기준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한시적 연금세제 혜택 연장, 확정 기여형제도에 대한 연금지급보장 보험요율을 인상 • 오바마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 -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상, 사회보장세 일부를 개인이 운용, 사회보장연금의 급여 축소를 검토 중
	• 공적 역할 완화, 민간 역할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 추진
평가	• (공적연금) 부담 증대와 급여 축소 • (사적연금) 사적연금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 및 맞춤형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혁 추진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

-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에 있었음.¹⁸
-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2001년)을 통해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음.¹⁹

표Ⅱ-33 독일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구분	개혁 내용
개혁 내용	• 2000~2001 연금개혁 - 장애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억제를 위한 조치('00년) - 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 도입('01년) - 국고보조의 인증제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 강구 *리스터보조금은 보조금(기본+자녀)과 세금공제 형태로 구성,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 • 2004년 연금개혁(DB → 準DC로 전환) - 자동재정화장치 마련: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고정('30년까지 22%),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는 장치(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 - 2030년까지 표준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유지 • 2007년 연금개혁 - 지급개시연령을 2012~2029년 동안 65세에서 67세로 조정
평가	•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 •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룸 • 나이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이 이루어짐

18 · 김원섭 외(2012).

19 · 차지훈(2014); 이석호(2015)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스웨덴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1998년 전면적 연금개혁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

- 공적연금 역할 축소 및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

표Ⅱ-34 스웨덴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구분	개혁 내용
개혁 내용	• (구조적 개혁)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연금개혁 - 기존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IP) 등으로 전환('98) • 재정안정화 제고(급여율,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등 변경) ※ 급여의 자동안정장치 설정(장기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 간 비율이 1을 유지하도록 하고 1보다 적으면 제도개혁) - 기금적립 강화조치(부분적립방식 도입) • 기여-급여 간 형평성 강화 및 세대 간 부담 형평성 제고 - 기초연금의 폐지, 소득비례연금체제로 개편 • 적립식 사적연금의 강화: 적립식 개인연금(PP) 도입 • 저소득층 기초보장제도의 강화: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
평가	•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지출 억제 · 안정적 운영 * 국가별 GDP대비 공적연금지출 장기추세: 2060년 기준 스웨덴은 9.4%인 반면 프랑스 14.0%, 이탈리아 13.6%, 독일 12.8%로 나타남(OECD 2010) • (공적연금 역할 축소 · 사적연금 역할 강화)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 * 조세공제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 증가 유도로 사적연금 역할 확대 * 2005년 최종임금 대비 53%였던 평균임금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0년 50%, 2030년 43%, 2050년에는 40%로 감소할 전망(스웨덴 사회보험청 2005) - 개혁 이전 기초연금에 비해 개혁 이후 최저보증연금 수준 두 배 이상 증가→ 공적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 (시사점) ①기대수명 및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②국가 역할 축소 ('적정보장'→'최저보장')

◆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2000년부터 공적연금의 급여축소, 수급 연령 상향 등의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 역할 강화

표Ⅱ-35 일본의 공·사연금 개혁과 평가

구분	개혁 내용
개혁 내용	• 1999년 공적연금 개혁 - 후생연금보험의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2013년 60세→ 2025년 65세) -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을 5% 정도 인하 • 2004년 공적연금 개혁 - 연금생활자의 연금급여를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준 DC형으로 변경) -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 실시 - 국민연금 급부비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 • 2007년 공적연금 개혁 - 2007년에는 70세 이후 일정 이상의 소득발생 시 후생연금보험 지급정지제도 시행(노령 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 노령후생연금 연기 지급제도(66세 이후 수령 가능) 시행
평가	• (모수적 개혁) 개혁속도가 느리고 부분적인 공적연금의 개혁을 추구 - (정치적 요인) 주 요인은 일본의회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에서 일본이 진퇴양난 입장에 있기 때문 - 고령층의 유권자 증가로 정치권은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 -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 하는 등 저연령층의 사적연금 역할이 확대될 전망 • 향후 일본의 정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개혁 불가피 전망

나. 시사점

◆ 국가별 GDP대비 사적연금자산(pension fund)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적연금자산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를 위해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OECD(34개국) 평균인 37.2%에 비해 29.9%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6 국가별 GDP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 추이

(단위: % of GDP)

국가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호주	69.9	87.1	93.3	89.4	91.2	110.0
캐나다	52.5	61.6	50.1	63.1	65.2	76.2
덴마크	30.0	31.6	45.9	48.3	48.9	48.6
프랑스	-	0.0	0.1	0.2	0.3	0.5
독일	3.8	4.2	4.7	5.4	6.1	6.7
이탈리아	2.5	2.9	3.3	4.4	5.4	6.7
일본	24.9	26.2	23.1	25.3	26.4	30.2
한국	1.5	2.6	2.8	3.7	4.9	7.3
네덜란드	101.4	116.0	104.9	120.4	144.4	159.3
스웨덴	6.9	8.7	6.9	9.0	10.1	9.3
스위스	98.9	108.4	90.1	102.5	107.7	120.3
영국	64.8	79.7	63.8	82.7	96.9	96.0
미국	73.3	76.5	59.1	73.8	73.8	83.0
OECD(34개국)	28.4	31.1	27.3	32.3	33.4	37.2

주: 1) '-'는 자료가 없음.

2) OECD(34개국) 평균은 국가별 비중을 단순 평균함.

자료: OECD(2015e), Table A.3 참조(<http://www.oecd.org/daf/fin/private-pensions/globalpensionstatistics.htm>).

- 한편,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GDP대비 적립비중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그 비중은 높은 편임.

- 우리나라 공적연금 적립비중은 29.9%인데 반해 OECD 평균은 19.7%로 나타남.

표II-37 주요국의 공적연금의 GDP대비 적립 비중(2013년)

(단위: % of GDP, 백만 USD)

국가	% of GDP	공적연금 적립액(USD)	GDP(USD)
호주	6.1	85,597	1,409,763
캐나다	17.2	307,370	1,779,849
덴마크	n.a.	n.a.	348,512
프랑스	2.5	71,575	2,918,955
독일	n.a.	n.a.	3,874,554
이탈리아	n.a.	n.a.	2,219,609
일본	26.8	1,223,863	4,559,620
한국	29.9	404,543	1,354,411
네덜란드	n.a.	n.a.	897,597
스웨덴	28.0	164,650	587,661
스위스	n.a.	n.a.	712,654
영국	n.a.	n.a.	2,821,169
미국	16.5	2,764,431	16,768,050
OECD	19.7	5,279,423	48,057,587

주: GDP는 공적연금 적립액과 GDP대비 비중을 활용하여 추계함.
 자료: OECD(2015c), p. 191에서 공적연금만 대상으로 정리.

◆ 선진국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 온 것으로 판단됨.

III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 0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 02 개인형 퇴직연금(IRP)
- 0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 개인형 사적연금은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를 포괄하는 개념임.



0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가. 개인연금 가입 실태 및 인식

- ◆ 한 번도 개인연금 가입경험이 없는 비율이 47.1%로 조사됨.
- 현재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비율은 22.1%였으며, 수급 중이거나 대기자*인 경우는 14.0%,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1%로 조사됨(복수 응답 기준).
- * 의무납부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연금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표 III-1 개인연금 가입 상태(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재 납부하고 있음 (한꺼번에 납부 포함)	현재 연금 수급 중/ 납부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음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음
전체	2,035	22.1	14.0	17.1	47.1
20대	351	13.1	0.1	6.2	80.7
30대	402	26.6	0.7	18.1	54.8
40대	456	29.6	5.2	21.9	43.8
50대	407	25.0	19.0	23.9	32.7
60대 이상	418	14.3	43.4	13.3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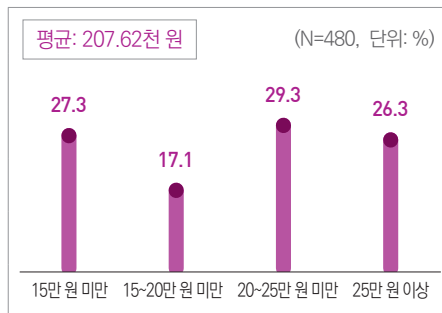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한 개인연금 납입 방법은 대부분 월납 형태였으며, 1회 납부 보험료는 평균 20.76만 원으로 조사됨.

- 가입한 개인연금은 ‘매월 보험료 납입’(99.5%)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개인연금의 1회 납부 보험료는 20.76만 원이었으며, 납부액 구간별로는 ‘20~25만 원 미만’(29.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3년 이후 가입한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부액은 오히려 이전 가입에 비해 적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때문으로 이해됨.

* 납입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여,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IRP(퇴직연금)가 해당됨.

그림 III-1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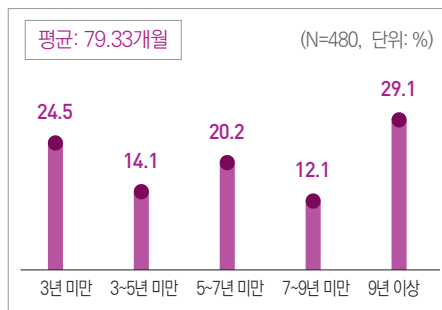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표 III-2 개인연금 1회 납부 보험료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전체	480	20.76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24.00
	2001년~2012년 가입	249 21.88
	2013년 이후 가입	82 16.21
세제비적격	108	20.41

◆ 가입한 개인연금 총가입 기간은 평균 79.33개월이었으며, 가입구간별로는 ‘9년 이상’(29.1%), ‘3년 미만’(2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2 개인연금 총가입 기간



자료: 보험연구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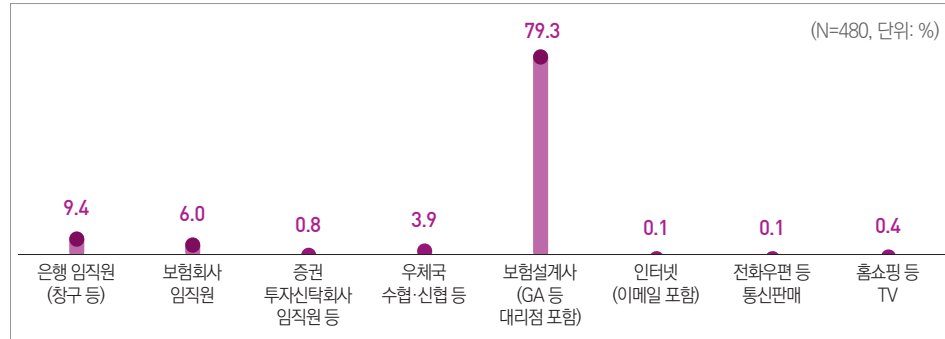
표 III-3 개인연금 가입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사례 수	평균
전체	480	79.33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171.09
	2001년~2012년 가입	249 79.84
	2013년 이후 가입	82 19.52
세제비적격	108	89.16

◆ 개인연금은 주로 ‘보험설계사(GA 등 대리점 포함)’ 등을 통해 가입함.

- 개인연금의 79.3%는 ‘보험설계사(GA 등 대리점 포함)’를 통해 가입하고, ‘은행 임직원(창구 등)’은 9.4%, ‘보험회사 임직원’은 6.0%로 매우 낮았음.

그림 III-3 개인연금 가입 경로



주: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상품설명의 충분성)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과 불충분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에게 연금상품 구매 시 판매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우수’ 27.6% (우수: 27.1%+매우 우수: 0.5%)로 나타남.
 - ‘보통’은 52.3%, ‘미흡’은 20.2%(매우 미흡: 1.6%+미흡: 18.6%)였음.
- 상품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낀 응답자의 49.5%가 ‘약관 및 안내자료 등에 소개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 ‘상품자체 보다는 세제 등 관련 제도가 복잡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 25.9%로 나타남.

그림 III-4 개인연금 상품 설명의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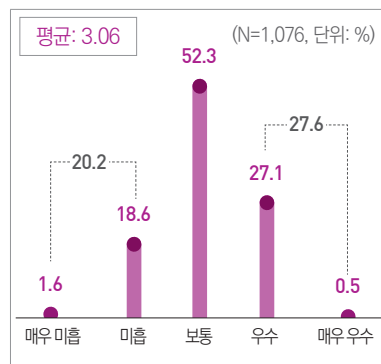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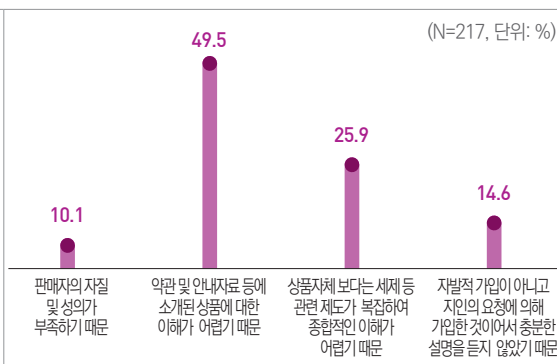


그림 III-5 개인연금 상품 설명이 미흡한 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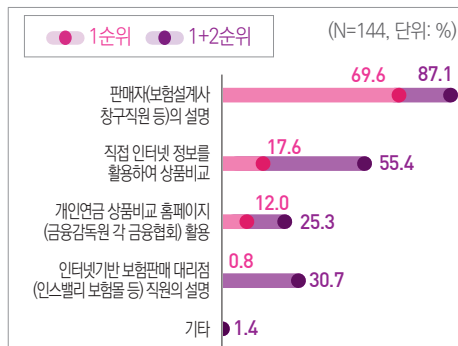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상품비교 경험)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 중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품비교'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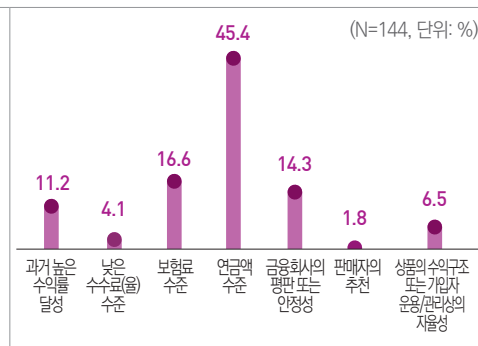
- 상품비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1순위 기준)의 69.6%는 '판매자(보험설계사, 창구직원 등)의 설명'을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직접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비교'(17.6%), '개인연금 상품비교 홈페이지(금융감독원, 각금융협회) 활용'(12.0%) 등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상품 비교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연금액 수준'이 45.4%로 높게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보험료 수준'(16.6%), '금융회사의 평판 또는 안정성'(14.3%), '과거 높은 수익률 달성'(11.2%) 순이었음.

그림 III-6 개인연금 구매 전 상품비교방법



자료: 보험연구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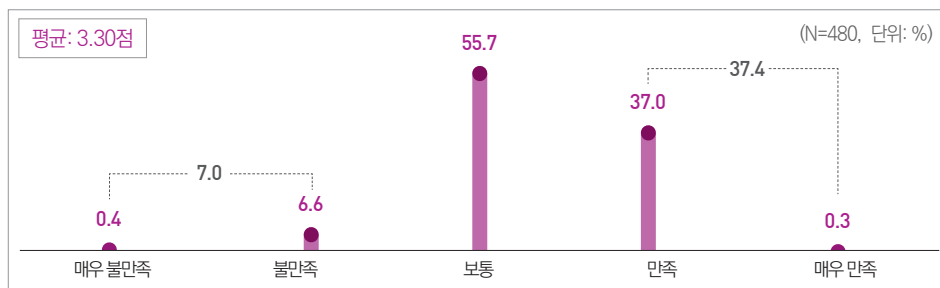
그림 III-7 개인연금 상품비교 시, 가장 중요한 요소



◆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 37.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응답자의 37.4%(만족: 37.1% + 매우 만족: 0.3%)가 '만족', 55.7%는 '보통'이었으며, '불만족'은 (7.0% = 매우 불만족: 0.4% + 불만족: 6.6%) 1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III-8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전반적 만족도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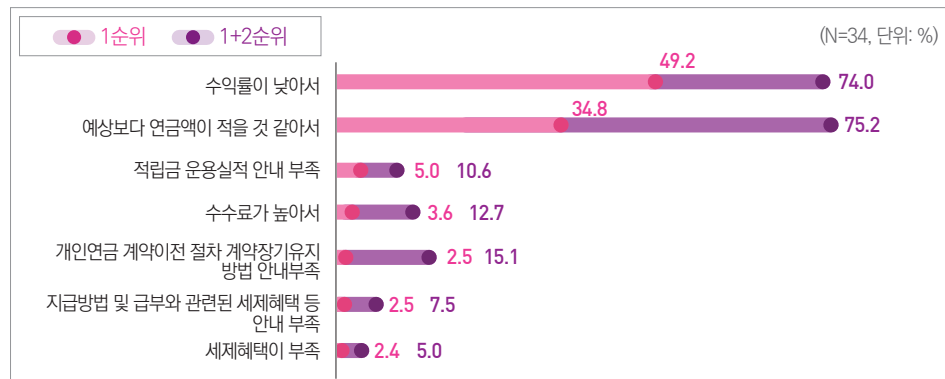
2)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임. 매우만족=5 ~ 매우불만족=1.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수익률이 낮아서’(49.2%)가 가장 높았음 (1순위 기준).

- 다음으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34.8%)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았음.

그림 III-9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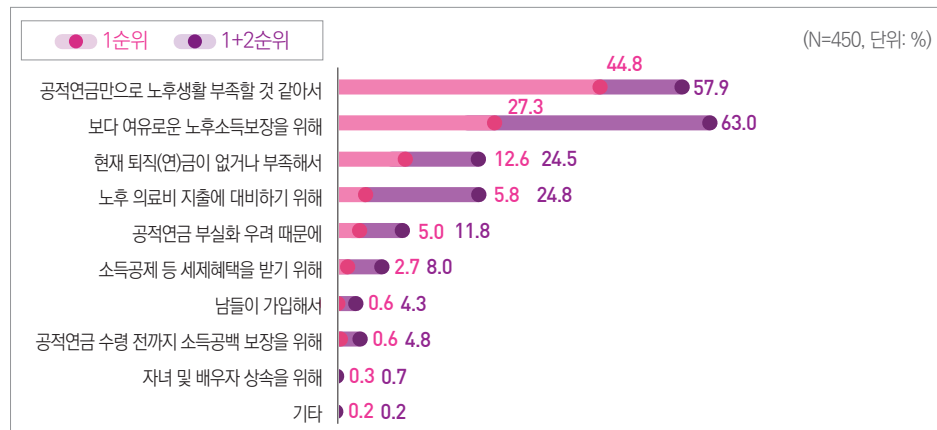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 가입 동기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것 같아서’가 44.8%로 높았음.

- 다음으로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는 27.3%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았음.
- 특이한 점은 2순위까지 고려한 복수응답으로 할 경우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가 63.0%로 가장 높음.

그림 III-10 개인연금 가입 동기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 가입 후 중도 해약 또는 해지 경험 비율은 30.2%였음.

- 중도 해약 또는 해지 경험 있는 자가 이후에 계약 부활을 신청한 경우는 5.9%(63명/1,076명)로 매우 낮음.
- 중도 해약 또는 해지한 개인연금의 가입기간은 평균 49.98개월이었으며, 가입기간 구간별로는 '2~4년 미만'이 40.1%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년 미만'이 28.8%임.
- 20, 30대는 해지세를 물더라도 해지하는 경향, 40대 이상에서는 해지세를 고려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약·해지한 이유는(1순위 기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서'가 44.3%, '목돈이 필요해서'가 39.4%로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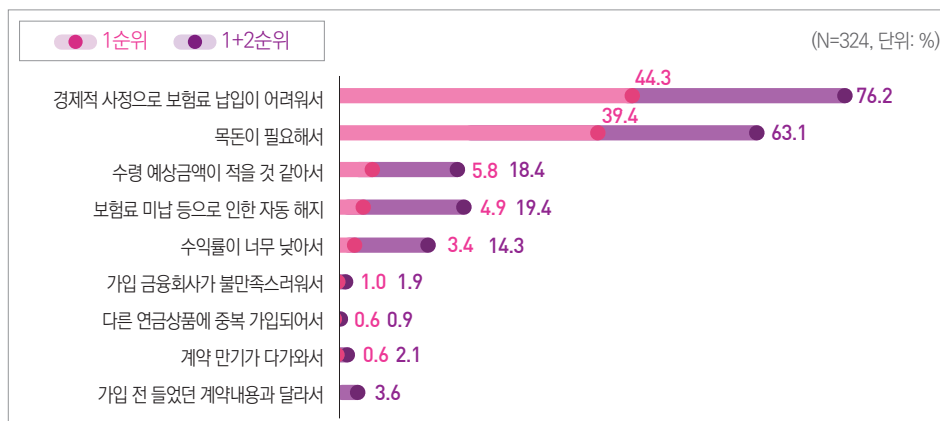
표 III-4 중도 해약·해지한 개인연금 가입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 수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전체	324	12.5	40.1	28.8	18.6	49.98
20대	20	52.6	47.4	0.0	0.0	19.72
30대	68	12.3	59.1	21.2	7.5	38.28
40대	92	5.5	38.6	36.7	19.1	54.66
50대	91	12.6	34.2	28.0	25.3	54.39
60세 이상	53	9.6	26.3	36.9	27.2	60.65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III-11 개인연금 중도 해약·해지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나. 개인연금 수급 실태 및 인식

◆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만기일시금을 수령한 적 없다’가 73.4%로 가장 높았음(복수응답).

- ‘연금이나 만기일시금을 수령하고 있다(했다)’는 18.6%, ‘대기자’*는 8.0%로 나타남.
* 납부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급연령 혹은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경험이 각각 11.8%, 54.9%로 높았음.
- 이를 볼 때 개인연금의 연금형태로의 수령을 유도하는 방향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표 III-5 개인연금·만기일시금 수령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연금이나 만기 일시금을 수령 중(함)	대기자	연금이나 만기 일시금을 수령한 적 없다
전체	1,076	18.6	8.0	73.4
20대	68	1.8	0.6	97.6
30대	182	0.2	0.6	99.1
40대	257	1.3	5.1	93.6
50대	274	11.8	16.4	72.0
60세 이상	296	54.9	9.1	36.0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수급자의 대부분은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기간으로는 종신편을 선호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 연금 수령 시 선택한 기간으로는 ‘종신’이 39.4%로 높았으며, ‘20년’은 28.7%이고, ‘10년’(11.4%)과 ‘15년’(10.4%)은 10%대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볼 때 종신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종신편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 미만’이 32.9%, ‘2~4년 미만’이 29.3%로 나타났고, 평균 59.43개월임.

그림 III-12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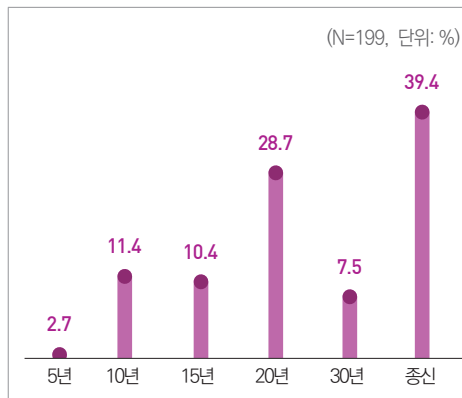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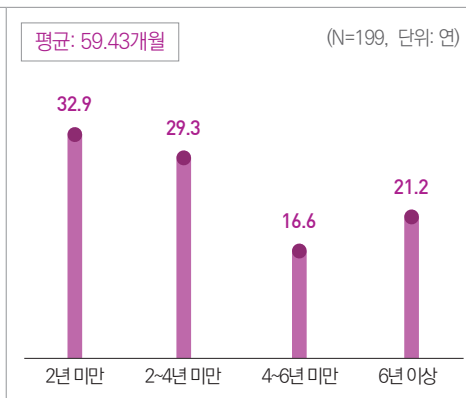


그림 III-13 실제 연금을 받은 기간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에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현재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5~50만 원 미만'(33.1%)과, '25만 원 미만'(31.1%)이 비슷하게 나타남.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4.63만 원임.

- 한편, 수급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5.4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로는 '20~40만 원'(35.1%), '60만 원 이상'(24.7%)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4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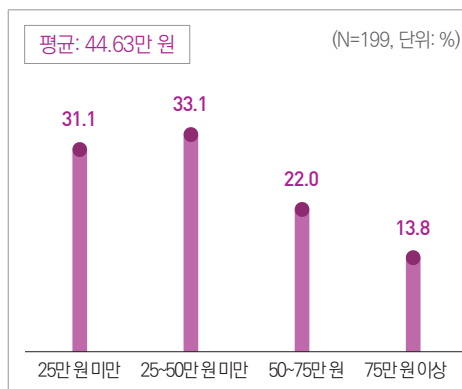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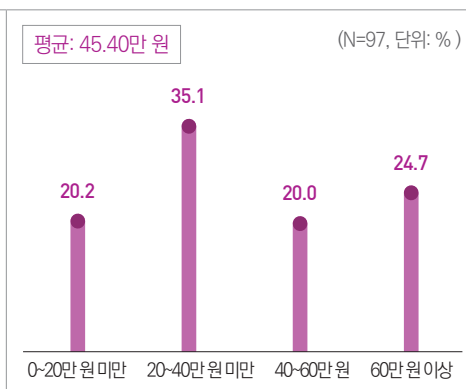


그림 III-15 대기자의 예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에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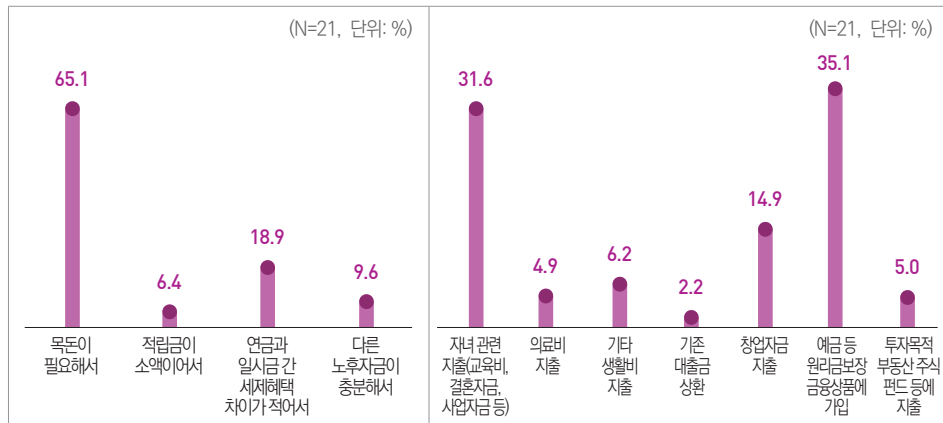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대기자 포함)는 ‘목돈이 필요해서’(65.1%), ‘연금과 일시금 간 세제혜택 차이가 적어서’(18.9%) 등으로 조사됨.

- 일시금을 사용한 주된 용도로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 금융상품에 가입’(35.1%), ‘자녀 관련 지출(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31.6%) 등으로 응답됨.

※ 퇴직 후 목돈을 활용하여 노후보장 상품을 활발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그림 III-16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이유 그림 III-17 일시금을 사용한 주 용도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수급 중에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 응답자(대기자 포함)의 35.9%가 ‘만족’(만족: 35.0% + 매우 만족: 0.9%)한다고 나타남.

-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4.9%(매우 불만족: 0.3% + 불만족: 14.6%)임.
- 불만족 하는 이유로(1순위 기준)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어서’가 59.4%, ‘수익률이 낮아서’는 32.2%로 조사됨.

그림 III-18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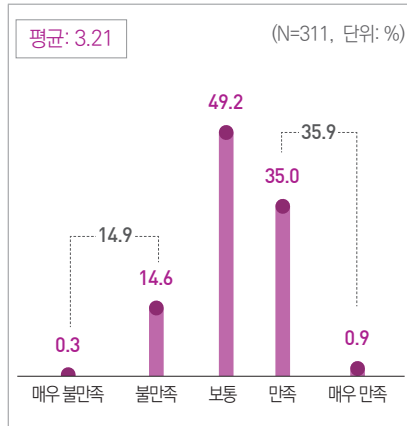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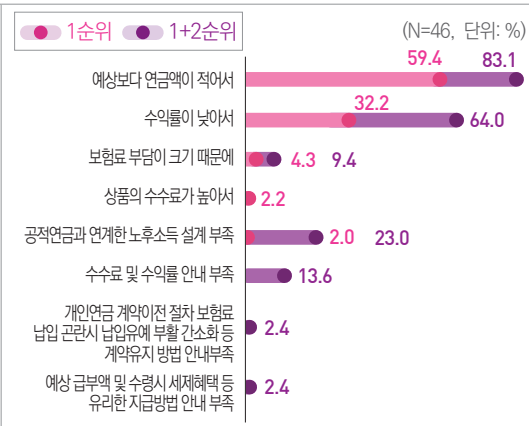


그림 III-19 수급 중 혹은 수급예정인 개인연금의 불만족 이유



주: 현재(혹은 과거에) 수령하거나(혹은 수령한)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하기로 되어 있는(대기 중인) 개인연금이 있는 가입자(수급자 혹은 대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
-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격 연금형태로 수령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음.

※ 연금형태의 수령 의사가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수령보다 일시금 수령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있음. 이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표 III-6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연금 수령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	일시금 수령	
전체	480	87.7	8.5	3.7	
세제적격	2001년 이전 가입	41	85.8	10.3	3.8
	2001년~2012년 가입	249	85.6	10.3	4.1
	2013년 이후 가입	82	89.3	7.2	3.4
세제비적격	108	92.3	4.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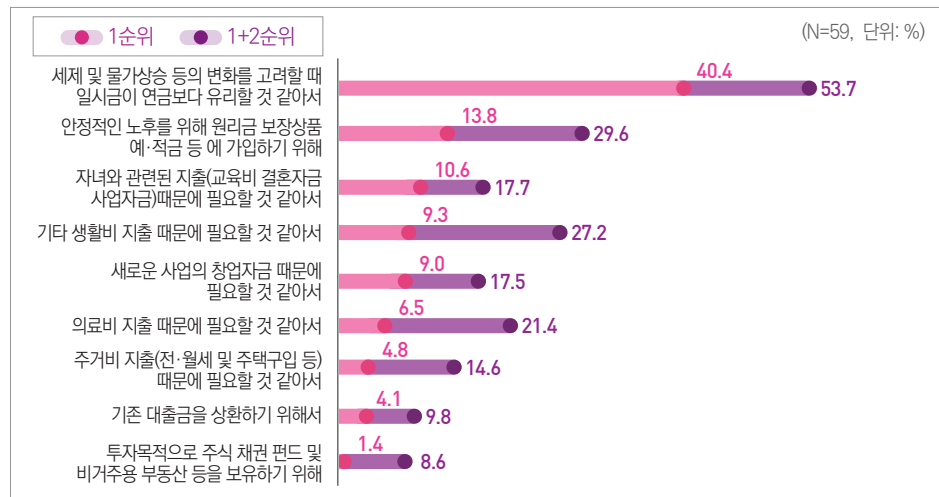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수급시점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로(1순위 기준) ‘세제 및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할 것 같아서’가 40.4%로 높음.**

- 다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기 위해’(13.8%), ‘자녀와 관련된 지출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10.6%) 등으로 나타남.

그림 III-20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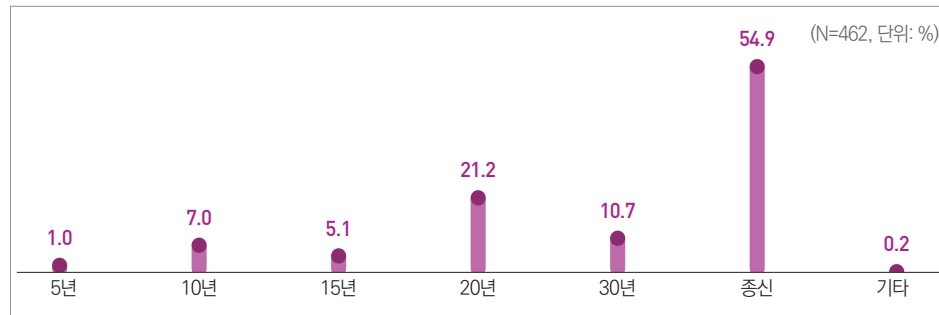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으로는 종신이 54.9%로 가장 높았음.**

- 희망하는 수령 기간은 ‘종신’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20년’(21.2%), ‘30년’(10.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III-21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



주: 1)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포함.
2)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연구원(2015).

다. 서비스 활용 및 제도 개선 견해

1)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활용 등

◆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연금상품 구매 전 상품비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13.7%로 낮은 편임.

- 동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그 만족수준은 다소 높은 61.0%로 조사됨.

표 III-7 연금저축 상품비교공시 서비스 활용여부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44	13.7	86.3
연령별	20~39세	50	12.2	87.8
	40~59세	76	15.3	84.7
	60세 이상	18	11.6	88.4
성별	남성	60	9.6	90.4
	여성	84	16.6	83.4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 중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8%로 낮음.

- 이용 경험자가 생각하는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품(계좌)의 안전성 또는 안정성(원금보장 등 관련)'이 30.7%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과거 가입 상품의 수익률이 낮음)'이 24.0%였음.
-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6.4%(만족: 45.5%+매우 만족: 0.9%)이고, '보통'이 46.8%였으며, '불만족'은 6.9%로 낮았음.

그림 III-22 계좌이체 서비스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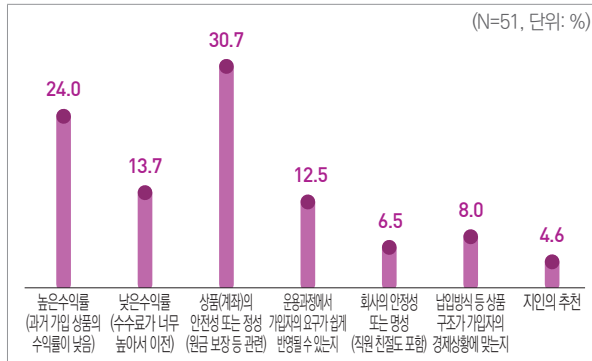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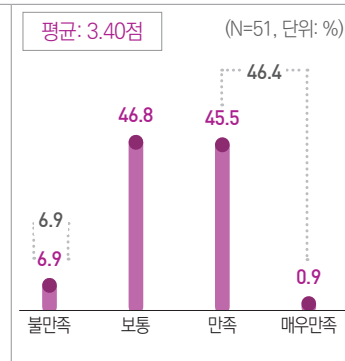


그림 III-23 계좌이체 서비스 만족도



자료: 보험연구원(2015).

2) 연금세제 변경에 대한 인식

◆ **현행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지원 방식의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17.2%로 낮았음.**

- 세제지원방식 변경을 인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변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은 28.6%, '불만족'은 22.7% (매우 불만족: 1.5% + 불만족: 21.2%)였으며, 48.7%는 '보통'으로 응답함.
-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로는 67.8%가 '세제지원 금액이 줄어서 (공제세율이 낮아서)'로 응답함.

그림 III-24 세제지원방식 변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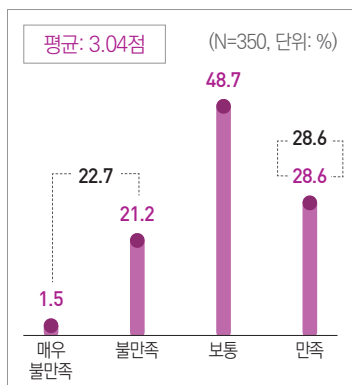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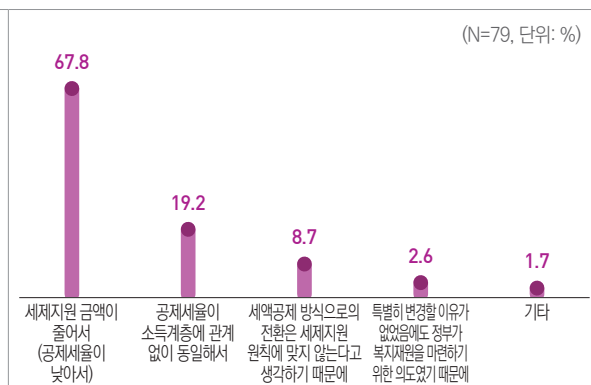


그림 III-25 세제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함(매우 만족=5 ~ 매우 불만족=1).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방식으로,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되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율 모두를 조정해야 한다’가 35.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29.6%),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되 공제대상금액만 조정하면 된다’(23.2%)로 조사됨.

표 III-8 연금세제 공제방식 변경 개선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 모두 조정	공제대상 금액만 조정	세액 공제율만 조정	기타
전체	2,035	29.6	35.3	23.2	10.9	1.0
20대	351	24.7	36.0	24.2	13.1	2.0
30대	402	31.0	35.1	21.5	12.2	0.1
40대	456	31.9	35.0	25.1	7.3	0.7
50대	407	25.9	39.3	22.9	11.3	0.6
60세 이상	418	33.6	31.2	22.2	11.0	1.9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공제대상 금액 조정 방안으로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보다 높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40.0%, ‘공제대상금액을 현행수준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1,2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35.6%로 비슷하게 응답함.
 -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현재 1,2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24.4%임.
- 세액공제율 조정 방안으로 ‘현행 세액공제율보다 높이되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표현되는 5천5백만 원의 세율 기준인 16.5%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가 42.7%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세액공제율 13.2%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일수록 공제율을 높게 설정하도록 한다’가 25.4%로 조사됨.

그림 III-26 공제대상 금액 조정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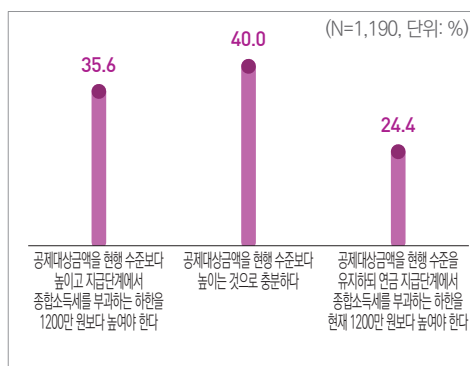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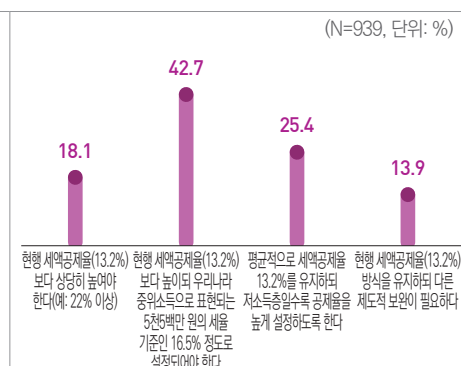


그림 III-27 세액공제율 조정 개선방안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새로운 개인연금 정책’*에 대해 ‘찬성’은 28.3%(찬성: 27.7% + 적극 찬성: 0.6%), ‘반대’는 30.2%(매우 반대: 3.0% + 반대: 27.2%)로 유사함.

* 현행 연금저축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되 장기 보유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세금부과 등을 부과하는 새로운 연금정책.

- 새로운 개인연금 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이(55.7%)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들었음.

그림 III-28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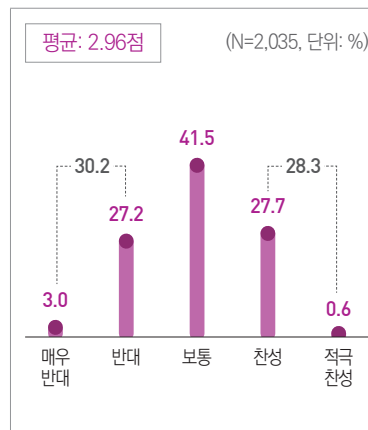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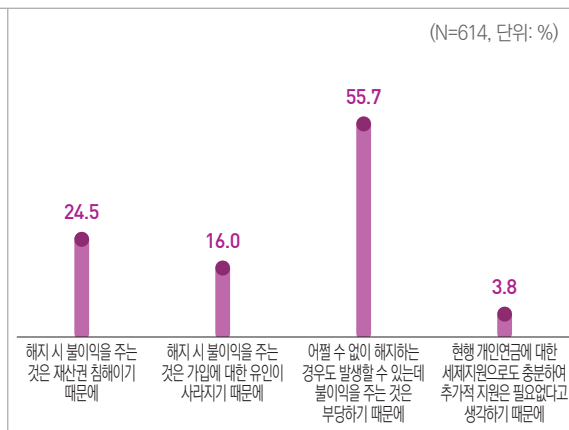


그림 III-29 새로운 연금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함(적극 찬성=5~매우 반대=1, 이하 동일).
자료: 보험연구원(2015).

◆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해 ‘찬성’은 50.6%(찬성: 48.0% + 매우 찬성: 2.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는 16.4%(매우 반대: 0.8% + 반대: 15.6%)였음.
-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5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가 41.5%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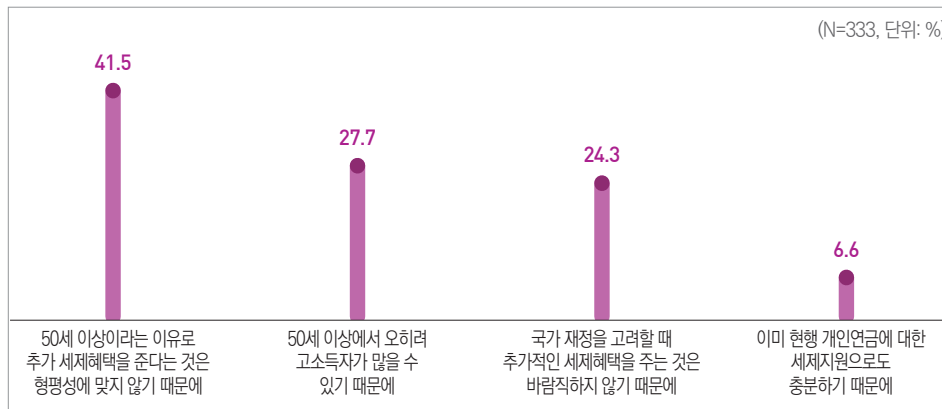
표 III-9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평균
전체	2,035	0.8	15.6	33.1	48.0	2.6	3.36
20대	351	0.6	18.2	37.9	42.7	0.6	3.24
30대	402	1.2	18.1	31.1	47.8	1.8	3.31
40대	456	1.6	16.7	36.8	42.1	2.8	3.28
50대	407	0.4	10.7	27.1	57.4	4.4	3.55
60세 이상	418	0.3	14.3	32.7	49.6	3.1	3.41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III-30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사적연금의 납부액이 연간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연간에 관계 없이 총자산 규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에 대해 ‘찬성’은 38.3%(찬성: 38.0% + 적극 찬성: 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는 21.3%(매우 반대: 0.8% + 반대: 20.5%)였음.
- 한편,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가 43.5%로 높음.
 - 다음으로 ‘연금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노후에 받는 것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4.5%)로 나타남.

그림 III-31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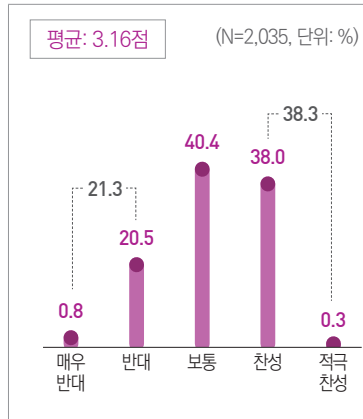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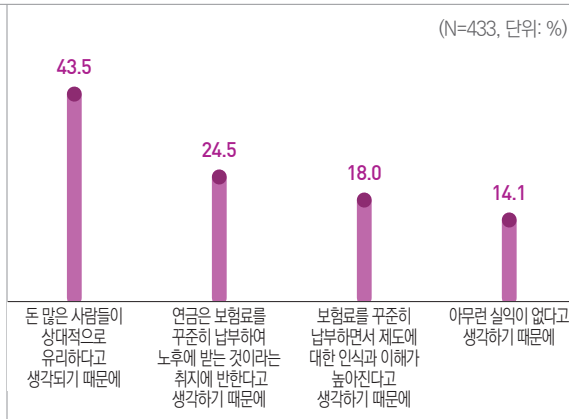


그림 III-32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 반대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응답자의 46.8%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찬성: 46.0% + 적극 찬성: 0.8%)하며, '반대'는 16.9%(매우 반대: 0.7% + 반대: 16.2%)로 조사됨.
- 한편,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현재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31.5%)와 '현재 1,200만 원 기준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8.0%)가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II-33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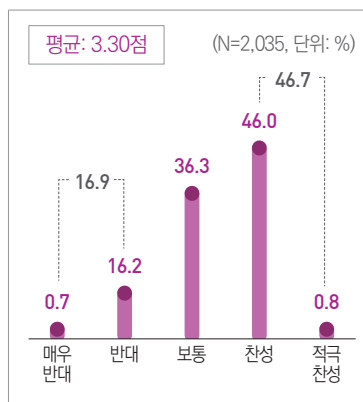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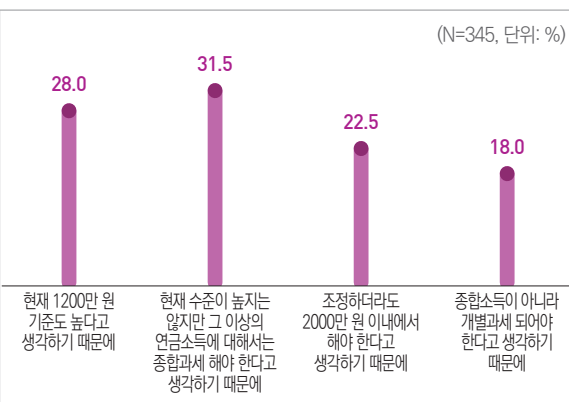


그림 III-34 소득 기준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31.4%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조사항목을 다양하게 한 결과, ‘현행 방식이 좋다’가 31.4%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 구분 없이 총공제대상금액을 연 700만 원으로 한다’는 25.5%,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이 각각 350만 원씩으로 하여 총공제대상금액을 연 700만 원으로 한다’는 22.6%로 뒤를 이음.

표 III-10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행방식이 좋다	구분없이 총공제 대상금액 연700만 원	각각 350 만 원씩, 총공제 대상금액 연700만 원	적립형 IRP 400만 원 한도, 총공제 대상금액 연700만 원	적립형 IRP 700만 원 설정, 연금저축 세제혜택 없음	연금저축 700 만 원, 설정, 적립형 IRP세제 혜택 없음
전체	2,035	31.4	25.5	22.6	11.4	6.1	3.1
20대	351	29.7	24.6	24.6	11.7	6.2	3.2
30대	402	29.9	28.3	20.4	13.4	5.3	2.7
40대	456	29.0	29.3	19.3	11.9	6.5	4.1
50대	407	32.6	22.2	26.3	9.8	6.7	2.5
60세 이상	418	35.6	22.7	23.0	10.0	5.7	3.0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계좌의 상속(승계)제도에 대해 ‘만족’은 44.5%(만족: 42.5% + 매우 만족: 2.0%), ‘불만족’은 13.7%(매우 불만족: 0.3% + 불만족: 13.4%)임.

- 한편, 동 제도를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일부 여유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이 35.8%, ‘연금계좌를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좁음’이 28.8%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III-35 상속(승계)제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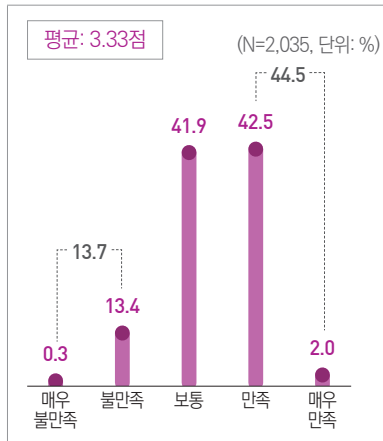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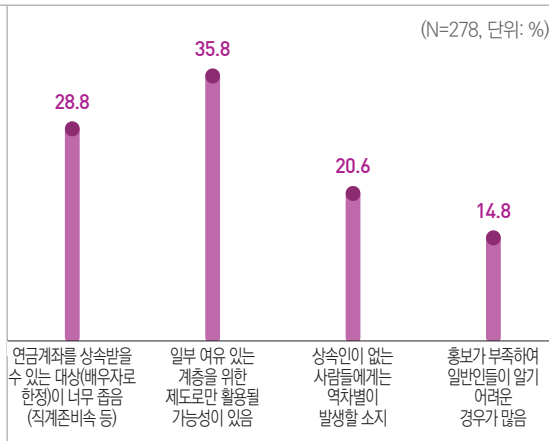


그림 III-36 상속(승계)제도를 불만족하는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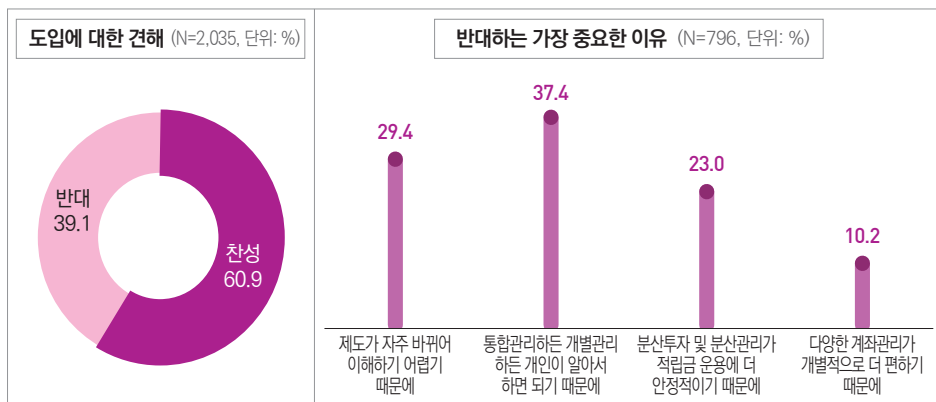
3) 신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에 대해 '찬성'은 60.9%, '반대'는 39.1%로 나타남.

* 개인종합연금계좌: 다양한 상품구조와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연금상품 구조, 자산운용, 사업자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그동안의 여러 연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한 개의 통합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가 37.4%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 다음은 '제도가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29.4%), '분산투자 및 분산관리가 적립금 운용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23.0%) 등으로 조사됨.

그림 III-37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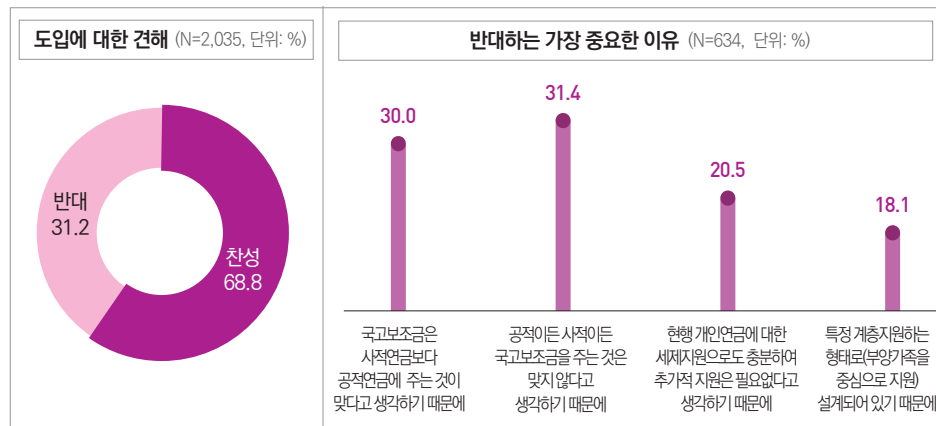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68.8%)이 ‘반대’(31.2%)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응답됨.**

* 인증형 개인연금제도: 현재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일반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형태로 정부가 보조하는 ‘인증형 개인연금제도’가 있음. 즉,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는 조건으로 인증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수(예,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보조금 제공),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함.

- 한편, 동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31.4%, ‘국고보조금은 사적연금보다 공적 연금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30.0%로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II-38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자료: 보험연구원(2015).

4) 미가입자 인식

◆ **현재 개인연금 미가입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64.4%로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이들에 대해 향후 가입 의향을 묻은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60.4%) 향후 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는 20대(67.4%), 30대(5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표 III-11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07	39.6	60.4
20대	305	67.4	32.6
30대	293	54.8	45.2
40대	300	36.6	63.4
50대	230	16.7	83.3
60세 이상	178	1.8	98.2

자료: 보험연구원(2015).

그림 III-39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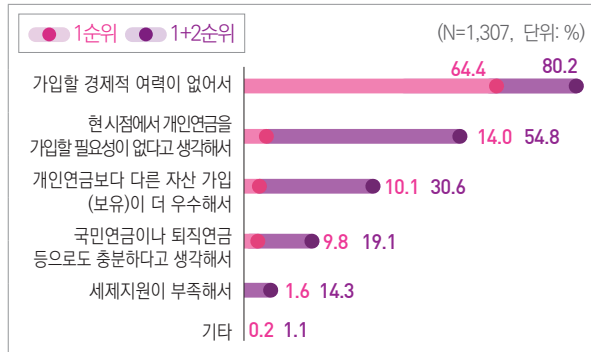


표 III-12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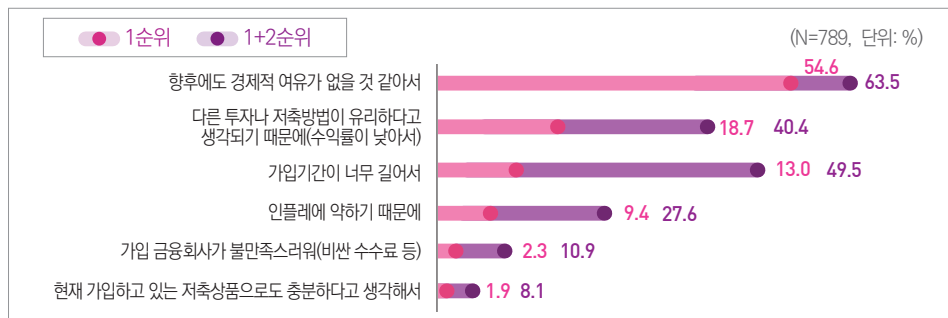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퇴직(연)금 없거나 부족	공적연금의 재정상태 불안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
전체	518	45.4	30.2	9.0	7.1	5.4
20대	206	47.8	33.3	4.0	6.3	5.5
30대	161	36.4	29.1	12.0	11.1	6.5
40대	110	52.0	25.4	15.2	3.6	3.7
50대	39	55.0	31.3	4.3	4.6	4.8
60세 이상	3	0.0	34.0	32.0	0.0	0.0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향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54.6%)가 가장 높음.

그림 III-40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0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 전반적인 퇴직연금 인식

1)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 향후 원하는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는 ‘전액 연금’(47.4%), ‘일시금 및 연금 혼합형’(35.1%), ‘일시금’(17.5%)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원하는 수급 기간은 ‘중신’(80.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응답자의 주된 이유로는 ‘세제 및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할 것 같아서’(69.7%)라고 응답함.

그림 III-41 선호하는 연금 수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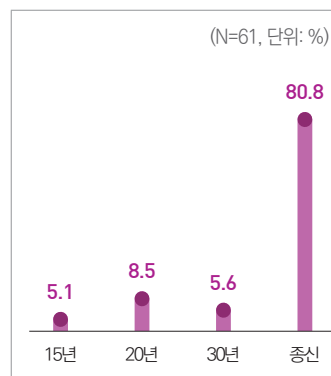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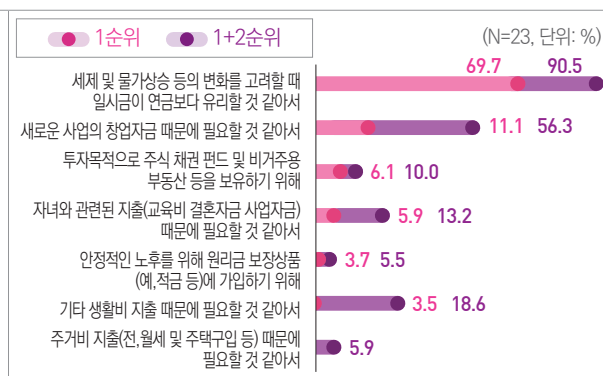


그림 III-42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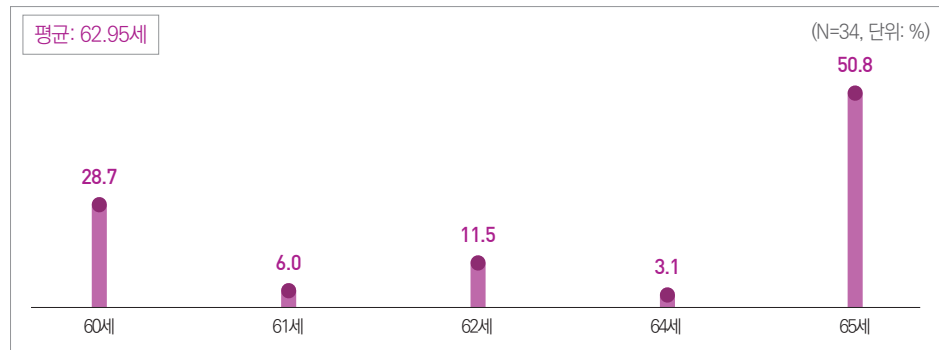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예상하는 퇴직연금 수급 시작연령은 62.95세로 조사됨.

- 연령별로 보면(n=34)으로 '65세'(50.8%)와 '60세'(28.7%)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그림 III-43 향후 자신이 예상하는 퇴직연금 수령 시점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퇴직연금의 예상 월평균 수령액은 44.43만 원으로 조사됨.

- 급여액 구간별로는 '20~30만 원 미만'(24.5%)이 가장 많았으며, '15~20만 원 미만'과 '60만 원 이상'이 21.1% 등의 순이었음.

표 III-13 향후 퇴직연금 기대 수령액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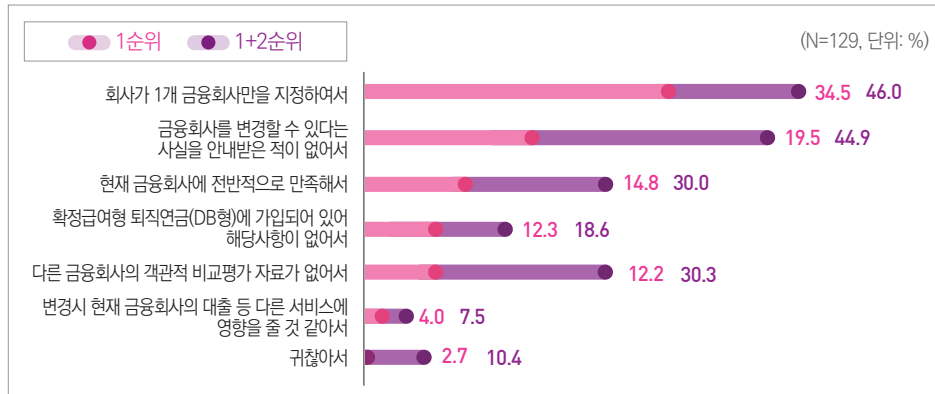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60만 원 미만	6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27	13.1	21.1	24.5	20.2	21.1	44.43
20대	30	23.1	30.2	19.8	11.4	15.4	39.76
30대	39	2.3	30.6	24.5	24.7	17.8	44.49
40대	36	12.6	10.6	30.0	15.9	30.8	48.96
50대	17	13.3	11.8	22.3	40.1	12.6	39.61
60세 이상	5	38.3	0.0	21.0	0.0	40.7	55.70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거의 없음.

- 가입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99.7%임.
- 변경하지 않는 이유로, '회사가 1개 금융회사만을 지정하여서'(34.5%),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19.5%)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III-44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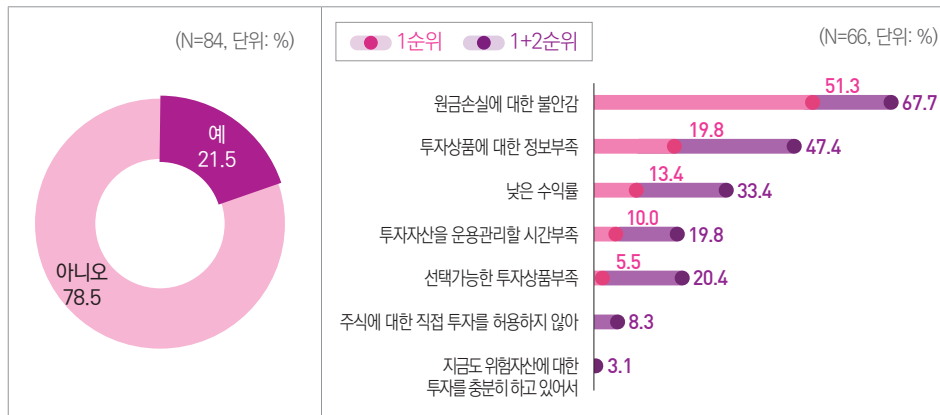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정부의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확대조치에 대해,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유무에 대해 78.5%는 '없다'고 응답함.

-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은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51.3%),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19.8%)이 주된 이유였음.

그림 III-45 위험자산 확대 계획 그림 III-46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은 70.9%로 나타남.

- 2014년 세법개정(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30% 감면)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은 70.9%로 나타남.

표 III-14 향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29	70.9	29.1
연령별	20~39세	69	76.7
	40~59세	53	62.8
	60세 이상	7	75.8
			24.2
성별	남성	83	74.5
	여성	46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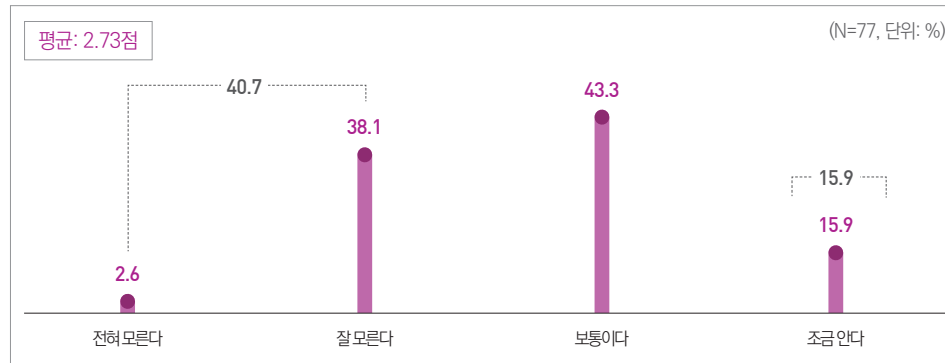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2) 퇴직연금 이해도, 만족도 등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조금 안다: 15.9%).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모른다'는 40.7%(전혀 모른다: 2.6% + 잘 모른다: 38.1%), '조금 안다'는 15.9%로 나타남.

그림 III-47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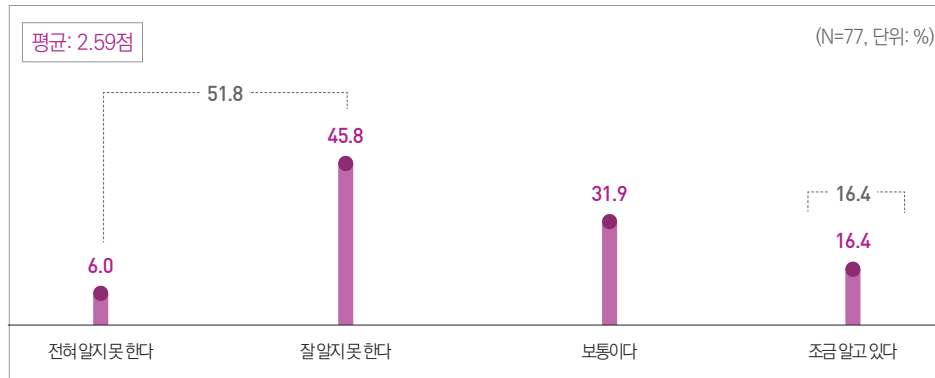


주: 점수는 5점 척도로 산출함(잘안다=5 ~ 전혀 모른다=1, 이하 동일).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인지도 낮음.

-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전혀 알지 못한다: 6.0% + 잘 알지 못한다: 45.8%)는 51.8%, ‘알고 있다’는 16.4%임.

그림 III-48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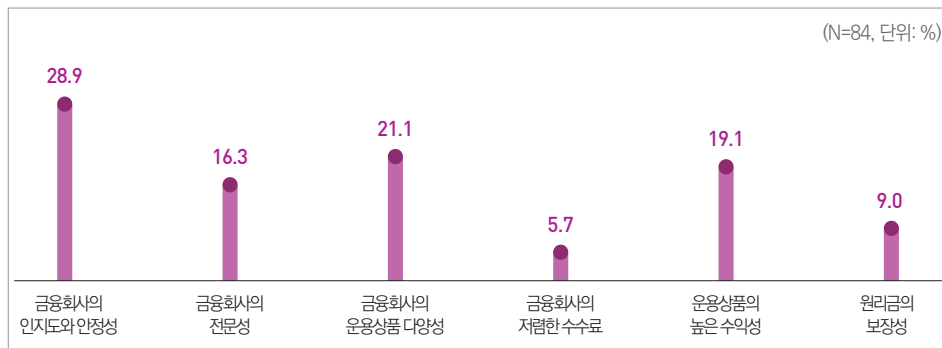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금융회사의 인지도와 안정성’(28.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운용상품 다양성’(21.1%), 운용상품의 높은 수익성(19.1%)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III-4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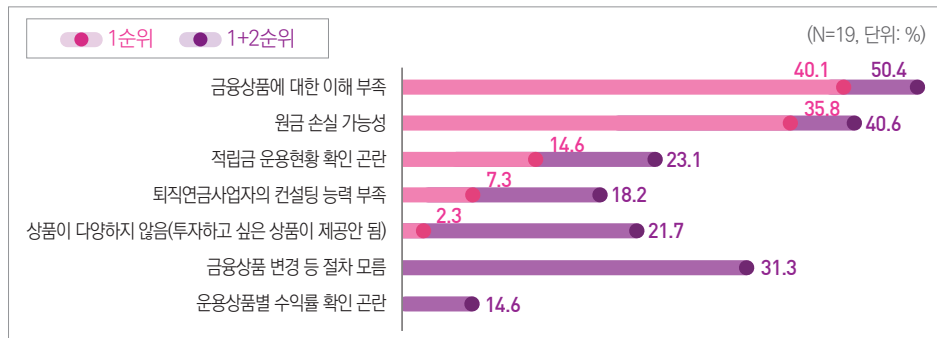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40.1%)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족 사항임.

- 다음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35.8%), ‘적립금 운용현황 확인 곤란’(14.6%) 순으로 응답함.

그림 III-5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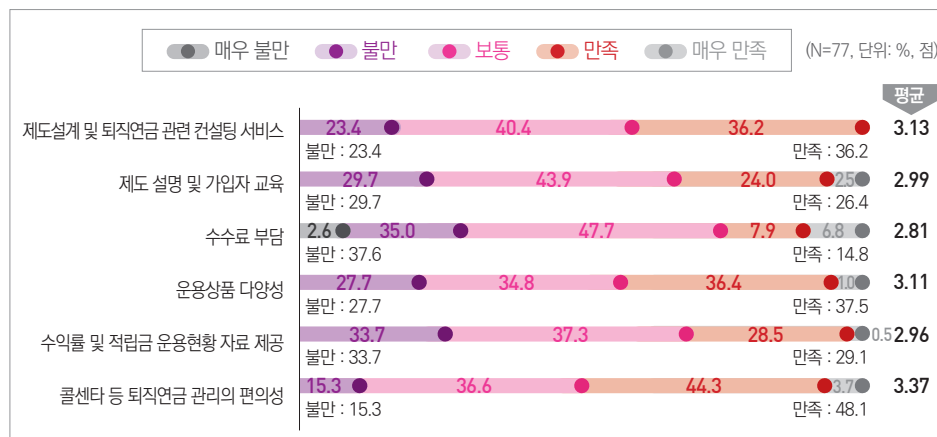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임.

- 퇴직연금 만족도(5점 척도)는 ‘콜센타 등 퇴직연금 편의성’ 3.37점, ‘제도설계 및 퇴직연금 관련 컨설팅 서비스’ 3.13점, ‘운용상품 다양성’ 3.11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51 가입 중인 퇴직연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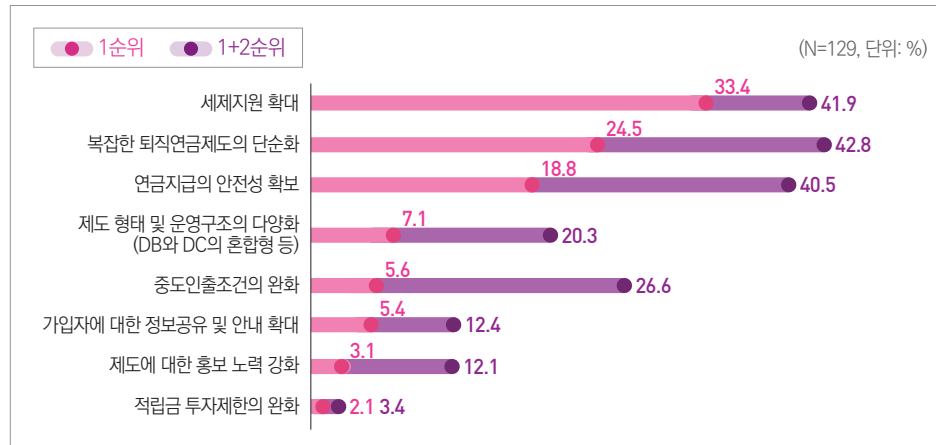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세제지원 확대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봄.**

-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33.4%), ‘복잡한 퇴직연금제도의 단순화’(24.5%) 등을 들었음.

그림 III-52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자료: 보험연구원(2015).

나. 적립형 IRP¹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추가로 납입한 경험은 ‘없다’가 93.4%로 나타남.¹⁹**

-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n=51)은 ‘1개’가 97.5%, ‘2개’가 2.5%로 응답되었으며 평균은 1.02개로 나타남.
-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계획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87.7%임.

18 · 적립형 IRP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가입자와 이를 인식하는 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 응답률이 매우 낮음. 따라서, 동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 이해할 필요 있음.

19 · 총빈도 수가 낮아 통계적 의미는 없음(n=29). 참고용으로 활용함.

그림 III-53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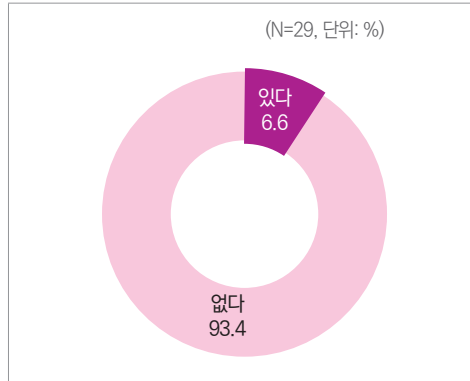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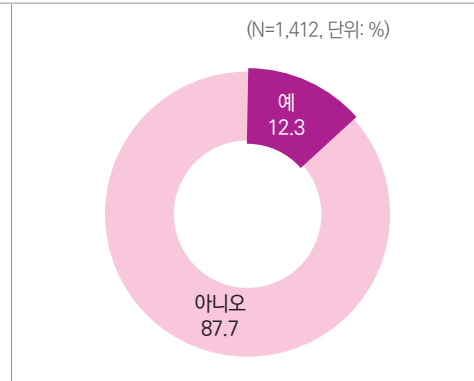


그림 III-54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획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적립형 IRP 가입자의 연평균 납입액은 321만 원 수준이며, 납입액 규모별로는 '150~250만 원 미만'(42.8%), '250만 원 이상'(24.3%) 등으로 조사됨.

● 적립형 IRP에 가입한 주된 이유로는 '회사에서 일괄 가입하여서'(67.6%), '다른 금융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26.9%)라고 응답함.

그림 III-55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응답자의 연평균 납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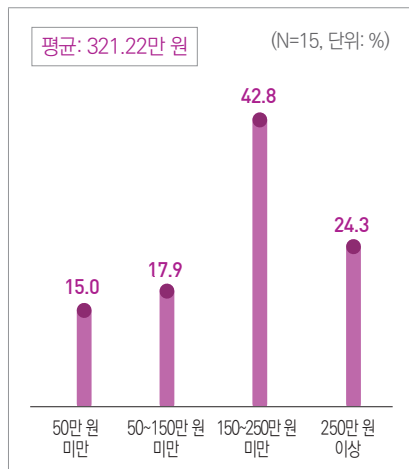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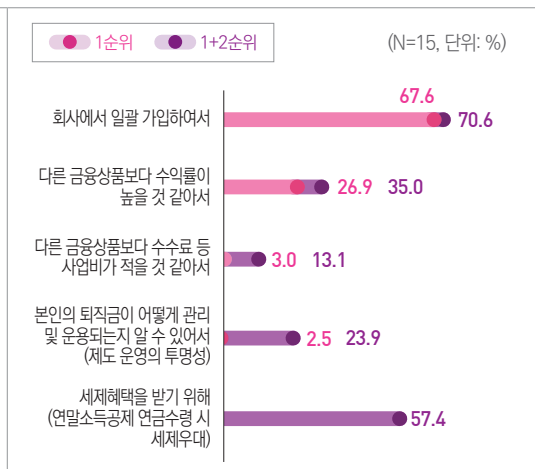


그림 III-56 적립형 IRP에 가입한 이유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58.0%로 ‘연금저축’ 42.0%보다 다소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됨.

-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응답자(n=38)는 ‘퇴직 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식 과세이전이 가능해서’(26.8%)를 주된 선호 이유로 응답함.
- 반면,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응답자(n=27)는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므로’(44.4%)를 주된 이유로 들었음.

그림 III-57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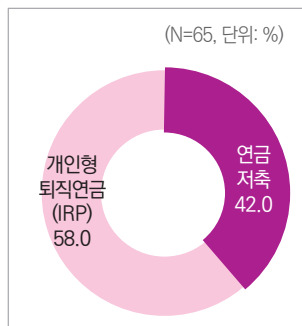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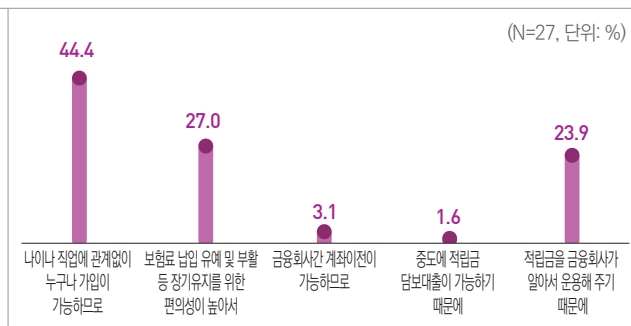


그림 III-58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중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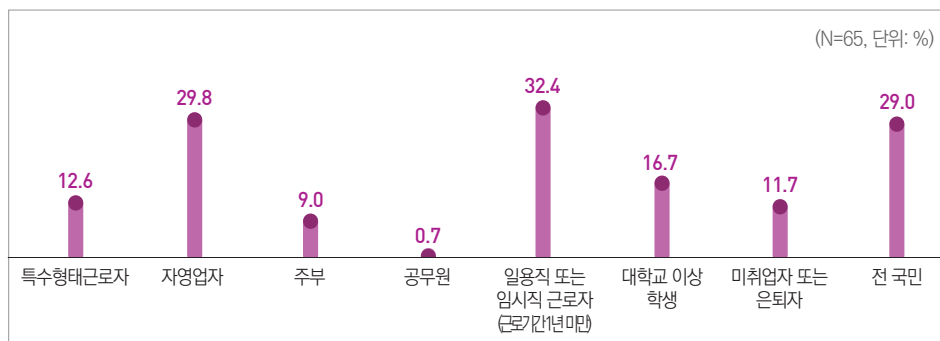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우선 순위로 응답함.

- 현재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자격을 향후 확대할 경우 (n=65)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근로기간 1년 미만)’(32.4%), ‘자영업자’(29.8%), ‘전 국민’(29.0%) 순으로 대상 직종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III-59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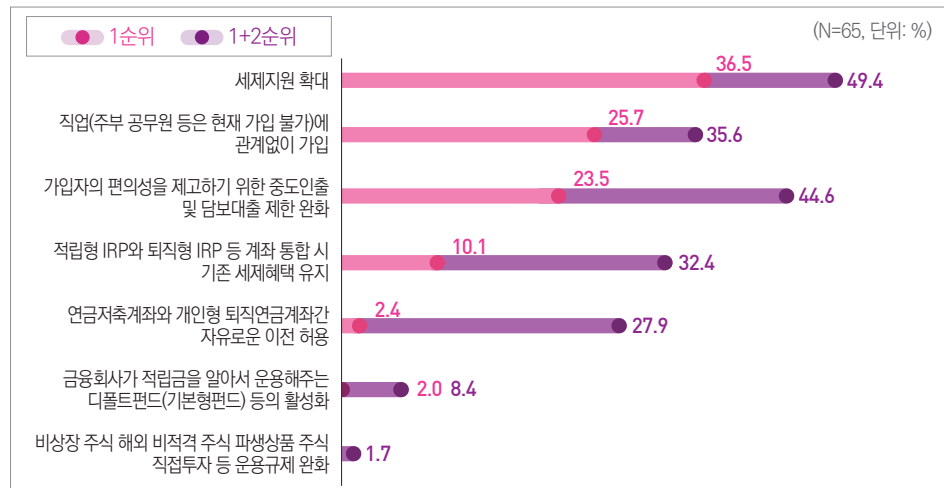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제지원을 우선 순위로 응답함.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n=65)으로는 '세제지원 확대'(36.5%), '직업에 관계없이 가입'(25.7%),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도 인출 및 담보대출 제한 완화'(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60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자료: 보험연구원(2015).

◆ 개인형 퇴직연금의 부분인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46.0%임.

- 부분인출 불가능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개선해야 한다'는 55.3%, '개선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44.7%로 나타남.
- 부분인출 불가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n=17)들은 주된 개선 방법으로 '부분인출을 약 30%까지 허용해야 한다'(58.6%)고 응답함.

그림 III-6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불가능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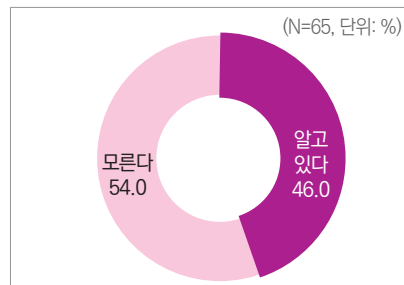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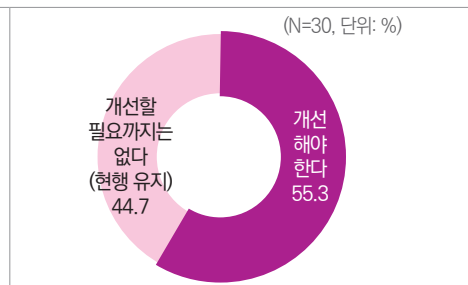


그림 III-6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분인출 불가능에 대한 인지 시 개선에 대한 견해



자료: 보험연구원(2015).

0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가. 사적연금 전반적 평가

◆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모두)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3.6%(불만 13.5%)로 조사되었음.

-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금재원의 안전한 관리’가 29.7%, ‘세제지원 확대’가 28.2%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63 사적연금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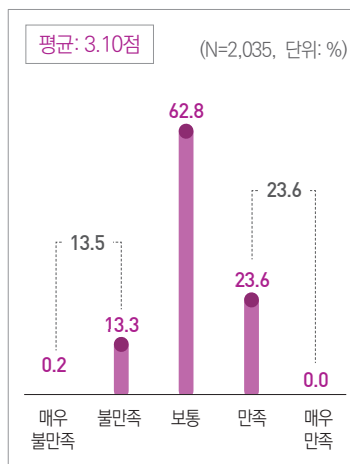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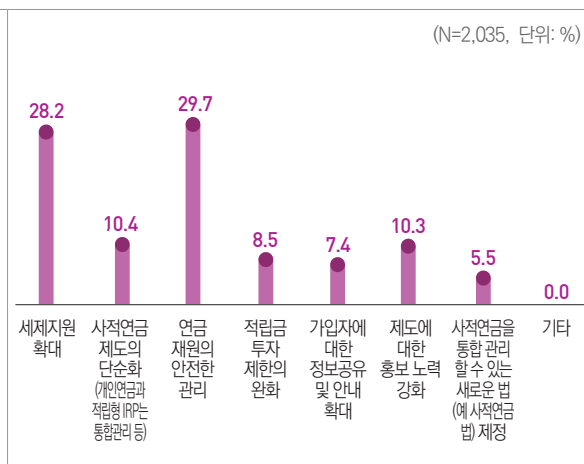


그림 III-64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 보험연구원(2015).

나. 노후준비교육 경험 및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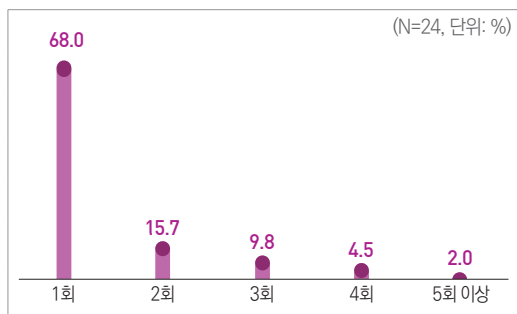
◆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노후준비교육 경험이 없음(임금근로자 97.2%가 무경험).

-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4)의 교육 받은 횟수는 '1회'(68.0%)가 대부분임.

표 III-15 노후준비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827	2.8	97.2
연령별	20~39세	467	2.2
	40~59세	300	3.1
	60세 이상	60	6.7
성별	남성	523	3.0
	여성	303	2.6

그림 III-65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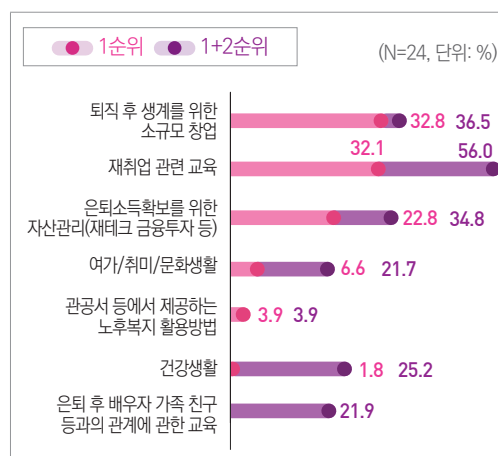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 받았던 노후준비교육의 종류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소규모 창업'(32.8%), '재취업 관련 교육'(32.1%),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재테크, 금융투자 등)'(22.8%)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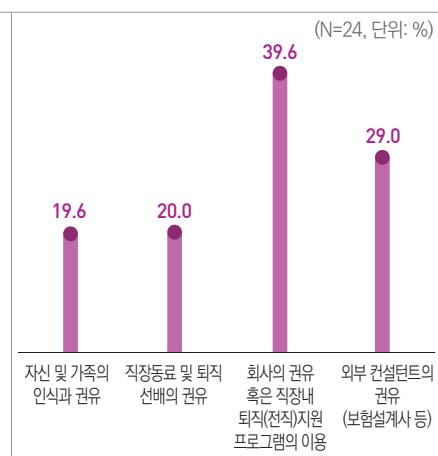
- 노후준비교육을 받게 된 동기로는 '회사의 권유 혹은 직장 내 퇴직(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39.6%), '외부 컨설턴트의 권유(보험설계사 등)'(29.0%) 등임.

그림 III-66 노후준비교육 종류



자료: 보험연구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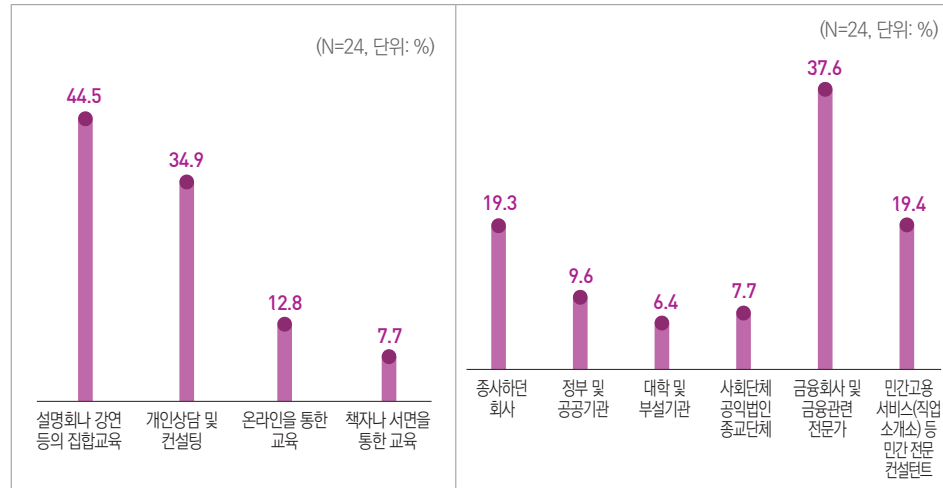
그림 III-67 노후준비교육을 받게 된 동기



◆ 받았던 노후준비교육 중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설명회나 강연 등의 집합 교육’(44.5%), ‘개인상담 및 컨설팅’(34.9%) 등임.

- 노후준비교육을 주관한 기관으로는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전문가’(37.6%), ‘민간 고용서비스 등 민간 전문 컨설턴트’(19.4%), ‘종사하던 회사’(19.3%) 등으로 나타남.

그림 III-68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그림 III-69 노후준비교육 주관기관



자료: 보험연구원(2015).

- 은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4) 중 ‘만족’하는 응답자가(57.9%)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만족 57.9%, 보통 35.5%, 불만족 6.6%로 조사됨.

◆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48.8%)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51.2%)가 비슷하게 나타남.

-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필요한 교육의 종류로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재테크, 금융투자 등)’(27.9%), ‘재취업 관련 교육’(25.0%)을 응답함.
- 노후준비교육(상담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주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70 노후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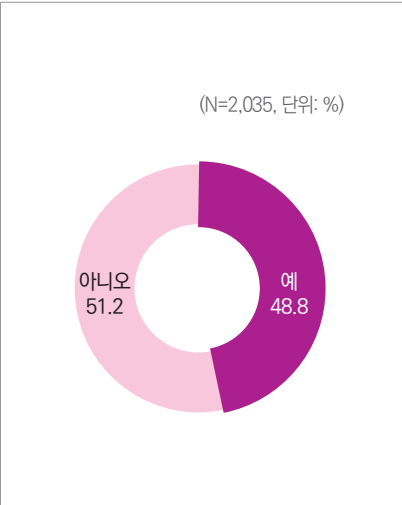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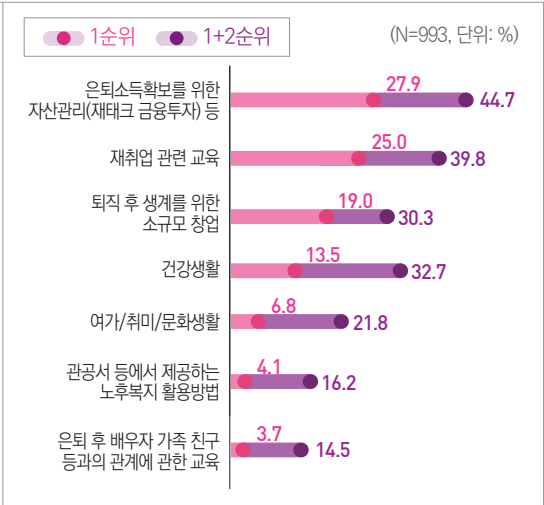


그림 III-7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준비교육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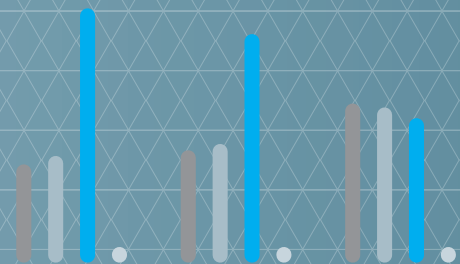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2015).

IV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01 인구/고령화

02 경제/연금



01

인구/고령화

표 IV-1 주요 국가 인구성장률(2010~2060년)

(단위: %)

구분	2010~2015	2030~2035	2060~2065
한국	0.484	-0.104	-1.071
중국	0.419	-0.166	-0.734
일본	-0.073	-0.483	-0.517
인도	1.321	0.726	-0.009
스웨덴	0.563	0.281	0.159
영국	0.603	0.36	0.076
이탈리아	0.227	-0.103	-0.322
스페인	0.622	0.192	-0.443
프랑스	0.511	0.338	0.207
독일	-0.203	-0.259	-0.243
스위스	0.388	-0.018	-0.265
캐나다	0.924	0.535	0.271
미국	0.852	0.61	0.41
호주	1.325	0.745	0.317

자료: UN(2010); 통계청(2011).

*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은 2100년에 전 세계가 대체출산율 수준(2.1명)으로 수렴할 것을 전제로 추정함.

표 IV-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단위: 15~49세 여성 1명당 출생아 수)

국가	2005	2008	2010	2013
호주	1.9	2.0	2.0	1.9
캐나다	1.5	1.7	1.6	1.6
프랑스	1.9	2.0	2.0	2.0
독일	1.3	1.4	1.4	1.4
이탈리아	1.3	1.4	1.4	1.4
일본	1.3	1.4	1.4	1.4
한국	1.1	1.2	1.2	1.2
스웨덴	1.8	1.9	2.0	1.9
영국	1.8	1.9	1.9	1.8
미국	2.1	2.1	1.9	1.9

자료: OECD Health Data 2015; 보건복지부(2015).

표 IV-3 자살률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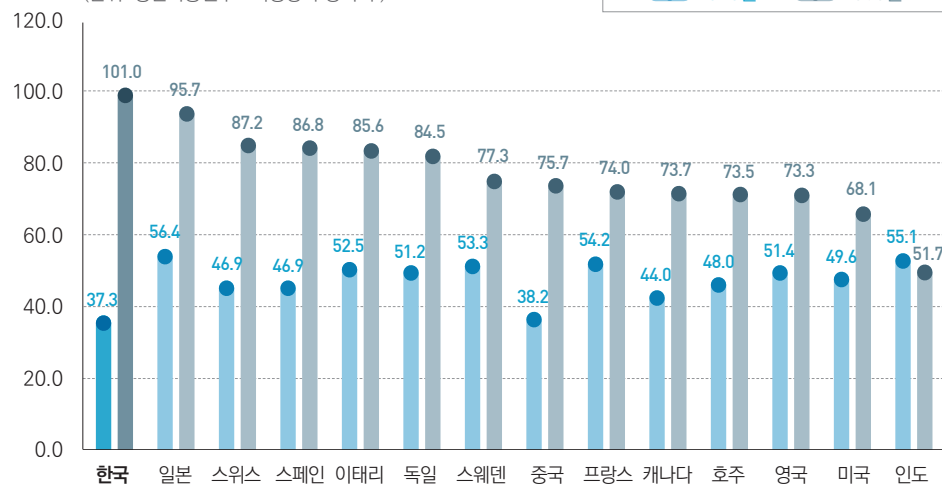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국가	2005	2008	2010	2013
호주	-	10.9	10.9	-
캐나다	11.2	10.7	11.2	-
프랑스	17.1	16.1	15.9	-
독일	11.4	10.3	10.8	10.8
이탈리아	-	5.8	5.8	-
일본	22.1	21.8	21.2	18.7
한국	29.9	29.0	33.5	-
스웨덴	13.1	12.2	11.7	12.3
영국	6.7	6.9	6.7	7.6
미국	11.2	12.0	12.5	-

자료: OECD Health Data 2015; 보건복지부(2015).

그림 IV-1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2010~2060년)

(단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자 수)



자료: UN(2010); 통계청(2011).

02

경제/연금

표 IV-4 국내 총생산(GDP) 국제비교

(단위: 10억 USD)

국가	2005	2008	2010	2013
호주	762	1,055	1,291	1,529
캐나다	1,164	1,543	1,614	1,839
프랑스	2,204	2,924	2,647	2,806
독일	2,858	3,747	3,412	3,730
이탈리아	1,853	2,392	2,127	2,137
일본	4,572	4,849	5,495	4,920
한국	898	1,002	1,095	1,306
스웨덴	389	514	488	580
영국	2,412	2,792	2,408	2,678
미국	13,094	14,719	14,964	16,768

자료: OECD Health Data 2015; 보건복지부(2015).

표 IV-5 각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단위: %)

국가	보험료율(2009)		소득대체율
	2012	2014~2015	
호주	조세	조세	13.6
프랑스	16.7	17.25	58.8
독일	19.6	18.7	42.0
그리스	20.0	20.0	53.9
이탈리아	33.0	9.19(근로자), 23.81(사용자)	71.2
스웨덴	18.4	18.5	33.9
영국	통합보험료	통합보험료	32.6
캐나다	9.9	9.9	39.2
미국	10.4	12.4	38.3
일본	16.8	17.474	35.6
한국	9.0	9.0	39.6
OECD 34개국 평균	19.6	-	40.6
최대	34(헝가리)	35.5(헝가리)	76.6(오스트리아)
최소	9.0(한국)	9.0(한국)	3.8(멕시코)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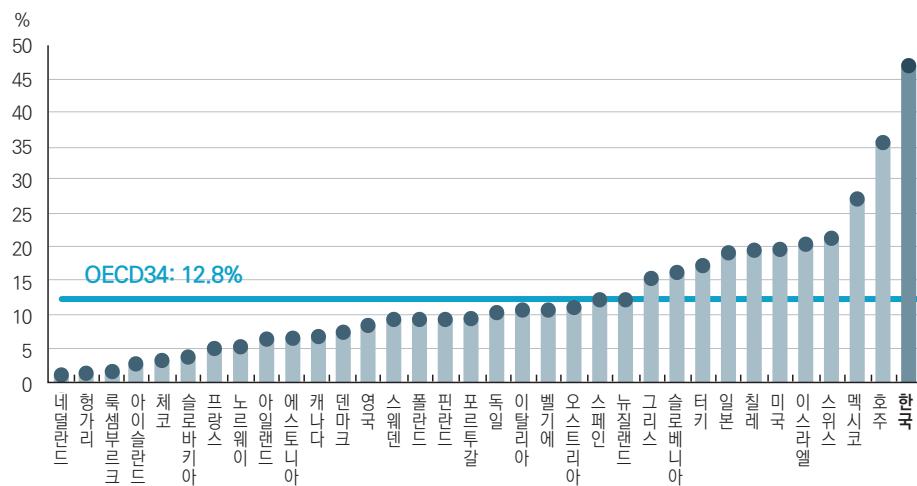
표 IV-6 GDP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 추이

(단위: %)

국가	1995	2000	2005	2007	2009
프랑스	12.0	11.8	12.3	12.5	13.7
독일	10.7	11.2	11.5	10.7	11.3
이탈리아	11.3	13.6	14	14.1	15.4
스웨덴	8.2	7.2	7.6	7.2	8.2
영국	5.4	5.3	5.6	5.4	6.2
캐나다	4.7	4.3	4.2	4.2	4.5
미국	6.3	5.9	5.9	6.0	6.8
일본	6.1	7.4	8.7	8.8	10.2
한국	1.2	1.4	1.5	1.7	2.1
OECD 34개국 평균	6.7	6.9	7.1	7.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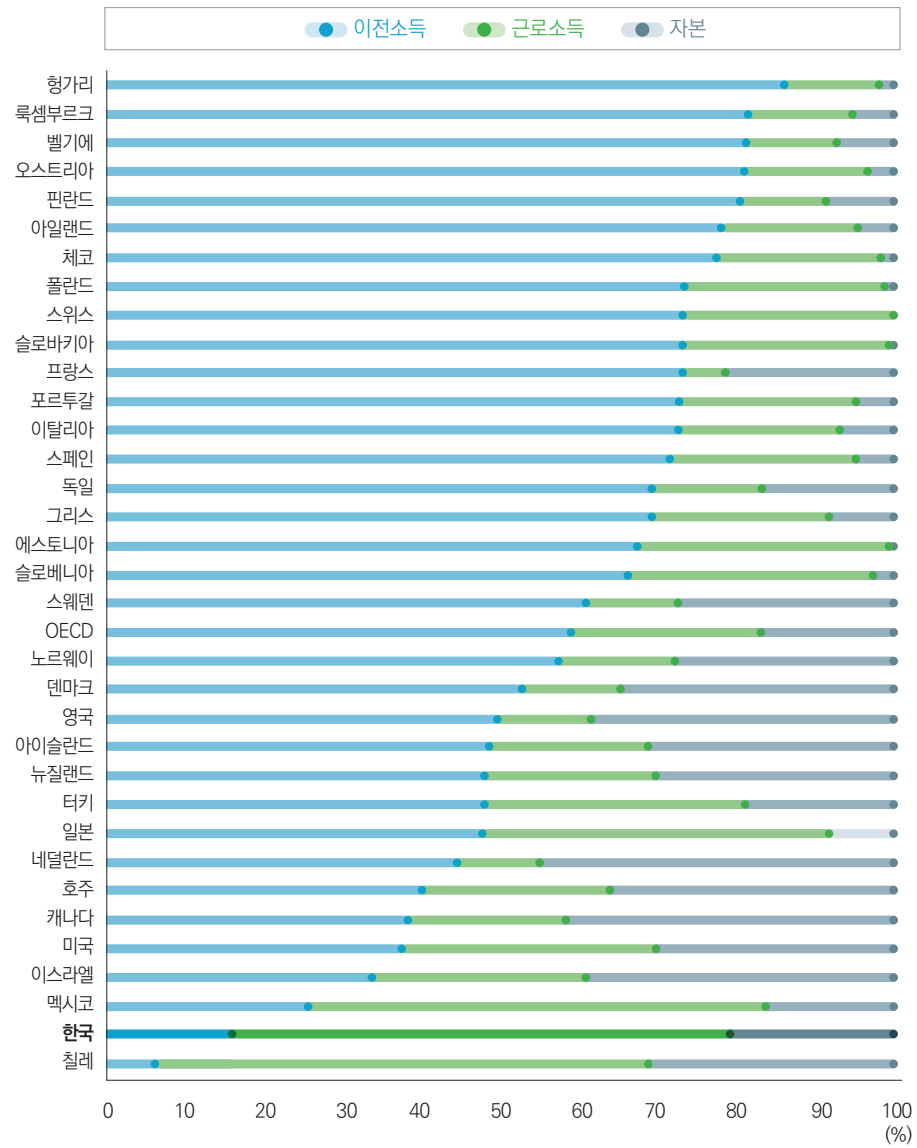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

그림 IV-2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자료: OECD(2013b).

그림 IV-3 2000년대 후반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천



자료: OECD(2013b).

표 IV-7 소득수준별 총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단위: 세, %)

구분	개인소득, 남자(여자, 남녀 다를 경우) 기준					
	수급연령	0.5배		1배		1.5배
호주	67	79.3	(75.7)	44.5	(40.9)	32.9 (29.3)
오스트리아	65	78.1		78.1		77.6
벨기에	65	47.6		46.6		35.3
캐나다	67	53.5		32.6		21.8
칠레	65	39.4	(36.7)	32.8	(28.8)	32.9 (28.9)
체코	68	78.9		49.0		39.1
덴마크	67	107.4		67.8		55.1
에스토니아	65	62.1		50.5		46.6
핀란드	65	55.8		55.8		55.8
프랑스	63	56.8		55.4		48.2
독일	65	37.5		37.5		37.5
그리스	62	58.9		46.2		41.9
헝가리	65	58.7		58.7		58.7
아이슬란드	67	82.6		69.2		68.1
아일랜드	68	69.5		34.7		23.2
이스라엘	67 (64)	82.7	(74.7)	61.0	(54.1)	40.7 (36)
이탈리아	67	69.5		69.5		69.5
일본	65	48.8		35.1		30.5
한국	65	58.5		39.3		29.3
룩셈부르크	60	89.5		76.8		72.5
멕시코	65	35.0		25.5	(23.6)	24.2 (22.4)
네덜란드	67	94.0		90.5		89.3
뉴질랜드	65	80.1		40.1		26.7
노르웨이	67	62.8		49.8		38.9
핀란드	67	43.1		43.1		43.1
포르투갈	66	75.1		73.8		72.5
슬로바키아	67	70.4		62.1		59.3
슬로베니아	60	44.4	(46.8)	38.4	(40.4)	36.0 (37.9)
스페인	65	82.1		82.1		82.1
스웨덴	65	64.4		64.4		73.1
스위스	65 (64)	55.7	(55.1)	40.2	(39.9)	26.8 (26.6)
터키	65	75.7		75.7		75.7
영국	68	59.4		29.7		19.8
미국	67	44.4		35.2		29.1
OECD34	65.5 (65.4)	64.8 (64.4)		52.7 (52.3)		47.5 (47.1)

자료: OECD(2015c).

표 IV-8 연금유형별 총연금소득대체율

(단위: 세)

구분	공적연금			강제가입 사적연금 (DB&DC)			공적연금, 강제가입사적연금 합계(A)			임의가입DC			합계 (A, 임의가입DC)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호주	48.4	13.5	1.9	30.9	30.9	30.9	79.3	44.5	32.9	-	-	-	79.3	44.5	32.9
오스트리아	78.1	78.1	77.6	-	-	-	78.1	78.1	77.6	-	-	-	78.1	78.1	77.6
벨기에	47.6	46.6	35.3	-	-	-	47.6	46.6	35.3	13.3	13.3	10.1	60.9	59.9	45.5
캐나다	53.5	32.6	21.8	-	-	-	53.5	32.6	21.8	29.3	29.3	29.3	79.7	61.9	51.0
칠레	6.8	0.0	0.0	32.7	32.8	32.9	39.4	32.8	32.9	-	-	-	39.4	32.8	32.9
체코	78.9	49.0	39.1	-	-	-	78.9	49.0	39.1	-	-	-	78.9	49.0	39.1
덴마크	56.2	21.5	10.3	51.3	46.3	44.7	107.4	67.8	55.1	-	-	-	107.4	67.8	55.1
에스토니아	40.1	28.5	24.6	22.0	22.0	22.0	62.1	50.5	46.6	-	-	-	62.1	50.5	46.6
핀란드	55.8	55.8	55.8	-	-	-	55.8	55.8	55.8	-	-	-	55.8	55.8	55.8
프랑스	56.8	55.4	48.2	-	-	-	56.8	55.4	48.2	-	-	-	56.8	55.4	48.2
독일	37.5	37.5	37.5	-	-	-	37.5	37.5	37.5	12.5	12.5	12.5	50.0	50.0	50.0
그리스	58.9	46.2	41.9	-	-	-	58.9	46.2	41.9	-	-	-	58.9	46.2	41.9
헝가리	58.7	58.7	58.7	-	-	-	58.7	58.7	58.7	-	-	-	58.7	58.7	58.7
아이슬란드	16.8	3.4	2.3	65.8	65.8	65.8	82.6	69.2	68.1	-	-	-	82.6	69.2	68.1
아일랜드	69.5	34.7	23.2	-	-	-	69.5	34.7	23.2	30.3	30.3	30.3	99.8	65.1	53.5
이스라엘	23.5	11.8	7.8	59.2	49.3	32.8	82.7	61.0	40.7	-	-	-	82.7	61.0	40.7
이탈리아	69.5	69.5	69.5	-	-	-	69.5	69.5	69.5	-	-	-	69.5	69.5	69.5
일본	48.8	35.1	30.5	-	-	-	48.8	35.1	30.5	-	-	-	48.8	35.1	30.5
한국	58.5	39.3	29.3	-	-	-	58.5	39.3	29.3	-	-	-	58.5	39.3	29.3
룩셈부르크	89.5	76.8	72.5	-	-	-	89.5	76.8	72.5	-	-	-	89.5	76.8	72.5
멕시코	13.5	3.9	2.6	21.6	21.6	21.6	35.0	25.5	24.2	-	-	-	35.0	25.5	24.2
네덜란드	54.2	27.1	18.1	39.8	63.4	71.2	94.0	90.5	89.3	-	-	-	94.0	90.5	89.3
뉴질랜드	80.1	40.1	26.7	-	-	-	80.1	40.1	26.7	12.4	12.4	12.4	92.5	52.5	39.1
노르웨이	58.0	44.0	32.7	4.8	5.9	6.2	62.8	49.8	38.9	-	-	-	62.8	49.8	38.9
핀란드	43.1	43.1	43.1	-	-	-	43.1	43.1	43.1	-	-	-	43.1	43.1	43.1
포르투갈	75.1	73.8	72.5	-	-	-	75.1	73.8	72.5	-	-	-	75.1	73.8	72.5
슬로바키아	47.3	38.9	36.2	23.1	23.1	23.1	70.4	62.1	59.3	-	-	-	70.4	62.1	59.3
슬로베니아	44.4	38.4	36.0	-	-	-	44.4	38.4	36.0	-	-	-	44.4	38.4	36.0
스페인	82.1	82.1	82.1	-	-	-	82.1	82.1	82.1	-	-	-	82.1	82.1	82.1
스웨덴	42.7	42.7	29.5	21.7	21.7	43.6	64.4	64.4	73.1	-	-	-	64.4	64.4	73.1
스위스	35.6	23.3	15.6	20.1	16.9	11.2	55.7	40.2	26.8	-	-	-	55.7	40.2	26.8
터키	75.7	75.7	75.7	-	-	-	75.7	75.7	75.7	-	-	-	75.7	75.7	75.7
영국	59.4	29.7	19.8	-	-	-	59.4	29.7	19.8	31.1	31.1	31.1	90.5	60.8	50.9
미국	44.4	35.2	29.1	-	-	-	44.4	35.2	29.1	32.6	32.6	26.6	88.8	70.3	58.3
OECD34	53.2	40.9	35.5	-	-	-	64.8	52.7	47.5	-	-	-	69.8	57.5	52.0

자료: OECD(2015c).

표 IV-9 소득수준별 순연금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단위: 세, %)

구분	개인소득, 남자(여자, 남녀 다를 경우) 기준				
	수급연령	0.5배	1배	1.5배	
호주	67	88.6 (84.6)	58.0 (53.4)	45.9 (40.9)	
오스트리아	65	92.1	91.6	88.9	
벨기에	65	64.2	60.9	49.1	
캐나다	67	63.0	42.9	30.2	
칠레	65	48.7 (45.3)	37.7 (33.1)	38.0 (33.4)	
체코	68	93.1	63.8	51.9	
덴마크	67	103.2	66.4	57.2	
에스토니아	65	76.1	59.8	53.5	
핀란드	65	66.6	63.5	65.0	
프랑스	63	66.9	67.7	62.0	
독일	65	53.4	50.0	49.0	
그리스	62	66.8	54.1	52.4	
헝가리	65	89.6	89.6	89.6	
아이슬란드	67	90.5	76.7	76.3	
아일랜드	68	70.1	42.2	32.5	
이스라엘	67 (64)	85.7 (77.4)	68.8 (61.9)	50.3 (45.2)	
이탈리아	67	82.2	79.7	81.6	
일본	65	53.3	40.4	35.5	
한국	65	64.3	45.0	34.4	
룩셈부르크	60	98.4	88.6	83.7	
멕시코	65	35.5	28.4 (26.2)	28.1 (26)	
네덜란드	67	101.3	95.7	94.1	
뉴질랜드	65	80.8	43.0	30.4	
노르웨이	67	80.1	60.2	48.6	
핀란드	67	54.0	52.8	52.4	
포르투갈	66	87.7	89.5	88.4	
슬로바키아	67	84.0	80.6	79.4	
슬로베니아	60	57.6 (60.6)	57.4 (60.4)	55.1 (57.6)	
스페인	65	89.1	89.5	89.3	
스웨덴	65	63.9	63.6	78.2	
스위스	65 (64)	61.4 (60.7)	46.9 (46.5)	31.5 (31.2)	
터키	65	98.0	104.8	109.9	
영국	68	69.4	38.3	27.3	
미국	67	54.3	44.8	38.9	
OECD34	65.5 (65.4)	74.5 (74.1)	63.0 (62.6)	58.2 (53.6)	

자료: OECD(201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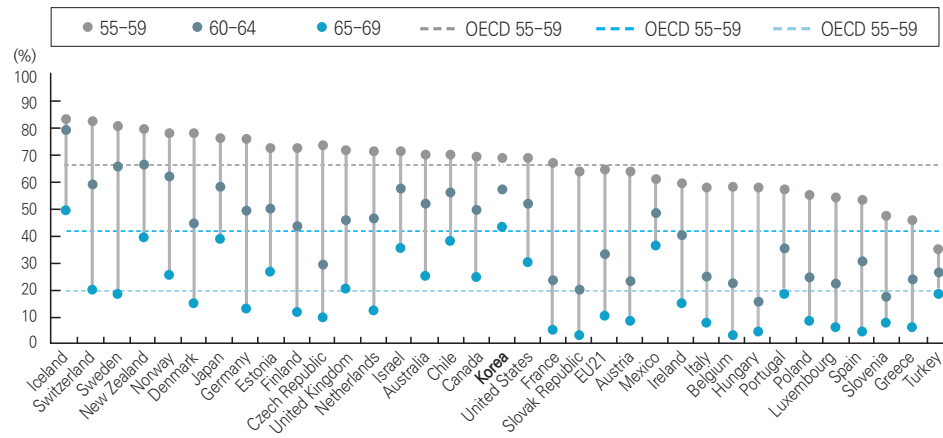
표 IV-10 연금유형별 순연금소득대체율

(단위: %)

구분	공적연금, 강제가입 사적연금(총)			공적연금, 강제가입 사적연금(순)			합계 (총, 임의가입 포함)			합계 (순, 임의가입 포함)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호주	79.3	44.5	32.9	88.6	58.0	45.9	79.3	44.5	32.9	88.6	58.0	45.9
오스트리아	78.1	78.1	77.6	92.1	91.6	88.9	78.1	78.1	77.6	92.1	91.6	88.9
벨기에	47.6	46.6	35.3	64.2	60.9	49.1	60.9	59.9	45.5	80.6	72.1	58.6
캐나다	53.5	32.6	21.8	63.0	42.9	30.2	79.7	61.9	51.0	93.7	81.4	70.9
칠레	39.4	32.8	32.9	48.7	37.7	38.0	39.4	32.8	32.9	48.7	37.7	38.0
체코	78.9	49.0	39.1	93.1	63.8	51.9	78.9	49.0	39.1	93.1	63.8	51.9
덴마크	107.4	67.8	55.1	103.2	66.4	57.2	107.4	67.8	55.1	103.2	66.4	57.2
에스토니아	62.1	50.5	46.6	76.1	59.8	53.5	62.1	50.5	46.6	76.1	59.8	53.5
핀란드	55.8	55.8	55.8	66.6	63.5	65.0	55.8	55.8	55.8	66.6	63.5	65.0
프랑스	56.8	55.4	48.2	66.9	67.7	62.0	56.8	55.4	48.2	66.9	67.7	62.0
독일	37.5	37.5	37.5	53.4	50.0	49.0	50.0	50.0	50.0	65.6	64.7	63.7
그리스	58.9	46.2	41.9	66.8	54.1	52.4	58.9	46.2	41.9	66.8	54.1	52.4
헝가리	58.7	58.7	58.7	89.6	89.6	89.6	58.7	58.7	58.7	89.6	89.6	89.6
아이슬란드	82.6	69.2	68.1	90.5	76.7	76.3	82.6	69.2	68.1	90.5	76.7	76.3
아일랜드	69.5	34.7	23.2	70.1	42.2	32.5	99.8	65.1	53.5	100.7	72.1	63.8
이스라엘	82.7	61.0	40.7	85.7	68.8	50.3	82.7	61.0	40.7	85.7	68.8	50.3
이탈리아	69.5	69.5	69.5	82.2	79.7	81.6	69.5	69.5	69.5	82.2	79.7	81.6
일본	48.8	35.1	30.5	53.3	40.4	35.5	48.8	35.1	30.5	53.3	40.4	35.5
한국	58.5	39.3	29.3	64.3	45.0	34.4	58.6	39.3	29.3	64.3	45.0	34.4
룩셈부르크	89.5	76.8	72.5	98.4	88.6	83.7	89.5	76.8	72.5	98.4	88.6	83.7
멕시코	35.0	25.5	24.2	35.5	28.4	28.1	35.0	25.5	24.2	35.5	28.4	28.1
네덜란드	94.0	90.5	89.3	101.3	95.7	94.1	94.0	90.5	89.3	101.3	95.7	94.1
뉴질랜드	80.1	40.1	26.7	80.8	43.0	30.4	92.5	52.5	39.1	94.8	56.8	44.6
노르웨이	62.8	49.8	38.9	80.1	60.2	48.6	62.8	49.8	38.9	80.1	60.2	48.6
핀란드	43.1	43.1	43.1	54.0	52.8	52.4	43.1	43.1	43.1	54.0	52.8	52.4
포르투갈	75.1	73.8	72.5	87.7	89.5	88.4	75.1	73.8	72.5	87.7	89.5	88.4
슬로바키아	70.4	62.1	59.3	84.0	80.6	79.4	70.4	62.1	59.3	84.0	80.6	79.4
슬로베니아	44.4	38.4	36.0	57.6	57.4	55.1	44.4	38.4	36.0	57.6	57.4	55.1
스페인	82.1	82.1	82.1	89.1	89.5	89.3	82.1	82.1	82.1	89.1	89.5	89.3
스웨덴	64.4	64.4	73.1	63.9	63.6	78.2	64.4	64.4	73.1	63.9	63.6	78.2
스위스	55.7	40.2	26.8	61.4	46.9	31.5	55.7	40.2	26.8	61.4	46.9	31.5
터키	75.7	75.7	75.7	98.0	104.8	109.9	75.7	75.7	75.7	98.0	104.8	109.9
영국	59.4	29.7	19.8	69.4	38.3	27.3	90.5	60.8	50.9	99.1	71.1	62.3
미국	44.4	35.2	29.1	54.3	44.8	38.9	88.8	70.3	58.3	90.5	81.9	78.3
OECD34	64.8	52.7	47.5	74.5	63.0	58.2	69.8	57.5	52.0	79.5	68.3	63.6

자료: OECD(2015c).

그림 IV-4 고령층 고용률 국제비교(2013)



자료: OECD(2015d).

참고문헌

- ◆ 강성호·류건식(2015),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KiRi Weekly 제 328호, 보험연구원.
- ◆ 강성호·이지은(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정책보고서 2010-2, 국민연금연구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2014년 진료비통계지표」.
- ◆ 고경환·장영식·강지원·김진욱·최성용·정영애(2011),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비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고용노동부(2015a),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 8. 27),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 국민연금연구원(2014), 『2014국민연금 생생통계』.
- ◆ 국세청(2014), 『2013년 국세통계연보』.
- ◆ 금융감독원(2012. 10),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4. 4),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 ◆ _____ (2015. 4. 2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 ◆ 김동원(2013. 3. 21), 「박근혜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과 과제: “포용과 소통의 노사관계”」, 3개 노동학회 공동 춘계정책토론회 발표문.
- ◆ 김미곤(201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이슈앤 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김미곤·정경희(2015), 『50대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자료 2015-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김원섭·강성호(201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권 제3호, 사회복지정책학회, pp. 261~292.
- ◆ 김지섭(2015),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개발원(보도자료에서 발췌).
- ◆ 류건식(2013),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세미나.
- ◆ 방하남·어수봉·유규창·이상민·하갑래(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5.
- ◆ 보건복지부(2013),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 _____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 28),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 ◆ _____ (2015. 8. 29),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5. 4. 16),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

- ◆ 보험연구원(2015),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가입실태조사』.
- ◆ 윤석명·손창균·양혜진·이힘찬·김은주·최미선·유근춘·신화연·방하남·이용하(201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이석호(2015), 「저소득층 노후소득준비 지원을 위한 리스터형 연금 도입 필요」,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 ◆ 이태열·강성호·김유미(2014),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 정유석(2013),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8집, 한국국제회계학회, pp. 287~310.
- ◆ 차지훈(2014),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로 본 바람직한 개인연금 개혁방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42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통계개발원(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_____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 통계청 보도자료(2014. 11. 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_____ (2014. 12. 3), “2013년 생명표”.
 _____ (2015. 3. 19), “2014 한국의 사회지표”.
 _____ (2015. 7. 23),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_____ (2015. 9. 24), “2015 고령자 통계”.
 _____ (2015. 12. 21),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 한국채권연구원(2010),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_____ (2013a), Global Pension Statistics.
 _____ (2013b), “Pension at a Glance 2013”.
 _____ (2014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_____ (2014b), “Society at a Glance 2014”.
 _____ (2014c), Health Data.
 _____ (2015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_____ (2015b),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_____ (2015c),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_____ (2015d), “Local Economic Strategies for Ageing Labour Markets”.
 _____ (2015e), Pension Markets in Focus.
- ◆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연구참여자 강성호·김유미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TEL 02-3775-9000 | FAX 02-3775-9100
<http://www.kiri.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